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74-10

ISSN 1975-3128

**2016**  
국가인권위원회

#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인 디지털음성도서 데이지(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지 도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nlid.nl.go.kr) '자료이용'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또한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정책정보/발간자료/연간보고서' 메뉴에서 데이지 파일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

인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로고타입 자체를 간결하게 만들고 조형적 완성도를 높여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으로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창조'와 '생명'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의 심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만의 정체성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로고타입과 함께 사용한 심벌은 현대성과 한국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중양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심벌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 2016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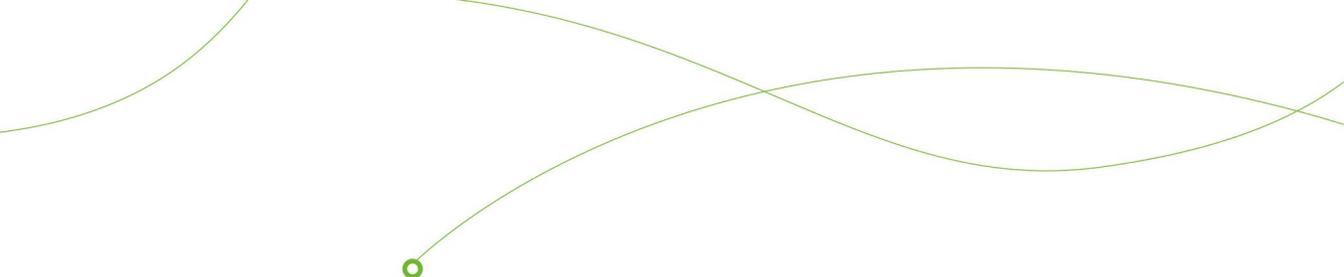
우리 위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어 2016년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도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장애인 거주시설 가혹행위 사건,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많은 인권 현안이 발생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험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로운 촛불집회 현장에서 확인된 성숙하고 절제된 시민 의식은 인권 선진사회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등 전반적인 인권 수준이 진일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우리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선출되어 유엔(UN)의 노인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8월 아셈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셈 글로벌 고령화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설치를 승인받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향후 5년간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인 제3기(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감정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등 전년도에 비해 2배 많은



72건의 정책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총 19건 접수에 머물던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2016년에만 38건 접수, 18건 조정 성립의 성과를 거두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제6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자이자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수행한 일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향후에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비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성 호**



# 목 차

## Cont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 1부

#### 1부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6년 대내외 환경 .....	7
제3장 2016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	8
제4장 평가와 과제 .....	18

### 2부

####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	23
--------------	----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24
-----------------------------	----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24
2. 정책권고 주요 내용 .....	24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	45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57
5.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주요 내용 .....	59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옹호 활동 .....	64
-------------------------------	----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	64
2. 인권증진사업 .....	77
3. 주요 토론회 및 간담회 등 .....	80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86
-------------------------------	----

##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	92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96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96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00
가. 검찰·경찰·사법기관 .....	100
나. 군 .....	109
다. 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	117
라. 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	119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122
바. 각급학교 .....	124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29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29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134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134
나. 용모에 따른 차별 .....	135
다. 성희롱 .....	135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136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138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139
사.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	139
아.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140

# 목 차

## Cont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b>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b> .....	141
1. 인권상담 .....	142
2. 진정 접수 .....	145
3. 인권순회상담 .....	145
4. 면전진정 .....	147
5. 민원 및 안내 .....	148
<b>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b>	
<b>제1절 개요</b> .....	150
<b>제2절 주요 추진 실적</b> .....	152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152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56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159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77
5. 인권도서관 운영 .....	183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	184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186
<b>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b>	
<b>제1절 개요</b> .....	194
<b>제2절 주요 추진 실적</b> .....	197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197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203
3. 국제회의 개최 .....	209
4. 직원 국외 연수 .....	212

## 제5장 인권사무소

제1절 개요	214
제2절 부산인권사무소	215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16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218
3. 인권교육·홍보·협력	219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25
제3절 광주인권사무소	227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28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231
3. 인권교육·홍보·협력	233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37
제4절 대구인권사무소	24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40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242
3. 인권교육·홍보·협력	243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48
제5절 대전인권사무소	250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252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254
3. 인권교육·홍보·협력	256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59

# 목 차

## Cont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 부 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265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78
3. 2016년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287
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293
5. 2016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294
6. 2016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306
7. 위원회 간행물	307
8. 보도자료	310
9. 위원회 소관 법규	316
10. 사진으로 보는 2016년	319
11. 위원회 활동일지	341

### 표목차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24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등 접수·처리 현황	95
[표 2-2-2]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96
[표 2-2-3] 최근 5년간 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98
[표 2-2-4] 2016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99
[표 2-2-5]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30
[표 2-2-6]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131
[표 2-2-7] 최근 5년간 유형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32
[표 2-2-8] 2016년 사유 및 유형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133
[표 2-2-9]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141
[표 2-2-10] 최근 5년간 상담 사례 분류	142
[표 2-2-11]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143

[표 2-2-12]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 상담 현황 .....	144
[표 2-2-13] 최근 5년간 진정사건 분류 현황 .....	145
[표 2-2-14] 2016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	146
[표 2-2-15]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148
[표 2-2-16] 최근 5년간 접수경로별 민원처리 현황 .....	149
[표 2-2-17] 최근 5년간 민원처리 현황 .....	149
[표 2-3-1] 분야별 인권교육 현황 .....	153
[표 2-3-2] 2016년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과정 운영 현황 ..	155
[표 2-3-3] 2016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	157
[표 2-3-4]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59
[표 2-3-5] 2016년 인권교육 실시 세부 현황 .....	161
[표 2-3-6] 2016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실시 현황 .....	162
[표 2-3-7] 2016년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	163
[표 2-3-8] 2016년 경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	164
[표 2-3-9] 2016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65
[표 2-3-10] 2016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	165
[표 2-3-11] 2016년 장애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	166
[표 2-3-12] 2016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67
[표 2-3-13] 2016년 노숙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	167
[표 2-3-14] 2016년 이주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	168
[표 2-3-15] 2016년 노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	169
[표 2-3-16] 2016년 영유아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70
[표 2-3-17] 2016년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71
[표 2-3-18] 2016년 스포츠인권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	171
[표 2-3-19] 2016년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72

# 목 차

## Cont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표 2-3-20] 2016년 인권경영 감수성과정 실시 현황	173
[표 2-3-21] 2016년 지방의원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173
[표 2-3-22]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174
[표 2-3-23] 연도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174
[표 2-3-24] 2016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실시 현황	175
[표 2-3-25]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	176
[표 2-3-26] <언론인권 길라잡이> 교재 주요 내용	178
[표 2-3-27]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교재 주요 내용	178
[표 2-3-28]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현황	180
[표 2-3-29] 2016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182
[표 2-3-30]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183
[표 2-3-31] 2016년 인권도서관 개최 행사 현황	184
[표 2-3-32] 2016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185
[표 2-3-33] 2016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191
[표 2-3-34] 2016년 제4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193
[표 2-3-35] 결정례 동영상 DVD 수록 내용	193
[표 2-4-1] 지역별 인권도서 전달 인권·시민사회단체 현황	198
[표 2-4-2] 2016년 분야별 인권단체 협력사업 접수 및 선정 현황	198
[표 2-4-3] 2016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199
[표 2-4-4] 2016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200
[표 2-4-5] 2016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01
[표 2-5-1] 인권사무소 위치 및 관할 구역	214
[표 2-5-2] 2016년 인권사무소 진정 및 인권교육 등 현황	215
[표 2-5-3]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216
[표 2-5-4]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17

[표 2-5-5]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18
[표 2-5-6]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20
[표 2-5-7]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20
[표 2-5-8]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20
[표 2-5-9]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인권전시관 운영 현황	222
[표 2-5-10]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228
[표 2-5-11]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29
[표 2-5-12]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 진정함 점검 결과	230
[표 2-5-13]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31
[표 2-5-14]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32
[표 2-5-15]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33
[표 2-5-16]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34
[표 2-5-17]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240
[표 2-5-18] 대구인권사무소 2016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41
[표 2-5-19]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42
[표 2-5-20]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43
[표 2-5-21]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44
[표 2-5-22]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44
[표 2-5-23] 대구인권사무소 2016년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44
[표 2-5-24] 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행사	248
[표 2-5-25] 대전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252
[표 2-5-26] 대전인권사무소 2016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53
[표 2-5-27] 대전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55
[표 2-5-28] 대전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255
[표 2-5-29] 대전인권사무소 2016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6

# 목 차

## Conten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95
[그래프 2-2-2]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	95
[그래프 2-2-3]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	97
[그래프 2-2-4]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131
[그래프 2-2-5]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	141
[그래프 2-3-1] 분야별 인권교육 횟수 .....	153
[그래프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횟수 증감 현황 .....	160

#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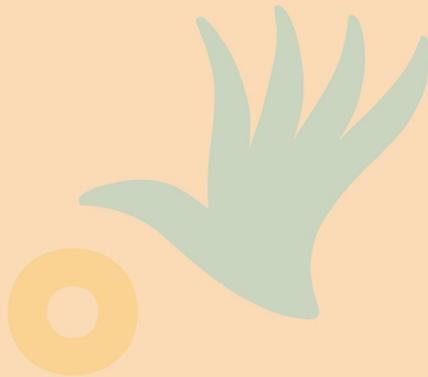
## 총론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3

제2장 2016년 대내외 환경 | 7

제3장 2016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 8

제4장 평가와 과제 | 1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 1부 | 총론

## <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1. 설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sup>1)</sup>에 입각한 인권전담기구이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다양성, 운영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하는 추가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이 된다.

### 2. 목적과 성격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구이다. 조직 체계상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이 원칙은 1992. 3. 3.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 12. 20.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라고도 한다.

### 3. 주요 업무

- 1)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의 연구 및 개선 권고
-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4)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권고
- 5) 국내외 인권옹호 단체 및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 4.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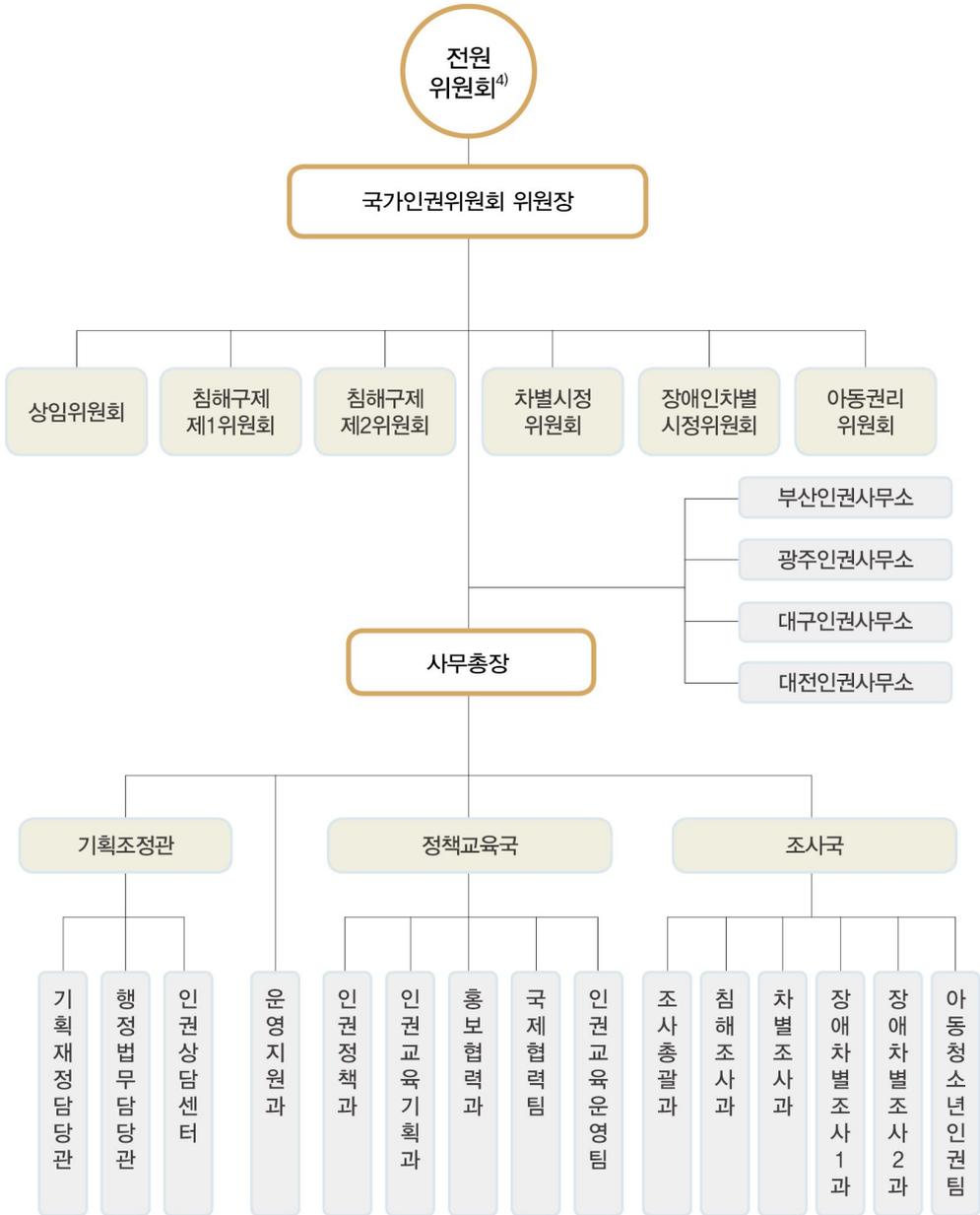
- **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 3인, 인권위원 7인 총 11인<sup>2)</sup>
  -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임기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무처** : 사무총장, 1관 2국 12과(담당관) 3팀 4소속기관
  - 정원 : 189명(2016. 12. 31. 기준)
- **기구 도표**<sup>3)</sup>

2) 인권위원 명단은 부록 265쪽 참고

3) 소위원회 관할

침해구제제1위원회	검찰·경찰·국정원·군·입법부·사법부 인권침해사건
침해구제제2위원회	구급·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기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공직유관단체 등) 인권침해사건(단, 각급학교 아동피해자 제외)
차별시정위원회	국가기관 등과 사인(私人)의 차별사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국가기관 등과 사인의 장애차별사건, 장애인·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사건
아동권리위원회	18세 미만 아동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내 인권침해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사건, 단 장애, 성희롱사건 제외)

소위원회 개최 현황은 부록 284쪽 참고



4)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최 현황 및 안건 목록은 부록 278쪽 참고

## 5. 2016년도 예산

### 1) 경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계	26,926	28,176	1,250 (4.6%)
인 건 비	12,816	13,667	851 (6.6%)
기 본 경 비	7,593	7,608	15 (0.2%)
주 요 사 업 비	6,517	6,901	384 (5.9%)

### 2)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6년도 예산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16
	① 인권의식 향상	362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100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454
인권교육 활성화		1,478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47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536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81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980
	⑦ 장애인 인권증진	375
인권제도 선진화		1,051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17
	⑨ 북한인권 개선	334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808
	⑩ 국제교류협력	684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124
인권위 정보화		1,112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112

## < 제2장 2016년 대내외 환경

### 1. 국내 환경

2016년 우리 사회는 소비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가슴기살균제 사건’이나 ‘여직원 결혼 후 퇴직강요 사건’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내부 구성원은 물론 소비자 등 전체 사회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남역 부근 여성 살인사건,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가혹행위 사건, 장애인 축사노예 사건,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6년 말 현재 9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81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인권센터 등 인권기구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증진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 입법이 논의되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 2. 국외 환경

2015년 12월 유엔 총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엔 논의 절차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참여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 이후 최초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유엔 총회 보조기관의 하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016년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2016년부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대한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성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추대되었고, 제네바에 이어 뉴욕 유엔본부(UNOEWGA: United Nations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공식적 회의 참여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 제3장 2016년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 1. 기본 방향

위원회는 중기계획인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2016년은 중기계획 2차 연도로서, 이 계획의 4대 전략목표(①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②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③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④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업무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인권의제에 대한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 소통·공감·동참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협력 강화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사업별 추진 성과

### 가. 위원회 4대 전략목표

#### 1)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자유권의 보장·강화

거듭 처벌 소지가 있는 정부의 「보호수용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표명, 치료 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 시 위원장 성명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제한 촉구, 청와대 앞 집회 일괄 금지통고에 대한 개선 권고, 검찰 수사과정의 피조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 사회권의 확대·증진

희귀 난치성 질환인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검토 등 의료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가슴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사회권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2015년 실시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년, 이하 ‘인권 NAP’)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특히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업과 인권 NAP’)을 별도로 권하였다.

##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대응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성명,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7·18·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대응,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국제인권 조약과 유엔 특별절차에 따른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APF(Asia Pacific Forum, 아시아·태평양포럼) 고문방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고문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국가인권기구 역할에 대해 발제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대응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 인권평가제도 도입 방안 마련

위원회는 인권상황 진단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권·사회권 분야 인권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방안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 2)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가정 밖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대학원생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정책권고 등 아동·청소년

인권 현안에 대하여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또한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아동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인권 현안을 점검하는 아동청소년 지킴이단 운영 및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 학교를 거점으로 한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노인 인권 증진

위원회는 요양병원의 노인인권 보장방안에 대한 정책 검토를 통하여 요양병원에서 빚어지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다.

세계 35개국 노인인권 전문가들이 ‘노인의 건강권과 빈곤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으로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위원회의 노인인권증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까지 노인인권증진 활동과 ASEM 글로벌 고령화센터(ASEM Global Ageing Center) 개소 승인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노인 당사자의 역량을 활용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세계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위원장 성명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

### 장애인 인권 증진

위원회는 항공기 및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일정 기준 미만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책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등 장애인 인권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고, 전국 7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에 참석하여 위헌취지 진술을 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여성 인권 증진

위원회는 종사자의 70.3%가 여성인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통하여 여성에게 차별적인 근로환경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및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권고, 성희롱 결정례 영상물 제작·배포,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로 성희롱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인권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 이주민 인권 증진

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7·18·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회화지도 비자(E-2) 소지 외국인 강사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 권고,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 개선 권고, 학교 밖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제조업 분야 종사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난민수용 선진국의 난민정책 사례조사 등 이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위원회는 군 영창,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를 하였다.

또한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나 편견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 치안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주민, 한센인(소록도),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취약계층 및 위원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 인권보호 활동을 하였다.

## 3)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

### 인권교육

위원회는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정부부처 교육기관 운영현황 및 인권교육 의무화 관련 법률 제정 현황을 분석하고, 인권교육원 설립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무원훈련기관 및 교원연수기관, 대학교 등의 인권교육 현황조사 및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 정책을 권고하고, 업무

협약 체결(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동국대학교) 및 영유아, 노인, 노숙인, 군, 대학 등 분야별 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권교육 협력 토대를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도 노력하였는데, 〈그림으로 보는 인권〉, 〈부모용 아동인권〉 등 3종의 인권 에세이, 〈언론인권 길라잡이〉,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등의 인권교육 교재, 〈스포츠와 인권〉, 〈기업과 인권〉, 〈별별이야기 1, 2〉 등 사이버교육 콘텐츠 3종을 개발·보급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6년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강사양성과정 및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전문강사단 교육과정으로 영유아, 아동, 장애, 사회복지사 등 11개 분야를 개설하였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하고,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인권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 인권 홍보

인터뷰, 기고 등 적극적인 언론 활용, 보도 관리 및 효과적 언론 공표를 위한 보도자료 매뉴얼 개선 등으로 언론을 통한 인권 홍보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결정례 동영상, 웹툰, 에세이, 사진 등 다양한 인권 콘텐츠를 발굴·제작하고, 페이스북, 팟캐스트, 블로그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였다.

위원회는 제1회 인권주간(11. 25.~12. 10.)을 맞아 전시관 운영, 라디오 광고 진행 등 온·오프라인 인권 홍보 활동, 인권영화 〈4등〉과 〈시선사이〉 개봉, 인권 웹진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제6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 및 위원회 설립 15주년 행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하여 위원회와 이들 헌법기관이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 동반자 관계임을 재확인하였다.

## 4)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 노동취약계층 등 인권보호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 조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관계 법령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노동취약계층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위원회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이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인 ‘기업과 인권 NAP’를 권고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권경영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였다.

유엔은 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NAP’ 권고 등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우리나라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여 2015년에 이어 ‘2016 기업과 인권 포럼’에 이성호 위원장을 고위급 패널로 초청하였다.

### 고도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검토, 통신자료제공 제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 등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한 위원장 성명 발표,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 유엔 주도로 인터넷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하는 등 정보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 얼굴, 홍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바이오 정보’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거래나 전자결제, 건강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바이오 정보가 유출·도용되거나 감시 또는 사업적 목적에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른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권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자 하였다.

###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위원회는 다양한 인권단체의 방문, 인권단체 간담회, 인권활동가 워크숍 개최, 주요 인권 취약 현장 방문,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인권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6년 3월 이성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추대되어 6월에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를 주최하였으며, 12월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GANHRI 대표로 참석하여 노인인권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등 노인인권 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아울러 2016년 6월 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개최 과정에서, 유엔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노인인권 증진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덴마크, 필리핀, 독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인권기구와 직원 방문 및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 나.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

위원회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OHCHR\_Seoul)와 공동으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 제재 방안 및 한국과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북한인권 전문가 회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을 표명하고, 해외 북한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개최한 북한인권포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증진 제도 개선방안 정책 검토,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신규 입국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 축적,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문 북한인권 용어집을 제작하였다.

## < 제4장 평가와 과제

2016년은 위원회 중기계획인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2차 연도로서, 위원회는 제4기 계획의 4대 전략목표와 20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2015년에 실시한 기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적용될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제3기 인권 NAP’와 ‘기업과 인권 NAP’를 권고하여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 인권침해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공개 변론 시 위원회는 당해 심판 대상 법률에 대한 위헌 취지 진술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원회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2016년 정책권고는 44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조정 성립은 18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통고 관련 집회자유 보장 권고,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가혹행위 사건, 축사노예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서 위원회의 노인인권증진 활동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까지 노인인권증진 활동을 승인받았으며, ASEM 글로벌 고령화센터 개소 승인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원회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연기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A등급을 받았으며, 이성호 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 추대되어,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에서 발표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뉴욕 유엔본부(UNOEWGA: United Nations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유엔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공식적 참여권을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단체 간담회 및 인권활동가 워크숍, 발간 자료 정보 제공, 주요 인권 취약 현장 방문 등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인권교육전문강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웹툰, 에세이, 사진 등 다양한 인권 콘텐츠 제작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한편 2016년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2.8% 수준에 그쳐, 앞으로 인권교육원 설치 등 국민의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를 알고 있다고 답변한 국민은 39.8%로 조사되었는데,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23
-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92
-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150
-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194
- 제5장 인권사무소 | 2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 2부 | 위원회 주요 활동

### < 제1장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9조 제1호, 제25조),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19조 제4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9조 제7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제12조)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제15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사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제23조)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제29조)한다.

##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계	646	304	319	23
2016년	72	44	26	2
2015년	36	12	23	1
2014년	46	27	18	1
2013년	43	27	16	-
2012년	42	24	18	-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의견제출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2. 정책권고 주요 내용<sup>5)</sup>

#### 가.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위원회는 2015년 9~12월까지 군 구금시설의 환경, 수용자 처우 및 관리 등 인권상황 점검을 위해 국군교도소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헌병대·군 검찰의 지적장애인 조사, 특별관리 수용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헌병대 및 군 검찰 등의 지적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적용할 것, △수용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하여 법무부 및 민간 교정시설과의 이송 체계 협의 등을 추진할 것, △군 교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권고(1. 27.)하였다.

5) 정책권고 목록은 부록 294쪽 참고

또한 국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실내 운동과 라디오 청취를 전면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교도관·교도병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하였다.

## 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적 평가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도입이나 실천 또는 점검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을 권고(2. 25.)하였다.

위원회는 2014년 9월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였으며, 대부분의 피권고기관은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담당자 배치,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결과를 제출하고, 권고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히는 등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인권경영 선언을 대내외에 공시한 기관은 10개 기관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인권경영 점검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공공기관 비재무적 평가 항목에 인권경영이 포함된다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이 단순히 선언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 시 아동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장이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합창단을 동원해 한파에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합창단원을 눈바람에 장시간 노출시킨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합창단원,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진정사건을 각하하였으나, 향후에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장 영결식 당일 눈이 왔으며, 기온은 영하 2.7℃였으나, 합창단원들은 얇은 단복만 입고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었는데도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되는 건강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라고 권고(4. 12.)하였다.

## 라.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와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 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법규의 제정, 고충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 개선 등을 권고(5. 12.)하였다.

##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아동학대의 특성이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을 권고(5. 19.)하였다.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무기관 내 신고체계 일원화, 책임소재 명확화와 전용쉼터 확충, 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 확보를 권고하였다. 또한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의 상담이나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고, 이러한 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다.

아동학대로 인한 교육적 방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아동의 취학 의무 유예 및 면제 기준과 교육적 방임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동 발달 단계별 교육 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 방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심리·발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 바.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

위원회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다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폐기 규정을 준수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 보관 금지에 관한 내용을 동법에 명시할 것, 채용서류의 반환 또는 파기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히 하고 실제 파기 여부를 관리·감독할 것,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제도 시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6. 9.)하였다.

## 사.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

위원회가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일부 항공사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거나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 및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탑승 및 하기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항공기 탑승을 위해 장애인에게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항공사 면책에 관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고, △7개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는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등을 권고(6. 13.)하였다.

## 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인신매매(Trafficking in Persons, TIP)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유엔이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과 「유엔 인신매매방지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

하는 등 인신매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협소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일선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 및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 지표를 토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6. 20.)하였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와 피해자의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 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자. 재판 중인 병역기피자 해직 권고 관련 「병역법」 개정 권고

진정인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여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 되었고, 2013년 9월 「병역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년 10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방법무청장은 진정인이 「병역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우편집중국장에게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 근무 하던 진정인의 해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진정인은 2014년 4월 해직되었다.

조사 결과, 「병역법」에 의한 취업제한 등의 조치는 병역의무대상자가 병역을 기피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징집·소집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집중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불구속 기소되어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역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생계수단까지 박탈해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같은 취업 제한은 대상자 행위의 성격과 경중, 생활환경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 수준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93조 제1항을 개정할 것과 위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 사법기관에 자수하여 재판 계류 중인 사람에 대해 동법 제76조 제1항 제2호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병역 관계법령해석지침」 변경을 권고(6. 27.)하였다.

## 차. 소방공무원 안전건강권 증진 권고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7. 7.)하였다.

위원회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카.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 NAP’)을 수립하라고 권고(7. 25.)하였다.

제3기 인권 NAP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제1부 인권 NAP의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15개 대상별 핵심추진과제(향후 5년간 집중 및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제3부 자유권·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 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이 포함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증진 문제와 국제 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강조한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반영하였다.

## 타.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권고

위원회는 기업이 인권친화적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7. 25.)하였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기업과 인권 정책 일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9개 과제로 구분하고, 각 과제별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파. 정신병원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권고

2015년 위원회가 실시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에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격리·강박이 빈번하고, 과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의에 의한 지시가 아닌 필요 시 실시되고 있었고, 관련 기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설명 없는 격리·강박, 환자의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 욕설·심리적인 인격 훼손, 과도한 신체적 폭력, 음식물 제공 거부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격리실 내에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화장실이나 환풍시설이 없어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강박도구 등도 열악하게 관리되는 실태 등이 지적되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격리·강박과 관련한 「정신보건법」 조항과 「격리 및 강박지침」 상의 격리 강박의 목적과 원칙, 적용기준, 절차가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의 법적 근거 강화,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 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격리실의 구조 및 설비, 강박도구 표준화 등의 정책개선을 권고(8. 4.)하였다.

아울러 격리강박은 치료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인 만큼 격리강박을 대체할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격리강박에 개입하게 되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 하. 선박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권고

위원회가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2015년 6월 1일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총 162척의 여객선을 국내 항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11척(6.8%),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13척(8.0%)으로 전체 여객선의 약 93%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약자법」에 따라 휠체어 승강 설비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후에 건조된 여객선도 관련 규정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 시행 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교통약자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 권고(8. 22.) 하고, 국민안전처에 유선 및 도선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하였다.

## 거.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8. 24.)하였다.

## 너.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및 출국대기실 환경 등 개선 권고

출국대기실(일명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

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이 2013~2015년 평균 33.9%에 이른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를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 시행령」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하여 최소화,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난민인정심사에서 불회부 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다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기본적인 처우를 제공하라고 권고(8. 25.)하였다.

## 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권고

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신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8. 25.)를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이 모성보호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하였다.

## 러.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던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HIV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선 교육청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당사국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통보제도에 따라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2015년 5월 제86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위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에서 인종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실질적 손해에 대해 적절하게 보상하라는 등의 권고(9. 8.)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헌법」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에 따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 개인통보제도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국내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에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의 인종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 사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머.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

2015년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과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대학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호되지만 대학의 자율성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과 준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11. 4.)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은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부터 9항까지는 대학원생의 권리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연구결정권 및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사생활보호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10항부터 13항까지는 권리 침해 시 권리구제 및 본인의 학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대학원생의 의무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대학원생 인권장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대학원생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대학평가제도의 평가지표에 대학원 인권보장 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대학원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평가 항목에 인권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버. 가사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장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11. 10.)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가사근로자는 개별 가정에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다.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는 공공부문 가사근로자와 달리,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로 약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 중장년, 저학력층이 다수이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하 ‘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하여,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단결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근로자는 근로 장소가 가정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근로조건외 최저기준 보호나 사회보험 수급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비공식부문의 모든 가사근로자가 차별 없이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문구 삭제 등 입법적 조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서.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위원회는 2016년 아동양육시설(법인 운영시설 2개소, 개인 운영시설 1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환경·아동학대·자립지원·정신건강 관리 분야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개인 운영 아동양육시설은 19명의 보호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아, 법인 운영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미비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인 운영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11. 17.)하였다.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아동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에게 채권추심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대응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관련 치료가 필요한 시설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의 불안 및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을 인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고 필요 시에는 전문병원 및 상담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 어. 민사집행 과정에서의 아동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법원집행관이 법원의 집행서류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집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인 피해자들만 있는 가운데 문을 크게 두드려 피해자들이 문을 열게 한 뒤 집행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관의 행위 자체는 관련 규정과 민사집행의 효력을 다룬 판례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적법한 공권력 집행이라 하더라도,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하므로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보호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고 낯선 사람의 방문만으로도 쉽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집행관이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민사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11. 17.)하였다.

## 저.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개선을 권고(11. 24.)하였다.

2015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출’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가출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기보다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가출 청소년’을 소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가출’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 삭제를 권고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이 전학, 은행 통장 개설, 병원 치료, 휴대폰 구입, 근로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학대가 있었던 경우 동의를 받기 어렵고, 아동복지시설장이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청소년보호기관 종사자가 후견인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후견인 지정이나 친권 재판 절차에서 법률 조력 제공과 같이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학교를 떠나거나 장기 결석한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오려고 해도 결정권을 가진 학교장이 불허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복교 거부 시 이의 제기나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마련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소년보호기관에서 긴급하게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고 있어,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보호기관에서 생활한 기간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할 것도 권고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부양 여부 등을 확인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건강 특화형 쉼터’에서 의사가 월 1회 진료한다거나 간호사가 주 3회 순환 배치되는 데 그쳐 ‘건강 특화형 쉼터’의 기능 보장 및 실질적인 의료상담이 가능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도 쉼터를 묶어 임상심리사를 배치하는 방안, 광역단위 거점지역에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 설치할 것도 권고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쉼터의 입소 기간에 따른 유형별 쉼터의 경계가 모호하고 쉼터별 특성이 부재하며 일시쉼터가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쉼터를 다양화, 전문화할 것, 나아가 청소년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시·도 단위 가정 밖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일시쉼터를 증설하고, 종사자 배치 기준에 아웃리치 전담 요원을 명시할 것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쉼터 시설 설치 운영 기준에 침실 기준 정원 및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대상자에 청소년쉼터 퇴소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학대를 경험하고 이를 견딜 수 없어 가정 밖의 삶을 선택하는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기관 종사자들이 해당 청소년이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기피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최소한의 신고유예 기간을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동의를 전제로 신고하는 방안 또는 귀가할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 처.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대한 법령 개정 권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로부터 매년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금 자기 내심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위 시행령 규정은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11. 28.)하였다.

#### 커.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인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질환이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이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권고(12. 1.)하였다.

2012년 매년 새로 발병하는 환자 수가 10여 명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 외에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만성 가성 장폐색과 급성 가성 장폐색을 구별하여 별도의 병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위원회는 만성 가성 장폐색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아 국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비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환자의 생존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만성 가성 장폐색 질환을 산정특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산정특례 운영 목적인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략 예방 및 사회안전망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터. 노인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유형 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12. 5.)하였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의사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만성질환 노인들이 장기간 한 장소에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많은 노인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퍼.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

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콜센터 및 유통 분야 실태조사,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 발간,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 발간, 현장간담회,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고, 제도적 수준의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여 2015년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그간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책권고(12. 5.)를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 정의,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국가와 사용자의 책무 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명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하여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고, 감정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보건 조치 의무를 동법률에 명시할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내용 및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할 것,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허. 2016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위원회는 법률·의료·상담·교정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조사관들로 방문조사단을 구성하여 2016년 8월 ○○구치소 등 4개소의 구금시설에 대해 보호장비, 조사·징벌, 진정실 및 보호실, 3진 아웃제 등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사안 관련 방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보호실, 진정실의 청결 유지 등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감염병, 정신질환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12. 23.)하였다.

## 고.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사업장 내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의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근로자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민원 등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고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한 사업장 전자감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29.4%에 그쳤으며,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그 인지 정도가 더욱 낮았다.

이에 위원회는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12. 27.)하였다.

## 노.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최근 시설 개선 등의 개·보수·신축 등이 이루어진 곳과 2015년부터 새롭게 광역유치장으로 운영되는 곳 중 7개 광역유치장을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유치실 내 밀폐형 화장실이 냄새나 소음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 화장실 이용 시 CCTV상에 신체가 노출되는 문제, 여성유치인 위생문제, 입감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정밀검사 시행,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상시 배치되지 않는 문제, 전염성 질환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대처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실 화장실의 개조 및 CCTV 감시 내용 보완, △충분한 샤워 시설 설치 및 샤워 기회 제공, △입감 과정의 신체 검사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책 마련, △여성유치인보호관 배치 적극적 고려, △전염성 질환이 있는 유치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대처 방법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권고(12. 27.)하였다.

### 3. 의견표명 주요 내용<sup>6)</sup>

#### 가.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 필요 의견표명

위원회는 ○○군청의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 추진 시 일선학교에 개인정보 수집의 명확성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알리고, 사업 시행 학교로 하여금 서비스를 신청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공지할 시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 개인정보 보관 및 폐기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군청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위해 요구하는 학생의 학교 정보나 보호자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외에 지원신청서(예시)상의 ‘자택 주소’, 2개 학교의 서비스신청서상의 ‘계좌(카드)’나 ‘건강정보’ 등과 같이 안심알리미서비스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거나, ‘기타 서비스 관련 업무처리 및 고객 혜택 이벤트 정보 안내 등’ 개인정보 활용 목적이 상당히 포괄적인 경우가 발견되는바, 이러한 사항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일선학교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군청의 지원신청서나 2개 학교의 신청서상의 안심알리미서비스의 내용에는 등학교 알림문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안심보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 각각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심알리미서비스에 안심보험 제공이 포함된다는 점과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공지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심보험 이용에 대하여서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3. 10.)하였다.

6) 의견표명 목록은 부록 297쪽 참고

## 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정부가 2016년 4월 15일 입법예고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대테러 인권보호관 권한은 대테러 임무 수행 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시설 이외에서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대테러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한 시행령안 제18조 제4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4. 29.)하였다.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 시 대테러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빚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테러방지법」 제7조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관 도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직무 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업무 수행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 대테러 인권보호관 자격 요건이 일부 직업군으로 한정된 점, 해촉 사유 등 신분보장 규정이 일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의 테러진압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한 공권력 수행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력의 동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조직인 군대의 동원 사항이 될 수 없고,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 사유는 「헌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의 작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위헌 소지가 있고 절차적 요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2015년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심의 시 위원회 사전 협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 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유아를 가진 모든 군인에 대한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사회단체 가입 허가 기준 수정, 고충심사 청구의 방법 수정,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진정·상담 등의 위원회 이첩,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위원회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5. 12.)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원회의 의견표명 사안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심의 시 위원회 사전 협의, 유아를 둔 모든 군인에 대한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가, 사회단체 허가가입 기준 수정에 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2016년 3월 2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의견을 표명(5. 12.)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대학 입학시험’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고, 국가 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의 편의 제공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에서 ‘채용시험’만이 아니라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 모든 시험’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특별히 채용시험에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대학 입학시험 이외에도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력인정시험’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권리구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실시되어야 하며,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제하의 지면 기사 및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온라인 카드 뉴스 보도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변호사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을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특정 성(性), 출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표현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표명(5. 25.)하였다.

#### 바. 「인신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신보호 강화를 위해 인신보호관 직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신보호 업무를 수행해온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7. 7.)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2014년 4월 14일 정부가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인신보호관의 성격과 기능이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고 이로 인한 혼란 등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우선 해결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여 2016년 6월 21일 위원회에 의견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보호시설 조사 및 구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조사 후 다양한 구제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구제 권한이 위원회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소속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개정법률안의 수용시설 점검 업무를 국가인권기구인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학벌차별 등의 관행 개선 의견표명

학원의 교육 성과 홍보가 수강생 모집 등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영입의 자유 등에 속할 수 있지만, 홍보물을 게시할 때 수강생의 이름과 사진, 출신학교, 합격한 상급학교 등 세세한 내용을 게시하면서 게시 목적, 기간,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수강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길게는 10년 이상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이런 관행으로 상당수 학생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겪거나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의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해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전국의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학원 스스로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7. 8.)하였다.

## 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외교부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라 2012년과 2015년 사이 동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제17·18·19차 통합 국가보고서(안)를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5차, 제1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 정책에 추가·기술,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출입국항 난민신청과 관련한 정부의 해결 방안 모색 노력 및 난민심사 인력 보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기술,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함에 대해 기술, 위원회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권고」 반영, 기타 국가보고서 기술상에 표현·용어의 수정과 통계자료 보완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7. 25.)하였다.

## 자.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하 ‘2대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 권리가 약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8. 25.)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2대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공정인사지침」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는 근로자 등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2대 지침의 성격을 「근로기준법」상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대 지침의 홍보나 사업장 지도·감독을 위한 활용 과정에서 2대 지침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정확

하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대 지침에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면이 있어, 일반 국민과 노사 당사자가 오해하거나, 근로 현장에서 사용자가 2대 지침을 근로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차.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사건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해 쓰러져 투병하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운용실태 점검 및 안전성 강화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8. 30.)하였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는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미 위원회는 2008년과 2012년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위해성을 감안하여 사용 기준 등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수용한 바 있다.

#### 카. 검찰 수사 중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5년 5월경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참고인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 사고 사례를 정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9. 28.)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가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8월 29일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10. 12.)하였다.

위원회는 법무부의 개정안 취지와 같이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은 일면 수긍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 여부나 원인,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관리·통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등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따르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준수 사항 부과 규정과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금융위원회는 2016년 4월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적용한 정보 즉 ‘비식별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개인 식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비식별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요건을 명확히 할 것, 비식별 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10. 13.)하였다.

## 하.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급학교 배정 관련 의견표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 외의 서면 사과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더라도 상급학교 배정 시 분리 배정이 고려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학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던 경우 상급학교 배정 전에 별도의 심의 절차를 두는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급학교 배정에 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10. 26.)하였다.

## 거.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 사용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정 사례가 있어 경찰청장에게 전자충격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10. 27.)하였다.

조사 결과, 2016년 5월 호프집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진정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재차 9초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경찰관을 징계 조치하고, ○○경찰

서장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최근 5년간 전자충격기 사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자충격기가 위해성 장비로서 심한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

#### 너.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가 10월 31일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동법률안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11. 10.)하였다.

위원회는 구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2004. 1.),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4. 12.) 등을 통해 ‘보호수용’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고, 보호수용 명령의 한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위원회는 이번에 발의된 입법예고안이 2014년 법률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4년 의견표명 시 지적한 거듭 처벌의 문제, 보호수용 명령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가 작성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후속보고서 초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11. 24.)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2015년 11월 5일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 정보를 1년 내로 제공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위원회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행 의지와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진선미 의원이 7월 29일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같이 집회 참가자를 향한 직사 살수 금지 및 위해성분 혼합 금지 등이 바람직하고,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12. 1.)하였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살수차 사용이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신체의 안전을 과도하게 위협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2015년 11월 14일 집회 시 살수차 사용으로 인한 농민 피해사건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 살수차 사용 요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성명,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용 요건 등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 및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 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 성분을 섞을 경우 특정 대상자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뿌려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염료 혼합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조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제 사회에서도 노인, 여성, 아동 등 노약자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머. 2016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에 따른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6년 7월 외국인보호소의 시설 환경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 인권상황을 점검하고자 외국인보호소 2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조사는 보호장비 사용, 외부교통권, 아동 보호, 의료, 직원 처우·생활, 일시보호 해제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총 166부 설문조사, 심층면접, 현장조사, 기관 자료 제출 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전화, 면회, 인터넷 사용 등 포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보호외국인 급식의 질 개선과 보호외국인의 문화 관습 등을 고려한 급식 운영 시행, △외국인 보호규칙에 규정된 보호외국인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시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12. 23.)하였다.

## 4. 의견제출 주요 내용

### 가.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하 ‘통신자료제공 제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11. 28.)하였다.

위 조항에 대하여 2014년 2월 위원회가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삭제를 권고하였으나 불수용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통신자료 제공 시 사후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2016헌마388)하였다.

지금까지 수사기관 등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는 이용자의 단순한 가입 정보에 불과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비해 내용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2012헌바15, 2012헌바182, 2015헌바73 병합사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11. 28.)하였다.

위원회는 2005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및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2008년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행 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비롯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하급심 법원에서 일부 무죄 선고가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정부는 아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며, 국가가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을 통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5.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주요 내용

### 가. 아동 인권 보호·학대 예방을 위한 성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비롯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 대한 대응 미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위해(危害)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미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친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권고’ 실시,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대외 홍보를 통한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장 성명(1. 27.)을 발표하였다.

### 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한 위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5. 19.)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2014년 8월 5일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사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 등이 반영되지 않고 단지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있음을 밝히고, 향후 20대 국회의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 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성명

위원회는 5월 23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5. 23.)을 발표하였다.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피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사망, 폐 손상, 다양한 만성질환 등으로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영유아와 임신부 등이고, 국민들이 손쉽게 구비하여 사용한 생활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고라는 점에서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 관련된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기업과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이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과 인권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라.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성명

위원회는 5월 17일 강남역 부근에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에 따른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위원장 성명을 발표(5. 31.)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으며, 최근 몇 년간 특정 성(性)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에 의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입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

하였는데, 위원회는 경찰의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언론이 정신질환과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집중하고, 상당수의 국민이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 격리의 대상으로 예단하여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비하 및 혐오 실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진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및 혐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입장임을 밝혔다.

## 마. 하청근로자 산재 사망사고 관련 성명

위원회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하청근로자의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위원장 성명(6. 3.)을 발표하였다.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수많은 하청근로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가 2014년 실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하청, 재하청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하청근로자들은 더욱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공급망 내 인권침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근로자의 안전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여야 하며, 위원회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성명

위원회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6. 15.)을 발표하였다.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노인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및 사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정책권고(2013), 노인 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2014) 등을 수행하고, 2016년 3월부터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eing)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포함한 노인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 '세계 난민의 날' 성명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신청자들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6. 19.)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국민이 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책임은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지만,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199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 7,523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592명으로, 2014년 세계평균난민인정률 2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의 절박한 처지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난민의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아.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 관련 성명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축사에서 일하면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분노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옆 쪽방에서 생활하며 농장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등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이 2016년 7월에 발생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사건이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정신적·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의 보호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장애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장 성명을 발표(7. 28.)하였다.

##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옹호 활동

###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sup>7)</sup>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인권정책권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가. 혐오표현 실태조사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혐오 표현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실태조사는 15~59세 내·외국인 및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총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약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혐오 표현 경험, 가해 경험,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혐오 표현 경험이 온라인보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고, 가해자들은 혐오 표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대체로 혐오 표현 규제에 긍정적이었으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 한계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비사법적 규제 방안 및 인권교육 등 형성적·예방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나.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2016년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7)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관련 실태조사 주요 내용은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참고(86쪽)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목록은 부록 305쪽 참고

실시하였다. 수용자 건강 관련 진정사건은 개별 수용자에 대한 의료 조치 내용만으로는 인권침해 여부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 조사나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수용자 건강권을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정 의료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국제인권기준을 토대로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관련 인권상황에 대해 문헌조사, 현장조사(설문조사, 의무기록조사, 수용시설 현황 및 의료서비스 조사,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금시설 내 1차 보건의료 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구금시설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조직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체 구금시설 일반 환경 및 의료시설 개선, 구금시설 정신보건 프로그램 도입 확대,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교정시설의 관리 방안 및 구금시설 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개선 노력, 3~5년 주기 전국 구금시설 수용자 대상 건강권 전수 실태조사 실시, 교도소장·의무관 등 구금시설 주요 간부 대상 건강권 관련 인권교육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건축 규모와 건축 시기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 98%, 이·미용실 99%가 300㎡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위원회는 편의증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정 기준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슈퍼마켓, 이·미용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서울, 광주, 성남 등 3개 지역에서 각 40곳씩 총 120곳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출입구에 2cm 이상 턱 또는 계단이 있어 단차가 있는 시설이 전체의 82.3%로 나타났으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65%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라. 방송 뉴스 보도 성차별 실태조사

위원회는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의뢰하여 2016년 1~6월까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메인 뉴스를 대상으로 성폭력과 살인, 스포츠 보도를 모니터링하였다.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치게 상세한 사건 묘사, 상황 재연을 통한 선정적 화면 구성 등이 제기되었다. 여성 살해사건 보도는 원칙 없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결론 제시,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 보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관련 보도는 여성 선수보다 남성 선수를 더 많이 보도하고, 여성 선수의 외모·나이 강조, 여성 선수에게 여성성을 강조한 별칭 부여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미디어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방송계의 남성 편향적 리더십 개선, △기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송 평가 항목에 성평등 관련 항목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 마.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하여 통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초단시간 노동에는 노인, 여성, 청년, 대학생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 업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62%가 본인이 가구 수입을 담당하고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및 청년 아르바이트 업종은 노동조건도 열악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노동기본권 유린 정도도 심각하지만 이 업종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학업 종료 이후 업종 전환 및 정규직 취업 등을 통한 일자리의 수직 이동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결합도가 약하였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청년 아르바이트 업종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 △여성취업자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노인일자리 업종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법적 보호, △근로시간비례원칙의 차별 완화 가능성에 대한 개선, △정규직 일자리의 쪼개기 현상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바.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용역

위원회는 2012년 기본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지자체 인권제도의 현황을 망라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6년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용역은 지자체 인권 업무 관련 기초현황 전수조사, 담당부서,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였으며,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인권업무 담당자들은 위원회가 지자체의 인권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제공, 인권사무소에서 인권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지자체 인권기구 운영에 있어 사전 정보 제공 및 인권위원 대상 인권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인권기구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인권담당 부서의 전문성과 조정 역할 강화, 시민참여의 실질화와 제도화, 민관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연구용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회원인 117개 국가인권기구는 각 국가에서 인권 전담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나,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국가인권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차이가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보다 잘 준수하도록 인권기구의 지위, 역할, 기능,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파리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용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연구에서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회원기구의 권한 및 기구 형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인권위원 선출 방식,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및 권한 행사 방식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의 인권 시스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일반 현황 조사대상은 아메리카 15개국,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아프리카 18개국, 유럽 28개국으로 총 76개국이었다. 이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4개 국가를 제외하여, 이번 조사연구는 모두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중 아메리카의 3개국, 아시아·태평양 4개국, 아프리카 3개국, 유럽 6개국으로 대륙별 안배를 두고, 유럽의 인권 분야 선진 기구들을 더 많이 포함시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 운영체제 구성 논의에 활용하며, 교류 협력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아. 생식독성물질<sup>8)</sup>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생식독성물질’의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2016년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와 피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많은 근로자는 ‘생식독성물질’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여도 그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해 화학 물질에 의한 생식독성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원회는 생식독성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상의 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산업형 성매매 형태(조건만남)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자연명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또래 포주의 등장 등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따른 대응

8)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생식독성물질에 직접 노출된 개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이다. 전자부품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인쇄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생식독성물질 노출 위험이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정책 및 피해 지원 현황과 관련 법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국제인권기준과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고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매매 경험 아동·청소년과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매매의 문제점, 가출(빈곤)과 성매매, 학교교육체계에서의 이탈, 성매매의 저연령화, 알선자(조직)와 성구매자의 단속 및 처벌, 성매매 2차 피해, 성매매 청소년 지원시설, 사법적 지원체계,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 차.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실태조사

공정하고 평등한 고용 기회 제공 및 고용상의 대우를 위해서 고용차별은 금지되어야 하나 채용 과정에서 제출받는 입사지원서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취업의 기회(면접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위원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16년 5월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입사지원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팀은 그동안 정부가 경력과 능력을 우선하는 채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표준이력서, 역량기반 지원서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표준이력서 안을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현행 입사지원서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우며,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는 구인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온 입사지원서 항목이나 이력서 양식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정착을 가로막고 있어, 채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표준이력서 사용 확대, △능력 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사회문화적 인식 확대,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우수기업사례 발굴·홍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카.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노동 현장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는 ‘이주’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성에 의해 남성 이주노동자와는 다른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전국에 분포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385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였다. 대부분 50명 미만(74.2%)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81.8%가 30대 이하(평균연령이 32.3세)로서 특히 모성권이 적용되는 이들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및 고용 변동신고로 인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어·육체폭력, 산업재해의 위협에 노출되는 등 노동조건, 주거환경, 건강권, 모성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타.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용역

위원회는 국내외 인권 환경 변화에 따른 각 행위주체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연구용역은 향후 15년간의 정치사회 지형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기업과 인권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부와 기업(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 등 역할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2030년까지 수행할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유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정부, 사기업,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단기(2020년까지), 중기(2025년까지) 및 장기(2030년까지) 세부목표 총 61개를 제시하였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 금융·투자기관의 실행 매뉴얼인 ‘연기금 인권투자 실행 매뉴얼’을 시범 제작하였으며, 농업, 가스, 서비스 등 8개 산업과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12개 인권 이슈를 교차시켜 총 96개의 인권 이슈가 도출된 ‘산업·인권 매트릭스’를 제시하면서, 각 이슈의 중요성, 심각성, 특이성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 파. 2016년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인권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지형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인권과제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504명, 교수·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 활동가·교사 등 전문가 500명, 전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 542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 서면조사가 진행되었다.

일반 국민의 인권 의식 조사 결과, 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식과 관심, 그리고 인권 존중 의식은 높아지고 있었고, 인권 침해가 심각한 분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집회·결사의 자유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반대, 최저 시급 인상 요구,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권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전문가에 대한 인권 의식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외국인 노동자·노숙자 등 경제적 약자, 병력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우려하였으나, 학생인권 조례 제정(75.5%), 양심적 병역 거부(69.6%)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인권 침해 가해자는 정치인(25.8%), 검찰, 군 상급자, 직장 상사 순으로 나타났고, 인권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77.3%)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중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결과, 세계인권선언, 학생 인권조례 등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인지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인권 관련 개념의 인지 경로로는 수업시간 내 교과서의 비중이 높았으며(93.4%), 빈곤 및 기아 문제를 자신과 가까운 문제로 여기는 학생의 비율(61.6%)이 상승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2017~2021년) 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 심의 시 참고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의 중장기 업무계획인 ‘제5기 인권 증진행동계획’ 수립과 헌법 개정에 대비한 기본권 강화 및 인권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 하. 장애인 평생교육권 실태조사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에 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와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주로 ‘직원이나 교육생들의 개인적 소개’(57.0%)로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참여한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27.5%), ‘문화예술교육’(24.2%), ‘인문교양교육’(17.3%)의 순이었으며, 평균 참여 기간은 3년 6개월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이용자의 만족도는 ‘평생교육기관에 만족’(66.5%), ‘강사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만족’(68.5%), ‘강사와 직원의 태도에 대한 만족’(7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수강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가 22.8%,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제공받는 경우가 40.3%,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별 원인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부족’(25.0%), ‘해당 기관 담당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21.7%)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74.7%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충분치 못하다’고 답하였으며, 72.7%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하다’, 그리고 77.5%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 거.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바이오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바이오 정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제가 미비하고 프라이버시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 또한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및 외국에서의 바이오 정보 기술 실태, 피해 실태, 국내외 법제 현황,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바이오 정보를 통한 생체인식 기술은 공공행정, 출입통제 및 보안, 범죄예방 및 수사 등의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유전정보의 경우 검찰·경찰이 공동으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민인식 조사 결과,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61%로 바이오 정보 활용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생체인식 정보, 건강 관련 정보 등 바이오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히 규제·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6%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법령상 바이오 정보에 대한 용어 정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 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 정비, 바이오 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질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해외사례 연구용역

장기간 비자의적으로 격리되거나 가족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탈시설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상화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보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병원과 각종 정신

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와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정신보건체계에 관한 종합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보건의료 중심의 현행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가 갖는 문제점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법적 권리 및 제도 개선 방향, 재정지원 방식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해외 사례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사례를 통하여 국내 적용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신장애인 관련 재정지원 방안,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바우처 방식 검토, 공공사례 관리체계 연계모델, 사회복지시설에 직업재활시설 부설,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 다.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위원회는 HIV/AIDS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진정사건이 끊이지 않아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76.2%의 감염인 당사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 경험한 차별로 ‘치료, 수술, 입원 시 감염 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 사용’(40.5%), ‘약속된 수술 기피 및 거부’(26.4%),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21.6%), ‘공식적 협진 경로 이외 의료인에게 감염 사실 누설’(21.5%)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별은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의료차별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예비)의료인 인권교육’(61.8%), ‘강력한 제재와 처벌’(19.1%)로 응답하였다.

또한 HIV/AIDS 감염, 고혈압, 신종인플루엔자, 조현병, B형 간염 및 간경화, 다운증후군 6개 질환에 대해 5점 스케일을 이용하여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HIV/AIDS 감염 23.95점, 조현병 16.98점, 신종인플루엔자 16.3점, 다운증후군 11.56점, B형 간염 및 간경화 8.26점, 고혈압 2.61점으로 단연 HIV/AIDS 감염에 대한 의료차별 정도가 가장 높고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러.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

위원회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부적응자 증가 및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하여 징병검사에서 전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복무 부적합 인원에 대한 기준과 실태를 조사하고, 현행 입영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징병검사자, 지휘관, 군복무 병사들의 입영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군복무 부적응자 사례 및 관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사례 분석, 해외 사례 분석(미국, 독일, 이스라엘, 대만),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정책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병역법」 제17조 개정, 24시간 고충 상담 제도화, 도움 및 배려병사 분류 기준 선정 및 관리 업무 표준화, 지역 심리상담센터 운영, 종합심리검사에 대한 병무청 주관 시행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 2. 인권증진사업

### 가. 노인인권 모니터링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

위원회는 제8기 노인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실태를 조사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는 노인여가 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활동, 프로그램 이용시간 제한 등의 이유였다. 여가시간 활동 형태로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 보기를 하거나 친구·친가 방문, 동호인 모임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노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3년 이상, 주 2회 이상 이용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 선택과 설명, 강사의 전문성, 다양한 프로그램 신청 가능성, 프로그램 안내 및 선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 나.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 대상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2012년 2월 위원회가 권고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5년 ‘이주아동의 발달권’ 모니터링 결과 학교 밖 이주아동 청소년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인지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사례를

수집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들은 정보 부족, 종교·문화 차이, 경제난, 언어 장벽, 주변인들의 배제·차별 등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고, 학교 등 단체생활을 통한 정보 공유·접근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언어 장벽,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배제, 경제난 등으로 중도입국 이주아동·청소년 학업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고, 다문화 예비학교, 레인보우 스쿨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정보 부족, 접근성 미흡, 다른 연령과 통합교육 등으로 실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파악되었다.

#### 다.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를 즉각 개선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을 중심으로 총 178명의 모니터링단원을 위촉하였다. 모니터링 단원의 66.9%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 등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었다.

활동 내용으로 △공공기관 245개(우체국 195개, 고용센터 50개), △대형 판매 시설 164개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모니터링하였으며,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당 기관에 송부해 자체 개선을 유도한 결과 96% 이상의 기관에서 개선 계획을 제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안전권 강화’ 및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였다.

## 라.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학교를 거점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6~10월 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도출된 인권과제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개입, △교육에 있어서 개별화와 다양성을 교육의 주류 정책으로 포함,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 보장,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학칙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등이다.

## 마.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활동

아동·청소년 당사자 관점에서 스스로 인권문제를 발견하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5개 권역(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을 중심으로 14~19세 청소년 총 102명의 아동·청소년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지킴이단원 스스로가 활동 주제를 학교규칙, 중학교생활인권 규정,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대한 참여권 보장 등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6~8월까지 학교 규칙 및 참여권, 청소년노동인권 등 모니터링, 캠페인, 기관방문 활동을 하고 나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두발·용의복장,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성교제 금지, 소지품 검사, 학교 비판 금지, 상벌점제 등이 권역별 불만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 바.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운영

정보인권 정책기획단은 정보인권 현안의 발굴 및 논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서 2015년 6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이버보안과 국가의 관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제도 개선 방안, 본인확인제도(실명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실성·시의성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운영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정보인권 정책 기획단을 통해 2017년도 위원회 정보인권 업무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 3. 주요 토론회 및 간담회 등<sup>9)</sup>

#### 가.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위원회는 전국 12개 병원의 전공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1,130명의 여성보건인력을 대상으로 성차별, 모성보호,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발표회(1. 19.)에서 폭력 및 성희롱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 오류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기관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분야 여성 종사자의 인권상황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나. 성희롱 2차 피해 실태조사 연구결과 토론회

위원회는 성희롱 2차 피해자의 구제 강화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근로자, 학생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성희롱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9) 토론회 등 자료집은 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권도서관/인권위 간행물' 자료실 참고

토론회(1. 21.)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과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나타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구체화 등 개선안이 논의되었다.

#### 다.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토론회

위원회는 2015년에 진행한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1. 26.)하였다.

토론회에서 군사법원 폐지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2017년 7월 시행 예정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검토한 후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라.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토론회

위원회는 201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1. 26.)하였다.

토론회에서 유통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종사자의 61%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하였으나, 적절한 해소 프로그램이 없는 등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 높은 이직률 등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서울(4. 19.)을 비롯하여 대전(4. 7.), 대구(4. 15.), 부산(4. 21.), 광주(4. 26.), 제주(4. 26.), 경기(4. 27.) 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후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권리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국내이행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서울),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권(부산), 장애인의 교육권(광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대구, 대전, 경기), 장애인의 안전권(대구), 장애인의 시설물접근권(경기),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제주)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 바. 자유권 및 사회권 관련 국제규약 토론회

위원회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채택 5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자유권규약 제4차 최종견해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5. 13.)하였다.

제1주제인 ‘자유권규약의 발전과 현재’에서는 자유권규약의 채택 과정, 자유권규약 이행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노력, 우리나라의 채택 과정 및 현황 등이 논의되었다. 제2주제인 ‘사회권규약의 발전과 국내적 함의’에서는 사회권규약의 채택 과정, 사회권규약 이행을 위한 절차와 선택의 정서 채택 배경, 우리나라에서 사회권 보장의 현실과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 제3주제는 ‘인권사상과 한국 인권의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자유권규약 제4차 최종견해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콘퍼런스

위원회는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5. 25.~27.)의 일환으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을 위해 마련된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 콘퍼런스는 기초발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와 기업과 인권 NAP’, 주제발표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 ‘기업과 인권 NAP의 국제동향’, ‘유럽 국가들의 기업과 인권 NAP 추진’, ‘NAP 실행과 기업 대응’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콘퍼런스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과 인권 NAP(안)’를 도출하고,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 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위원회는 위원회 설립 15주년과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6. 29.)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9년 1월 11일 제2·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상황과 제1차 최종견해의 이행 상황 분석 등 중간 점검의 기회가 되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자.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2015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상황에 맞추어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9. 29.)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강화의 위험성, 기존 자의입원의 동의입원으로 전환의 소지, 행정입원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우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에서 2명의 진단으로 변경되면 입원 요건이 강화된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본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 해 17만 5,000건으로 추정되는 입원적합성 심사를 국립병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과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관련 입법 과정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토론되었다.

#### 차. 탈시설화 세부이행계획 마련 토론회

위원회는 탈시설화 세부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10. 17.)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설거주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탈시설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시론’이라는 주제발제가 있었고, 정부의 탈시설 정책 방향, 서울시의 탈시설 현황, 거주시설 현장의 의견, 한국 장애인부모회의 의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탈시설 연구 내용 등이 토론되었다.

#### 카.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 모색 토론회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인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아동의 출생 미신고 실태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제시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10. 25.)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기·학대 아동,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사례와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 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 토론회

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구축되어 있으나, 현재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및 피해자의 회복지원 문제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미비

등과 관련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10. 31.)하였다.

## 파. 201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위원회는 11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2016 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참가하였다.

이 포럼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관계와 규칙에 인권의 내재화’를 주제로, 국제기구와 전 세계 130여 개국 정부, 기업 CEO, 시민사회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위급 패널로 초청된 이성호 위원장은 11월 16일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세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NAP)’ 추진 상황과 수립을 위한 리더십에 대해 발표하였다.

위원장은 이 발표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기업과 인권 NAP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새로운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인식 변화와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정부는 위원회가 권고한 ‘기업과 인권 정책 일관성 확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비정부 기반 고충처리절차 지원’ 등 9개 과제를 토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시 기업과 인권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제4절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가. 개요

#### 1) 추진 배경

2003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북한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2003년 제40차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비상설 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고, 북한인권 연구·조사, 정책 개발 및 권고,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하였다. 2007년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을 설정하고, 2008년에는 6대 중점 사업과제의 하나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설정하였다.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북한인권 상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매년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반복된 인권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 책임 규명 및 처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2016년 3월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방안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위해 ‘북한인권 책임 규명 독립 전문가 그룹’ 설치를 결정하였고, 미 국무부는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침해 가해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2005년 8월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2016년 3월 3일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실행기구가 마련되었다.

## 2) 목적

북한인권 업무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조사·연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협력 활성화, △정부 부처 간 정책협의 정례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기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북한 내부 인권 현황 파악, △북한인권 개선·증진 방안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나. 주요 추진 활동

#### 1) 의견표명 및 위원장 성명

##### ■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위원장 성명

위원회는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1. 28.)하였다.

#####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위원장 환영 성명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침해 가해자 책임 규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명을 발표(3. 24.)하였다.

##### ■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법률적 근거 없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6. 2.)하였다.

### ■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하여 방송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예산 비중을 늘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권고(7. 7.)하였다.

## 2) 북한인권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운영

북한이탈주민 등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3. 15.)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는 신규 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북한 또는 탈북 과정에서 겪었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619명, 2013년 652명, 2014년 484명, 2015년 682명, 2016년 419명 등 총 2,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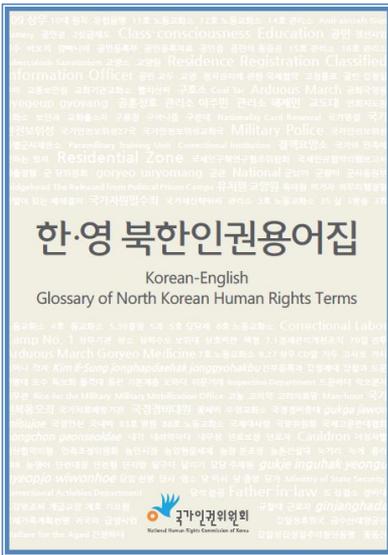
또한 2016년에는 기존 설문조사 외에 38명을 면담하여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집하였다.

###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북한주민들은 인권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거의 없어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 주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일반 국민과 인식 차이가 클 경우,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한 경험, 국내 입국 후의 인권교육 경험과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도,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효과적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발간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표지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북한인권과 연관성이 높은 북한 용어 549개를 선정하여, 용어마다 한자, 로마자, 영문 대체어를 표기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해설을 달아 한글과 영어 사용자 모두 북한인권 관련 용어를 발음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집에는 북한의 형사재판 절차, 구금시설 현황, 성분제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수록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쉽게 익히고, 용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최초로 <한·영 북한인권 용어집>을 발간하였다.

북한인권 연구 및 활동에는 북한 용어가 자주 인용되는데 오랜 분단과 상이한 체제에 따른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로 남북의 용어 자체가 다르거나, 동일한 용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아 내국인조차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글 또는 영문 북한인권 자료를 번역하거나 통역할 경우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용어집이 필요하였다.

### 3) 국제협력활동 강화

#### ■ 북한인권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방향 및 전략 설정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서울유엔인권 사무소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5. 19.)하였다. 심포지엄은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세션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사회로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제2세션에서는 신혜수 유엔사회인권위원회 위원 사회로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박경서 동국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 ■ 한미 대북인권정책 전문가회의 개최



한미 대북인권정책 전문가 회의

위원회는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HRNK: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와 공동으로 ‘한미 대북인권정책 전문가 회의’를 개최(12. 16.)했다.

이번 회의는 미 실행정부 출범이

입박한 시점에서 미국의 향후 대북인권정책을 전망하고, 「북한인권법」 통과 후 본격화한 우리나라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논의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성호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스콧 버스비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가 축사를 하고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도 참석하여 견해를 밝혔다.

1세션에서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였고, 2세션에서는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한미 대북인권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4) 북한인권포럼 운영

2008년 5월부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북한인권 전문가들과 ‘북한인권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 개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제30차 포럼부터 제33차 포럼까지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0차 포럼(4. 3.)에서는 ‘해외 북한노동자 인권문제와 접근 전략’ 및 「북한인권법」 평가와 실행 방안, 제31차 포럼(6. 29.)에서는 ‘최근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의 특징과 시사점’, 제32차 포럼(8. 26.)에서는 ‘대북제재와 북한인권’ 및 ‘북한의 의료 및 건강실태와 증진 방안’, 제33차 포럼(12. 2.)에서는 ‘차기 미행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및 ‘북한인권포럼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sup>10)</sup>·공직유관단체<sup>11)</sup>, 구금·보호 시설이 그 업무의 수행<sup>12)</sup>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단체·사인(私人)이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 진정사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진정 제기로 개시된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 등 제3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위원회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받는 면전진정<sup>13)</sup> 제도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2)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각한다.

2016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636건으로 2015년(10,695건)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전체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8,167건(76.8%),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432건(22.9%), 기타 37건(0.3%)으로 집계되었다.

## 긴급구제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위원회에 접수된 긴급구제 사건이 없었다.

##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폭언 및 폭행,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 사건, △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의료 조치 미흡,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보호사의 환자 폭행, △부대 내 가혹행위 및 병사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 절차 시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등 총 11건의 중대 인권 현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은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급·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시설 방문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군 영창, 경찰서 광역유치장, 노숙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소,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총 8건의 방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하는 등 인권 취약 분야의 사전 예방적 권리구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 조사관 역량 강화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관 학교’를 개최하였다. 신규 조사관과 경력 조사관 모두 참여하여 위원회 조사의 특성과 조사관의 역할, 사건 유형별 조사 방법 및 조사 기술, 진정사건 사례 분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인권상담

상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전문상담원과 전문상담위원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창구 운영, 장애인학교 및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화상·채팅·SNS 상담 시스템 이용 방법 홍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전문상담위원 배치, 예약상담제 및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장애인, 한센인, 노인, 아동,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표 2-2-1]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등 접수·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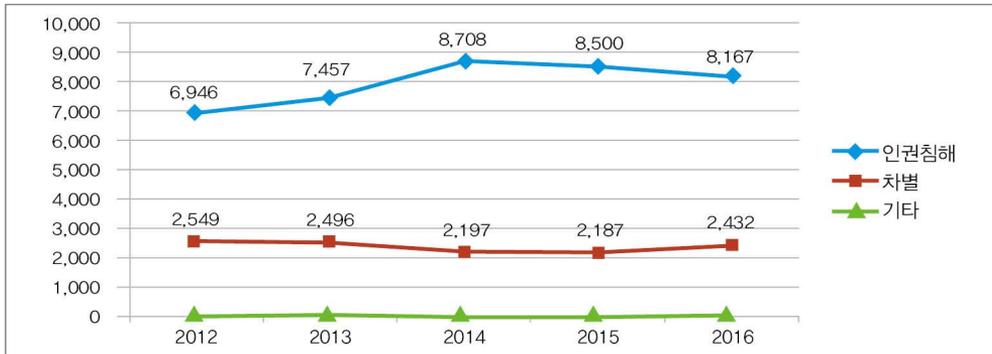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진정·상담 민원·안내 총 접수건수	진정사건 총 접수건수	인권침해 진정사건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처리	접수	처리
누계	793,415	110,565	84,939	83,055	23,410	22,627
2016	80,264	10,636	8,167	8,412	2,432	2,407
2015	80,686	10,695	8,500	8,795	2,187	2,016
2014	82,093	10,923	8,708	8,093	2,197	2,223
2013	82,234	10,056	7,457	7,450	2,496	2,858
2012	69,792	9,582	6,946	6,931	2,549	2,559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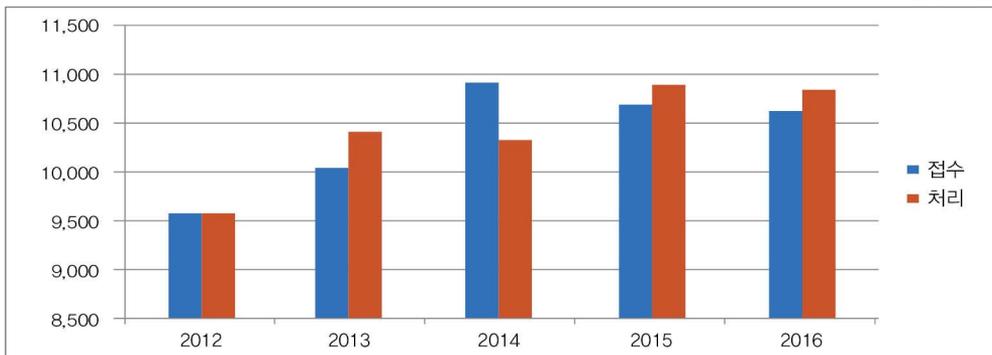
[그래프 2-2-1]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그래프 2-2-2] 최근 5년간 진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제2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가. 진정사건 접수

2016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총 8,167건이 접수되어 이전 해보다 333건(3.9%)이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보호시설 관련 사건이 2015년 대비 440건이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건 역시 142건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 군,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관련 사건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군 관련 사건은 2015년 대비 45건(29.4%)이 더 접수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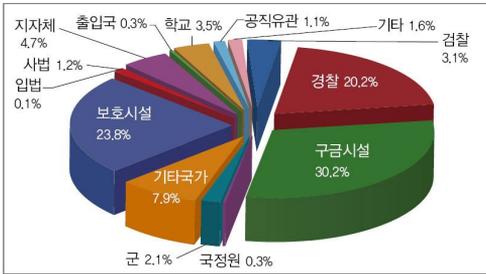
[표 2-2-2]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건)

접수 연도	소계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국정원	군	기타 국가 기관	보호 시설	사법 기관	입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출입국 관리소 등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기타
누계	84,939	2,673	17,157	25,616	237	1,743	6,706	20,207	1,054	64	3,973	258	2,939	953	1,359
2016	8,167	134	1,437	1,649	9	198	306	3,033	77	2	303	59	576	221	163
2015	8,500	145	1,363	1,715	3	153	259	3,473	61	6	445	81	551	190	55
2014	8,708	190	1,539	1,631	11	182	392	3,464	83	3	387	18	497	230	81
2013	7,457	157	1,330	1,688	16	141	315	2,728	74	6	343	23	412	179	45
2012	6,946	147	1,221	1,731	16	184	424	2,115	85	-	335	27	480	133	48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6년 말까지 인권침해 진정 누적건수는 8만 4,939건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접수 현황을 피진정기관별로 살펴보면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2만 5,616건(30.2%)으로 가장 많고, 보호시설 관련 진정 2만 207건(23.8%), 경찰 관련 진정 1만 7,157건(20.2%), 기타 국가기관 관련 진정



[그래프 2-2-3]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6,706건(7.9%) 순이다. 구금·보호 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부터 보호 시설 관련 진정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2016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각급 학교와 공직유관단체 관련 진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나. 진정사건 처리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8,000건 이상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2016년은 2015년에 비하여 접수건수는 333건, 처리건수는 383건이 감소하였다.

2016년 인권침해 인용건수는 330건으로 2015년 대비 88건(21.1%)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하여 합의종결건수가 155건(56%) 감소한 영향이 크다. 대신에 권고건수가 2015년에 비하여 42건(32.3%)이 증가하였고, 조정<sup>14)</sup> 건수 역시 0건에서 9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노력과 조정 활성화의 결과로 보인다.

14) 조정 접수 및 종결건수는 부록 284쪽 참고

[표 2-2-3] 최근 5년간 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접수	처리	인 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각하	이송	기각	
누 계	84,939	83,055	3,923	134	102	10	2,033	1,612	19	13	52,185	1,214	25,243	490
2016	8,167	8,412	330	19	7	-	172	122	1	9	5,424	82	2,556	20
2015	8,500	8,795	418	8	3	-	130	277	-	-	5,416	79	2,830	52
2014	8,708	8,093	329	21	2	-	76	229	1	-	5,180	48	2,496	40
2013	7,457	7,450	360	1	2	-	113	242	2	-	4,542	18	2,512	18
2012	6,946	6,931	264	2	1	1	155	103	2	-	4,391	22	2,230	24

※ 처리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누계 34,412건, 2016년 3,807건임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한편, 2016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구급시설 관련 진정은 1,724건, 보호시설 관련 진정은 3,236건, 경찰 관련 진정은 1,445건, 각급학교 관련 진정은 541건을 처리하였다.

[표 2-2-4] 2016년 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각하	이송	기각	
합 계	8,167	8,412	330	19	7	172	122	1	9	5,424	82	2,556	20
검 찰	134	140	7	-	-	7	-	-	-	85	1	46	1
경 찰	1,437	1,445	49	-	-	23	24	-	2	751	31	603	11
국정원	9	9	-	-	-	-	-	-	-	8	-	1	-
지방자치단체	303	337	13	-	-	8	4	-	1	183	12	128	1
사법기관	77	80	2	-	-	2	-	-	-	68	-	10	-
입법기관	2	3	-	-	-	-	-	-	-	1	1	1	-
기타국가기관	306	322	7	-	1	5	1	-	-	212	12	91	-
구금시설	1,649	1,724	14	-	-	14	-	-	-	978	8	723	1
보호시설	3,033	3,236	168	18	5	67	75	1	2	2,402	5	657	4
군	198	212	25	1	1	14	9	-	-	138	-	48	1
각급학교	576	541	35	-	-	27	5	-	3	360	3	142	1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	59	85	1	-	-	1	-	-	-	51	-	33	-
공직유관단체	221	221	9	-	-	4	4	-	1	139	8	65	-
기 타	163	57	-	-	-	-	-	-	-	48	1	8	-

※ 처리건수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보호시설 중 정신장애 인권침해 접수건수는 총 2,855건임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3,807건임

##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가. 검찰·경찰·사법기관

#### ■ 경찰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방해

위원회는 경찰이 옛 ○○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1. 25.)하였다.

기자회견 당일 피진정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라고 하였으나,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며 현수막을 펼치고 서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경찰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도열시켰다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 4명과 기자 등 5~6명의 앞뒤로 약 10명씩의 경찰을 일렬로 밀착 배치하였고, 진정인들이 서면의 낭독을 마칠 무렵 다시 진정인들 뒤쪽으로 경찰을 추가로 한 줄 더 배치하였다. 그 상태에서 진정인들은 서면 낭독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문답을 짧게 진행하였다.

한편, 2014년 6~12월 기간 중 해당 경찰서는 헌법재판소 정문 등 주변으로 신고하지 않은 총 53건의 기자회견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해당 경찰서가 회견을 가로막은 경우는 없었고, 회견자들은 기자회견 중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해 구호를 제창한 사례가 있다.

위원회는 당시 기자회견 현장 상황이 불법집회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의 불법집회를 막고 헌법재판소 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 차단에 대비하여 후방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회견의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들의 앞뒤로 경찰 병력을 밀집 배치한 것은 기자회견의 규모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 ■ 대질조사 시 검찰수사관의 부적절한 전과 사항 질문

위원회는 대질조사 시 제3자(고소인)가 있는 상황에서 피조사자에게 전과 사항을 확인한 검찰수사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속 검사장에게 해당 수사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3. 2.)하였다.

해당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진정인에게 전과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방법에 있어 제3자인 고소인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전과 사실을 물음으로써 고소인이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알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하였다.

### ■ 청와대 앞 집회 일괄적 금지 통고

위원회는 청와대 인근의 ○○경찰서장이 여러 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지 통보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를 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3. 28.)하였다.

○○경찰서장은 진정인이 세 곳의 장소에 대해 집회신고를 하자 집시법상 ‘생활 평온 침해’, ‘학교시설 주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조항을 들어 세 곳 모두 금지 통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같은 취지의 집회를 열기 위해 다시 인근 10곳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서장은 같은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찰서장이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미고지

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와 직무교육,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사례 전파를 권고(5. 4.)하였다.

위원회는 임의동행 시 진정한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음에도 경찰이 지구대 동행을 재촉하여 연행했고,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같은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 제시 요구

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하도록 권고(6. 9.)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메모 요구·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 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변호 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위원회는 보도자료에 고소 남용 사례로 특정인을 예로 들면서 특정인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7. 20.)하였다.

대검찰청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시행’이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보도자료에 고소 남용 사례로 진정인의 예를 들면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는 이를 토대로 진정인을 유추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예가 「수사공보준칙」 제9조에 따른 예외적 보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도자료에 비록 진정인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진정인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진정인을 유추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검찰청의 보도자료로 인해 진정인의 명예와 평판이 크게 훼손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원회는 약식명령 판결서 등본에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생년월일, 주소, 벌금액 등을 기재하여 송달한 행위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약식명령 송달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8. 22.)하였다.

진정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서(약식명령) 등본에 진정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5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6자리, 직업, 구체적인 주소지, 범죄 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법원이 약식명령 판결서 등본 송달업무를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공범이거나 기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하나의 판결서 등본에 다수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소송 수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례가 해당 지방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재판서 양식 및 약식명령 송달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와 같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원칙 고지

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알린 ○○○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9. 28.)하였다.

체포 당시 ○○○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으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차량 이동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체포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벗어나 있었고, 당시 상황에서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 확인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위원회는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정보수집·이용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 생성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9. 28.)하였다.

또한 검찰총장에게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필수적 신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인의 동일성 확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직장 주소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상 서명날인 강요

위원회는 검찰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귀가를 방해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 검사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상 서명날인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권고(10. 27.)하였다.

진정인은 조사 당일, 조사 종료 후 약 50분 동안 조서 열람 후 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였는데, 해당 검찰 수사관들이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고 하여 버티다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오후 5시 이후 서명을 하고 귀가하였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찰수사관들이 진정인이 서명날인을 할 수밖에 없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진정인이 자의에 반해 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신분증 제시 과정에서 부당한 전자충격기 사용

위원회는 현행법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속 경찰서장에게 ○○○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 사용 요건 및 절차,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를 권고(10. 27.)하였다.

진정인은 진정인의 선배와 함께 차량 절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경찰 차량에 탑승하였다. ○○○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진정인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 경찰관이 지갑을 빼앗으려 하여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스티 기능으로 전환한 후 진정인의 허리 및 허벅지에 2회 충격을 가하였다.

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의 물리적 저항이 있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주 우려도 없었으며, 신분 확인 등은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므로, 전자충격기 사용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교도소 유치

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구속 확정된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 등의 처우를 받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지방검찰청 ○○지청장과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하는 경우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고, 관행적으로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라고 권고(11. 25.)하였다.

교도소에 유치되면 신체검사, 지문채취, 수감번호 부여, 사진촬영, 목욕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죄질이나 특이사항 여부를 기준으로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정밀검사의 경우에도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로 갈아입게 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유치인을 위한 유치인복이나 유치번호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지문채취, 사진촬영, 목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치실에 입감시키는 등 그 처우가 서로 다르고, 진정한 등이 교도소에 유치될 당시 관내 경찰서 광역유치장 수용 인원(최다 27명 수용, 사건 당시 4~5명 수용)에 여유가 있어 교도소에 유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진정한 등을 교도소에 유치한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범죄 혐의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미고지

위원회는 피혐의자(내사 중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사람)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피혐의자에 대하여 그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11. 25.)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으로, 진정한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비록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지만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전과 사실 누설

위원회는 ○○○경찰관이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첩보 대상자의 전과 사실을 대상자의 처에게 알린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11. 25.)하였다.

진정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2회 전력으로 인해 우범자 첩보수집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 담당 경찰관이 진정인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 없어 연락을 바란다는 메모를 남겼다. 메모를 발견한 진정인의 처가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진정인의 처에게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누설하였다.

전과는 내밀하고 민감한 정보로 외부로 누설될 경우 당사자에게 인격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우범자의 첩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과 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경찰관은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 손가락 부상을 입은 피체포자에게 뒷수갑 사용

위원회는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는 피체포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 시간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피체포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소속 경찰서장에게 ○○○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11. 25.)하였다.

진정인은 부부싸움 도중 처의 112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자해를 하여 왼쪽 새끼손가락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 경찰관은 진정인의 출혈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수갑을 채운 채 20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보건소로 후송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의 엉덩이 부분이 흘린 피로 얼룩이 생겼으며, 이후 봉합술을 받은 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피의자 체포 시 비록 뒷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나 ○○○ 경찰관이 손가락 손상으로 출혈이 심한 진정인에게 즉각적인 지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 시간 뒷수갑을 채워 출혈을 가중시킨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검찰의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위원회는 검찰수사관이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방법검찰청 ○○지청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12. 27.) 하였다.

진정인은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정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연이어 받았으며, 이에 진정인은 검사실을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날카로운 장식품으로 팔목에 자해를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수사관이 「인권보호수사준칙」 제51조에 따라 진정인의 심리 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군

### ■ 헌병대 수사관의 상습적인 욕설 및 폭행

위원회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하여 병사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속부대 헌병대장에게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4. 6.)하였다.

헌병대 수사관인 ○○○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통증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수회 때렸고, 점호 도중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네가 훤아”라고 수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신문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한 병사를 세워놓고 10분 이상 욕설을 퍼부었으며, 거수경례하는 병사를 향해 “방위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수사관의 행위가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17조 및 제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전역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역 당일 과도한 열차려 시행

위원회는 ‘전역빵’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역 당일 전역 당사자를 포함한 병사들을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90여 바퀴 돌게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육군 제00사단장에게 열차려를 지시한 대대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할 것과, 사례 전파·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4. 6.)하였다.

진정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역 당일 08:30~12:00(약 3시간 30분), 13:30~16:30(약 3시간) 등 총 6시간 30분 동안 250m 둘레의 연병장을 약 90여 바퀴(22.5km) 돌았다. 이는 육군의 열차려 시행 기준인 4km의 5배가 넘는 거리인데, 열차려를 시행하는 동안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고, 현장에는 감독자가 없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열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으로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대대장이 얼차려 지시 과정에서 종료시간의 명확한 언급 없이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았고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시행해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 ■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사건 등 은폐

위원회는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 2시에 후임 장교 9명을 장교숙소 휴게실로 집합시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힌 선임 장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육군 ○군단장에게 폭행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대장을 포함한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4. 6.)하였다.

폭행사건 가해자인 선임 장교 B와 C는 2015년 6월 새벽 2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시하여 영내 장교숙소 휴게실에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들을 집합시킨 후 1시간 정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다. 이에 위원회는 선임장교 B, C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제15조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또한 「형법」 제257조,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대장이 사건 당일 장교 숙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거쳤음에도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별도 조치 없이 전역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수사 의뢰 및 권고를 하였다.

### ■ 총기 분실을 이유로 과도한 열차려 시행

위원회는 기본군사훈련 도중 총기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7종목 이상의 열차려를 과도하게 시행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열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7. 20.)하였다.

진정인은 2013년 공군으로 입대하여 기본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집제총식 훈련 직전 총기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〇〇〇 교관에게 신고하였다. 이에 〇〇〇 교관은 진정인에게 직접 열차려를 부과하고, 조교에게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열차려를 부여하도록 한 후 총기를 찾으러 갔으며, 다른 중대 훈련병이 피해자의 총기를 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훈련소 조교 등으로부터 엎드려뺀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열차려를 받았고, 기준 시간인 30분을 초과하는 등 지침에 위반되는 열차려를 받았다.

위원회는 〇〇〇 교관이 병사인 조교에게 열차려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당시 규정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한 열차려 시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공군 이외의 각 군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열차려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접수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 일기장 돌려 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원회는 구서작전<sup>15)</sup>을 통해 입수한 일기장을 부사관 및 선임병에게 돌려 보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병대 제〇여단장에게 〇〇〇 부사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7. 20.)하였다.

15) 병영부조리를 찾아내기 위해 생활관 및 관물함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

○○○ 부사관은 2015년 10월 소통함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경첩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당일 구서작전을 실시하였다. ○○○ 부사관은 구서작전 과정에서 진정인의 관물함에서 소통함 용지 4~5장 정도를 발견하였고, 추가로 진정인의 일기장 및 수첩을 압수하였다.

진정인의 일기장에는 자대생활 일기, 휴가 계획 등 사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 부사관은 이를 다른 부사관 및 병사들에게 돌려 보게 하였다. 위원회는 이 같은 ○○○ 부사관의 행위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법정에서 군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

위원회는 법정에 출석한 군 교도소 수용자의 포승줄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재판관을 받게 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군교도소장에게 해당 군 교도관에게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법원 지원장에게는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7. 20.)하였다.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2016년 3월 교도관 B씨와 헌병 3명의 호송으로 지방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 선서를 하였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재판관을 받는 군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80조 및 「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수용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또한 수용자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학군단 간부의 사병 폭행 및 폭언

위원회는 학군단 간부들이 학군단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육군 교육사령관에게 학군단 간부들에 대해 피해 병사와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치를 하는 한편, 학군단 내 인권상황 실태를 점검하여 학군단 현역 간부들에 의해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하라고 권고(7. 20.)하였다.

○○○학군단장(중령)은 2015년 10월경 학군단 행정실에서 지휘봉(골프채의 샤프트 부분 : 길이 약1m, 두께 1.5cm)으로 피해자 A의 엉덩이를 두 대 때렸다. 또한 2016년 2~6월까지 피해자 B에게 출퇴근용이 아닌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출퇴근 운전을 지시했고, 2016년 3월 출근을 시켜주지 못하자 피해자 A, B에게 “○○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2016년 4월에는 관용차량의 대기가 늦자 “시건방진 ○○야! 영창에 넣어버릴라”, “내가 우습냐?”라고 폭언을 하였고, 2016년 5월 컴퓨터 받침대 구입과 관련해 대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밀치며 “넌 똥어 ○○야! 이 ○○는 사주지 마”라는 욕설을 하였다. 그 밖에 수시로 피해자 A의 뒤통수, 정수리, 목, 뺨 등을 때리고 욕을 하였다.

또 다른 ○○○ 학군단 행정정보급관(상사)은 피해자 A에게 “무식한 ○○”, “○딱다구리 ○○” 등의 폭언을 하였다.

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 규율위반 병사 대상으로 주말 열차려 시행

위원회는 군부대에서 주말에 규율위반 병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실시하는 열차려는 비록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므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육군 ○○사단장에게,

이와 같은 일차려를 시행하는 해당 연대 ‘○○봉사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9. 28.)하였다.

해당 부대는 2012년부터 규율을 위반한 병사들을 모아 ○○봉사대를 운영해 왔는데, 2016년 1~7월까지 봉사대 입소자는 총 143명으로, 월평균 20여 명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해왔다.

위원회는 연대장이 병사들에게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지휘권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규율 위반 행위 적발 시 바로 일차려를 부여하지 않고 봉사활동 명목으로 주말에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피교육자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등 일차려 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주말에 휴식·외출·외박·휴가 등을 통제하여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봉사대’라는 명칭과 달리 입소 병사들은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었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내 등이 부족하여 간부(장교·부사관)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 ■ 해병대의 취식 강요 등 악습

위원회는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서 재차 발생한 취식 강요(소위 ‘악기바리’) 사건과 관련하여 군 내부의 자체 개선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 진단 실시를 권고(12. 27.)하였다.

또한 해병 대부분이 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모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위원회와 해병대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 6~9월까지 2개 해병 부대에서 발생한 ‘취식 강요’ 사건에 대한 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5개월간 해당 부대원들을 전수조사 수준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또한 취식 강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전문가와 함께

세부 내용을 확인했다.

다수의 해병은 ‘취식 강요’를 해병대의 전통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병 때는 피해자였음에도 선임이 되면 가해자로 변신하는 악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ㄱ부대 해병 A는 후임병 B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였다. A는 자신도 선임들로부터 악기바리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하였다. ㄴ부대 해병 C는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후임병에게 파이 종류의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서 한 번에 10여 개씩 먹도록 하는 등의 취식을 강요하였는데, C도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전역한 선임병에게 악기바리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원회는 이미 2011년에 해병대 2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병영 악습 개선을 권고했고, 2015년에는 윤일병 사망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7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병영 악습 개선을 재차 권고하였음에도 여전히 병영 악습이 사라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 육사생도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 의무 초대

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 3인 이상이 스마트폰 메신저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12. 27.)하였다.

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훈육관이 “생도 단체대화방에 날 초대하고 훈육요원이 없는 방 없애라고 지시한 지 2주가 돼가는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 등이 방 정리하고 훈육요원 초대할 것”이라고 문자로 지시한 사실, “3명 이상 단체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 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 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행위를 넘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 ■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서신 미전달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우편물이 수신인(보호외국인)에게 최종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편물의 전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우편물 전달 방식 개선을 권고(4. 12.)하였다.

대법원이 보호소에 있는 진정인을 수신자로 하여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5년 10월 26일 보호소에 송달되었고(접수자 보호소직원○○○), 보호소의 등기우편물 발신·수신 대장은 일자·발신인·수신인·내용·담당자·확인자 항목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으나, 우편물의 최종 수신인인 보호외국인의 수신 확인 서명(란)이 없어 진정인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여부가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지며, 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를 출국시키기 위하여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이 아니므로 보호소에서의 생활은 일상생활과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외부 사회와의 교통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점, 특히 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된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할 중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 구금시설 수용자에 전화통화 불허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교도소장이 월 3회의 전화통화가 가능한 진정인이 신청한 3건의 전화신청에 대하여 그 통화 목적 등이 관련 법령의 전화통화 제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모두 불허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의 전화 사용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9. 29.)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공기관, 검찰청 등에 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고충처리반 상담, 공문 시행과 서신 발송 등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화 사용을 불허하였으나 이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 노인요양시설의 응급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 종사자가 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급 상황에 따른 조치와 적법한 사망 판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사망 판단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사망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 종사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장에게는, ○○노인요양원의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책임을 물어 행정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10. 26.)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의 진찰 등을 실시하며, 입소자의 건강 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기도 확보, 인공호흡,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호출,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과의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서도, 시설장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구치소장이 심적 불안에 따른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 예방 목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자료 없이, 유사한 상황에서 입소한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약 4일 동안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을 이유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는 경우 개별 수용자의 자살·자해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12. 23.)하였다.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해당 수용자에 대한 위험성 측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 라. 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 ■ 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추행 등

진정인은 정신병원 입원 중이었을 때 남자 보호사로부터 추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보호사가 진정인과 프로그램실에 함께 출입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보호사와 진정인이 잦은 상담 및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책임간호사가 공개적으로 경고한 점, 진정인이 피해 발생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물리치료실의 내부 구조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입원 기간 중 진정인이 ○○시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유사 성행위 강요 등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고충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보호사가 진정인에게 추행 등의 성적 가해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보호사의 진정인에 대한 추행 등의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보호사를 신속히 여성병동 직무에서 배제, 징계 조치 및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병원장을 경고 조치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종사자의 추행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3. 7.)하였다.

#### ■ 정신병원 내 심전도검사실 등의 CCTV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

정신병원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병실 등 모든 곳에 CCTV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병원에는 병실, 안정실, 복도, 의사실, 관찰실, 치료실 식당 등에 CCTV 총 12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감시실과 병동 간호사실 등에서 병원 직원들이 모니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병실 전체를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하여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병원장에게 CCTV 설치·운영 시 원칙적으로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화하고 병동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4. 22.)하였다.

###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인신보호구제청구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

진정인은 인신보호구제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를 접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담당 주치의가 피해자의 접견을 제한할 당시, 진정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그 양태가 자·타해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웠고 접견 당사자인 진정인에게 변호사의 방문 사실을 통보하거나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이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행동 제한을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등의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고,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진정인의 정신적 안정이라는 치료적 이익보다는 권리구제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병원장에게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한 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6. 8.)하였다.

### ■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원장의 묵인 아래 중간간부 등이 다수의 지적장애인에게 작업을 강요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등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 생산부장과 시설관리기사가 원장, 직업재활팀장의 묵인 및 방조 아래 다수의 근로 장애인에게 작업 지도 또는 훈육 등을 이유로 작업장 내에서 수시로 반말로 고함을 치고 공개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우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컧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법인 대표이사에게 폭언·폭행·부당한 차별 행위, 지휘 감독 및 업무 소홀 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조치와 업무 개선 및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7. 21.)하였다.

## 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 등은 인권침해

진정인은 ○○산업연구원 원장이 수석연구원 피해자1과 책임행정원 피해자2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5년 1월 신설된 TFT로 인사 조치하거나 직원회의에서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는 무능력한 사람” 등의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고, 벽을 보고 앉도록 책상을 배치하거나 통로 등 사무공간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청소를 시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퇴사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혁신추진TFT로 인사 조치한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TFT 활동이 종료된 후 3개월간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수행해온 직무와 동떨어진 쓰레기 제거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1층 개방된 장소에 간이책상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점, 월간회의에서 피해자들을 빗대어 “존재감 없이 비굴하게 정년까지 안위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등의 발언을 한 것 등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산업연구원 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8. 24.)하였다.

### ■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체포 및 조사,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 근로감독관이 2015년 12월 9일과 12월 10일 진정인을 체포·연행·조사할 때 수갑을 채운 것과 수갑 찬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근로감독관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진정인을 조사한 행위는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을 해하거나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갑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의 수갑 사용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경찰장구관리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수갑 등 사용의 사유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9. 29.)하였다.

###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은 인권침해

○○구청 ○○과에서 ○○반 현장작업 관리자인 피진정인1의 묵인과 방조 아래 피진정인2, 3, 4는 피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욕설, 부당한 근무 배치 등으로 집단적으로 괴롭혔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구청의 간부들에게 하소연하였으나 묵살되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현장작업 관리자인 피진정인1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피진정인2, 3, 4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등 집단적 괴롭힘의 관행이 지속되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구청장에게 ○○구청 ○○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9. 29.)하였다.

###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침해

○○구 ○○동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진정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연합회는 최근 ○○구청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동 및 ○○동 아파트 입주자에게 알리기 위해 2016년 3월 14일 인쇄물을 제작하여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인쇄물을 받지 못했다는 주민이 많아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3월 15일 오후 5시30분경 ○○동 주민센터 직원 2명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서 인쇄물을 수거해갔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명예훼손의 증거 수집 차원에서 인쇄물을 수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현주건조물 침입, 절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지역주민연합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인쇄물을 위 연합회 및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과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11. 7.)하였다.

## 바. 각급학교

### ■ 교내 흡연 단속 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흡연 의심을 받아 교무실로 불려가 학생 지도부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고 검사를 받았으며, 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마치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고등학교 학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흡연 단속이나 금연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흡연 단속이나 지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고등학교 학칙」 관련 규정이 학생들이 담배 등을 몰래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흡연 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등학교가 소변검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하여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보게 하는 방법은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다고 보고, ○○고등학교장에게 교내 흡연 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권고(2. 24.)하였다.

### ■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 완화 권고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1은 교내 휴대전화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생활규칙’으로 인해 등·하교 시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경우 할 수가 없고, B고등학교의 진정인2, C고등학교의 진정인3외 1명은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기숙사 운영 규정’ 및 ‘학교생활규칙’으로 주중 가족, 친구 등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며, 위원회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A중학교는 2012년 학교생활 규정 개정 당시 ‘휴대폰 소지 절대 금지’ 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휴대전화 사용의 완화 및 자율화 개정 의견이 각각 73.0%, 54.9%였다. 또한, B, C 두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4대의 공중전화기로 다수의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가 어렵고, 교내 일반전화 사용은 교사의 허락을 받는 등 학생이 통화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 하였더라도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각 학교장에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5. 16.)하였다.

### ■ 토익 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국립대학 1학년인 진정인 등은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가 임의 기한까지 토익 성적이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점수에 이르지 못한 다수의 학생이 5주 동안 외출·외박을 금지당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2015년 10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포함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에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제한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으며,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 제한이 크고,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방문 등 사생활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숙사 관장이자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에게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권고(5. 16.)하였다.

### ■ 미인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진정인은 2015년 4월 ○○중앙회가 시행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안전 공모전’에 응모하여 2015년 6월 포스터 부문에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피진정인이 2015년 7월 진정인이 인가된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모전 입상을 취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인가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공모전 입상을 취소한 것은 미인가 학교에 다니는 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중앙회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입상을 회복하는 차원의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9. 12.)하였다.

### ■ 학교 앞 유인물 배포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인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규 수업 종료 후 교문 앞에서 학생 두발 규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인권 보장 캠페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선도 처분을 한 것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유인물 배포 행위를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이란 학칙을 적용하여, 선도위원회 징계 사유로 삼은 부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학교 교사들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및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9. 29.)하였다.

### ■ 초등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아동들에 대한 막말 등 인권침해

○○교육청 감사관은 ○○초등학교 부실급식 등 감사 과정 중 실시한 학생 설문조사에서 급식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8월 이에 대한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했다.

조사 결과, 조리원 A씨가 배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치먹어” 등의 막말을 하고, 영양교사 B씨가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고 발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설문 대상 학생 477명 중 126명(26.4%)은 좋지 않은 말을 들었고 조리원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식하는 등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진술

하였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의 언행이 아동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감에게 막말을 한 조리원을 경고 조치하고, 영양교사와 그 외 조리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각급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에게 아동 권리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9. 29.)하였다.

#### ■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2015년 1월 6일 해임되었다가 2016년 6월 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정직 2개월로 변경되어 교사의 신분이 유지되는데도, 학교에서는 2016년 8월경 책상과 의자만 주고는 급여와 사무기기, 용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수업 배정도 하지 않아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교사의 신분을 갖고 있는 진정인이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나 진정인에게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책상과 의자만 배치한 채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기기나 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인격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법인○○학원 이사장과 ○○고등학교장에게 진정인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 배정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감독관청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학교법인 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9. 29.)하였다.

## 제3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가.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 12월까지 전체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 분석 결과, 총 2만 3,410건 중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이 9,057건(3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용에서의 차별 진정이 6,942건(29.7%), 교육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이 1,454건(6.2%)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접수 현황은 고용에서의 차별 진정이 479건(19.7%),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이 861건(35.2%), 교육시설 등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이 257건(10.6%)으로 나타났다.

고용에서의 차별 진정은 모집·채용 관련 156건(32.6%), 임금·금품 등 지급 114건(23.8%), 정년·퇴직·해고 62건(12.7%), 교육·배치·승진 54건(11.0%)이 접수되었다.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은 재화 349건(40.5%), 용역 325건(37.7%), 교통수단·상업시설 143건(16.5%)이 접수되었다.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이용에서의 차별 진정은 교육시설 관련 진정이 249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 89건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835건으로 2016년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34.3%를 차지하였다.

[표 2-2-5] 최근 5년간 영역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고용에서의 차별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기타	
	접수 연도	합계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정년	퇴직	해고	기타	소계	재화	응역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지	주거 시설	소계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누계	23,410	1,219	1,445	108	379	248	903	256	6	233	201	659	1,285	6,942	4,121	3,265	772	629	28	242	9,057	1,373	81	1,454	5,957
2016	2,432	66	90	15	26	13	89	25	-	6	14	42	93	479	349	325	88	55	4	40	861	249	8	257	835
2015	2,187	58	123	14	34	16	141	27	-	9	19	50	104	595	489	298	104	41	2	16	950	89	3	92	550
2014	2,197	65	123	14	47	27	72	41	1	14	15	70	86	575	287	401	101	81	2	18	890	106	3	109	623
2013	2,496	56	158	9	41	15	46	27	2	30	11	53	169	617	449	377	40	83	-	20	969	98	8	106	804
2012	2,549	125	138	11	27	21	112	35	1	58	23	44	178	774	420	473	56	107	1	37	1,094	170	9	179	50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나. 사유별 접수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 12월까지 전체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사유별 접수 현황 분석 결과, 총 2만 3,410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만 970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희롱 및 19개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3,201건(13.7%), 성희롱 사건이 2,184건(9.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1,904건(8.1%) 순으로 진정이 접수되었다. 2016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15년 접수 형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성별에 따른 차별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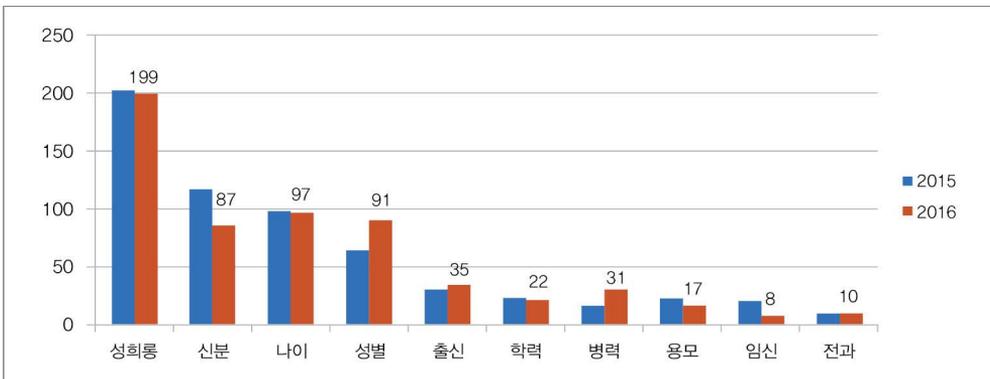
[표 2-2-6]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 연도	합계	성별	임신 출산	혼인 여부	용모	가족 상황	성희롱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지역	사상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기타
누계	23,410	734	225	109	301	172	2,184	10,970	1,500	1,904	374	15	107	16	162	135	44	199	81	584	393	3,201
2016	2,432	91	8	13	17	22	199	1,489	97	87	27	-	8	1	15	8	8	10	3	22	31	276
2015	2,187	65	21	10	23	12	203	1,146	98	117	23	-	10	4	6	8	2	10	11	23	17	378
2014	2,197	64	14	6	21	15	235	1,139	103	158	48	3	18	2	15	19	-	13	11	36	28	249
2013	2,496	64	18	5	31	23	240	1,312	142	146	35	-	18	1	11	13	4	19	8	124	39	243
2012	2,549	45	27	6	40	8	228	1,340	166	185	9	1	1	1	12	6	2	20	15	47	34	356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그래프 2-2-4] 전년 대비 사유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장애, 기타 제외)



※ 출신은 출신국가와 출신지역 합계임

#### 다.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 12월까지 총 2만 3,410건의 차별행위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2만 2,627건(96.7%)이 종결 처리되었다.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인용된 사건은 1,987건(8.8%)이며, 미인용된 사건은 2만 482건(90.5%)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사건 중,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제도 개선 또는 인권교육, 징계 등을 권고한

사건은 1,248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고,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 종결된 사건은 691건으로 3.1%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4건이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의뢰 및 고발한 사건은 14건이었다.

진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거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어 기각된 사건은 6,740건(29.8%)이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건은 1만 3,613건(60.2%)이었다.

2016년에 처리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주요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인권교육, 징계 등의 권고사건은 70건이며, 분야별로는 장애 19건, 성희롱 19건, 나이 8건, 인종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행위 진정사건 36건이 당사자 간 합의종결로 처리되었다.

[표 2-2-7] 최근 5년간 유형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합의 종결	조정	소계	각하	이송	기각	
누계	23,410	22,627	1,987	14	17	1,231	691	34	20,482	13,613	129	6,740	158
2016	2,432	2,407	117	2	4	66	36	9	2,290	1,669	12	609	-
2015	2,180	2,016	78	-	5	36	36	1	1,929	1,338	7	584	9
2014	2,197	2,223	162	2	2	62	95	1	2,034	1,273	7	754	27
2013	2,496	2,858	216	1	1	101	111	2	2,621	1,631	11	979	21
2012	2,549	2,559	216	1	2	170	41	2	2,321	1,312	2	1,007	22

※ 처리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누계 8,217건, 2016년 1,082건임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표 2-2-8] 2016년 사유 및 유형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분류2	합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권고	합의 종결	조정	각하	이송	기각
합계	2,407	1	1	4	66	36	9	1,669	12	609
성별	87	-	-	-	3	1	-	38	-	45
임신·출산	11	-	-	-	1	-	-	8	-	2
혼인여부	3	-	-	-	-	-	-	2	-	1
용모·신체조건	10	-	-	-	2	-	-	7	-	1
가족상황	14	-	-	-	-	-	-	13	-	1
성희롱	173	1	1	4	15	4	4	121	2	21
장애	1,638	-	-	-	19	29	3	1,197	7	383
나이	79	-	-	-	8	-	-	31	-	40
사회적신분	72	-	-	-	3	1	-	45	1	22
출신국가	26	-	-	-	1	-	-	14	-	11
인종	10	-	-	-	5	-	-	3	-	2
피부색	2	-	-	-	2	-	-	-	-	-
종교	11	-	-	-	-	1	-	7	-	3
출신지역	4	-	-	-	-	-	-	2	-	2
사상, 정치적의견	5	-	-	-	1	-	1	2	-	1
전과	7	-	-	-	-	-	-	3	-	4
성적지향	3	-	-	-	-	-	-	2	-	1
학벌/학력	17	-	-	-	2	-	-	10	-	5
병력	23	-	-	-	1	-	-	14	-	8
기타	212	-	-	-	3	-	1	150	2	56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1,082건임

## 2. 진정사건 주요 사례

### 가. 성별에 따른 차별

#### ■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

위원회는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업체의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업체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 대하여 퇴사를 강요해왔고, 업체의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직원 170명 중 여성은 1명뿐이었다. 또한 여성에게는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하는 인사 운용을 해왔으며,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는 등 성차별적 인사 운용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업체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性)평등한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5. 25.) 하였다.

#### ■ 군 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진정인은 ‘군장학생제도’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육·해·공군 모두 군장학생 선발에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조차 하지 못한다며 진정을 제기 하였다.

조사 결과, ‘군장학생제도’는 법령상 성별에 따른 자격요건의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군에서 사실상 여성의 군장학생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장학생을 선발할 때 여성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12. 22.)하였다.

## 나. 용모에 따른 차별

### ■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 차별

진정인은 호텔 연회행사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후, 담당자로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는데, 담당자가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후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호텔接客업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호텔에 인력 채용 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8. 31.)하였다.

## 다. 성희롱

### ■ 메신저를 이용한 남직원들의 여성 직원 성적비하 성희롱

진정인은 직장상사인 피진정인의 컴퓨터에서 업무를 대행하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채팅을 다른 남성 직원과 수시로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상용 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나, 메신저의 채팅이 이뤄진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업무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은밀하게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를 한 것은 일반적인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구분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채팅 대화 내용을 볼 때 피진정인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 역시 성적 굴욕감을 야기하여 근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10. 31.)하였다.

#### ■ 회사 대표의 여직원 강제추행

진정인은 입사 후 회사 대표로부터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을 회사 대표는 전부 부인하였으나, 진정인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으며, 전화 녹음 파일 일부 및 성희롱을 당하였을 때 입었던 의류의 목 부분이 국부적인 인장력에 의해 늘어났다는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 대한 상습적 추행은 성적 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 제305조의 2가 규율하는 상습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회사 대표를 진정인에 대한 상습적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12. 22.)하였다.

## 라. 장애에 따른 차별

#### ■ 청각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

진정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직거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차 희망 의사를 알려온 청각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건물주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건물주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하였다.

위원회는 건물주가 계약서 작성 도중에 부동산중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진정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건물주의 주택 임대 거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건물주가 청각장애인이 입주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사정이나 주택 임대 거부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여, 건물주의 주택 임대 거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2. 17.)하였다.

### ■ 콜택시 이용 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인권침해

○○시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위한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 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 시간, 방문 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원회는 위 기관이 ○○시로부터 시각장애인 등이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업무를 수탁하여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시에 이 기관이 수탁 업무 수행 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5. 13.)하였다.

### ■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진정인은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항공 이용 시 항공사가 전동휠체어에서 배터리 분리 및 장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여 전동휠체어 배터리에 고장이 발생하게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 유형을 직접 확인한 후 해당 배터리 유형에 맞게 안전 운송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휠체어도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등 휠체어 보관 및 배터리 운송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항공사가 이러한 편의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항공사 사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도록 권고(12. 7.)하였다.

## 마. 나이에 따른 차별

### ■ 승무원 채용 시 나이 차별

진정인은 ○○항공사가 2014년 승무원 채용심사에서 지원자 중 30~32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자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등 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통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차별이 없었을 경우 합격자 연령 분포가 ○○항공사 최종 합격자의 연령 분포대로 나타날 확률이 0.66%에 불과하며, 승무원들은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상시 안전을 담당하므로 직무 수행에 연령이 필수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항공사에 한국 취항 신규 승무원 채용 시 지원자들이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8. 31.)하였다.

##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 ■ 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진정인은 운전직 무기계약 근로자로 운전직 공무원과 45인승 대형버스를 번갈아 운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게 계호수당, 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의 대가인 수당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운전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라고 권고(7. 19.)하였다.

## 사. 사상, 정치적 의견에 따른 차별

### ■ 공직유관단체 채용 면접 시 정치적 성향 질문으로 인한 차별

진정인은 ○○진흥원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고, 진정인은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 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 행위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실제로 면접위원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위원회는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면접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진흥원장에게 채용 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9. 21.)하였다.

## 아. 기타 사유에 따른 차별

###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의한 차별

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출신 학교의 소재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제한하는 이중 제한 요건으로 인해, 진정인이 학교 소재지와 주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지역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이 임용시험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고졸 인재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우선 채용하여 학력 위주의 취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응시자격 제한이 있더라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 공무원 실업계고 경력 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해당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5. 25.)하였다.

## 제4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2016년 한 해 동안 진정사건은 1만 636건, 상담 3만 1,608건, 민원·안내(조사 대상 및 접수 절차, 타 기관 안내 등) 3만 8,020건이 접수되어, 2015년 보다 진정사건은 59건(0.5%), 상담은 422건(1.3%)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민원·안내는 59건(0.2%)이 증가하여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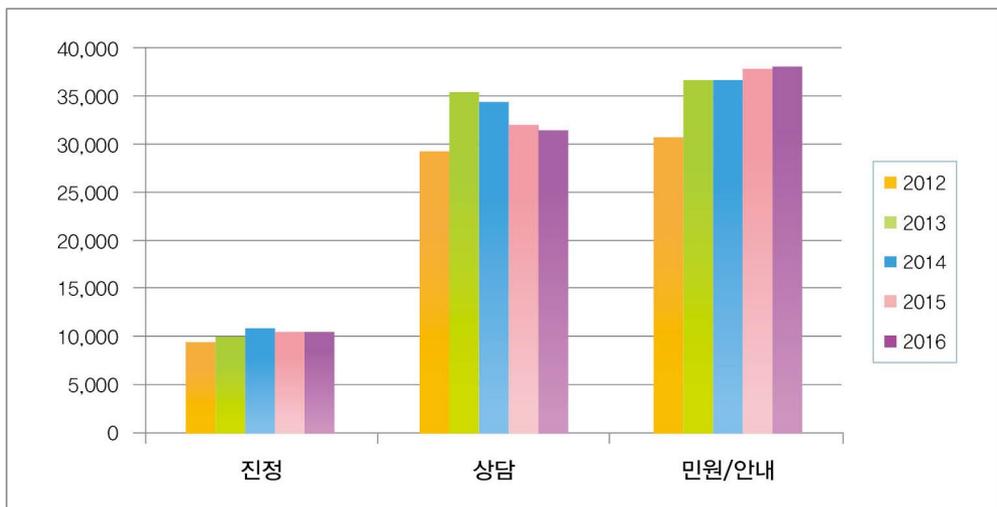
[표 2-2-9]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누 계	110,565	300,268	382,582	793,415
2016	10,636	31,608	38,020	80,264
2015	10,695	32,030	37,961	80,686
2014	10,923	34,547	36,623	82,093
2013	10,056	35,508	36,670	82,234
2012	9,582	29,267	30,943	69,79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포함)

[그래프 2-2-5]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증감 추이



## 1. 인권상담

### 가.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처리한 상담은 총 30만 268건이며 2016년에는 3만 1,608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1.3%)하였다. 2016년 상담의 유형별 분석 결과 인권침해 45.6%, 차별행위 8.0%, 기타 43.2%, 면전진정 상담종결이 3.2%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 간 침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재판 관련 사항 등이다.

[표 2-2-10] 최근 5년간 상담 사례 분류

(단위: 건, %)

연도	구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면전진정 상담종결		
		총	누계	총	누계	총	누계	총	누계	
	누 계	300,268	115,596	38.5	26,019	8.7	134,308	44.7	24,345	8.1
	2016	31,608	14,421	45.6	2,530	8.0	13,661	43.2	996	3.2
	2015	32,030	14,083	44.0	2,660	8.3	14,130	44.1	1,157	3.6
	2014	34,547	13,859	40.1	2,974	8.6	16,531	47.9	1,183	3.4
	2013	35,508	13,787	38.8	2,978	8.4	17,421	49.1	1,322	3.7
	2012	29,267	11,823	40.4	2,529	8.6	13,549	46.3	1,366	4.7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나.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상담의 대상별 분석 결과,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호 시설이 8,086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시설 관련 상담은 2010년 이후 매년 급증하다가 2014년 다소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8,0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보호시설 관련 인권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진정함 설치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매년 정신

보건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진정함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개선 조치가 잇따랐다.

경찰 관련 상담은 보호시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경찰 관련 상담건수는 2,020건이며, 이 밖에 각급학교 997건, 지방자치단체 660건, 기타 국가기관 582건, 공직유관단체 403건, 군 3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금시설 상담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시설 특성상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서면이나 면전진정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11] 최근 5년간 기관별 인권침해 상담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1,823	13,787	13,859	14,083	14,421
검 찰	339	323	282	271	179
경 찰	2,021	2,236	2,236	2,113	2,020
국 정 원	15	26	6	13	4
지방자치단체	666	573	673	602	660
사법기관	194	180	154	128	131
입법기관	1	4	5	11	7
기타 국가기관	565	583	630	584	582
구금시설	232	325	266	335	356
보호시설	5,774	7,591	7,463	7,863	8,086
군	366	337	502	350	311
각급학교	868	815	931	821	997
공직유관단체	300	350	378	376	403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5	48	38	70	88
기 타	417	396	295	546	597

※ 상담건수에 면전진정 상담 종결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임

## 다. 차별행위 상담

사유별 차별행위를 분석하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906건(35.8%)으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제일 많았다. 이어 성희롱 상담이 739건(29.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155건(6.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6건(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12] 최근 5년간 사유별 차별 상담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2,529	2,978	2,974	2,660	2,530
성 별	68	78	72	64	76
종 교	15	11	17	24	22
장 애	937	1,112	1,072	994	906
나 이	158	197	155	126	116
사회적 신분	198	231	213	192	155
출신 지역	14	10	18	10	14
출신 국가	42	64	69	54	44
출신 민족	2	5	3	4	2
용모 등 신체조건	27	39	55	33	37
혼인 여부	8	11	12	15	19
임신·출산	45	45	47	54	39
가족상황	16	17	23	25	14
인 종	4	8	5	6	8
피 부 색	2	4	2	2	1
사상·정치적 의견	4	3	6	1	9
전 과	42	44	39	29	20
성적지향	4	5	12	8	12
병 력	71	75	83	61	62
학벌/학력	30	38	24	24	18
성 희 롱	602	764	819	726	739
기 타	240	217	228	208	217

※ 상담건수에 면진진정 상담 종결건수는 제외된 것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된 건수는 포함된 것임

##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1만 565건으로 인권침해사건이 8만 4,939건(76.8%), 차별사건이 2만 3,410건(21.2%), 기타 사건이 2,216건(2.0%)이다. 2016년 접수된 진정사건 1만 636건 중 인권침해사건은 8,167건(76.8%), 차별사건은 2,432건(22.9%)이다. 2012년부터 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립학교와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진정사건 접수건수가 매년 1만 건을 넘고 있다.

[표 2-2-13] 최근 5년간 진정사건 분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누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누 계		110,565	84,939	76.8	23,410	21.2	2,216	2.0
2016		10,636	8,167	76.8	2,432	22.9	37	0.3
2015		10,695	8,500	79.5	2,187	20.4	8	0.1
2014		10,923	8,708	79.7	2,197	20.1	18	0.2
2013		10,056	7,457	74.2	2,496	24.8	103	1.0
2012		9,582	6,946	72.5	2,549	26.6	87	0.9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3. 인권순회상담



인권순회상담

위원회는 2016년 총 10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이란 현장에서 상담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진정을 접수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4월 20일 강원도 원주 다문화 주민 대상 순회상담을 시작으로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 서울시 소재 시립노인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 안산 ‘국경없는 마을’ 등 관련 단체 및 외부기관(세무서,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등과 긴밀한 협조로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확대·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순회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진정 접수뿐 아니라 필요 시 다른 구제기관을 안내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인권순회상담 보도자료 배포, 인권잡지 및 리플릿 배부, 인권사진전 등 부대 행사를 병행하면서 인권순회상담의 내실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표 2-2-14] 2016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차 수	주요 대상	상담 지역	개최 시기
1차	다문화 주민	강원 원주	4. 20.
2차	장애인	서울 양천	4. 23.
3차	한센인	전남 고흥	5. 17.
4차	이주노동자	경기 남양주	6. 19.
5차	아동 학생	서울 금천	7. 16.
6차	노인	서울 종로	8. 17.
7차	시민	강원 원주	9. 22.
8차	학교 밖 청소년	서울 중구	10. 8.
9차	이주노동자	경기 안산	11. 13.
10차	시민	서울 중구	12. 6.~12. 8.

## 4. 면전진정

면전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회 위원이나 소속 직원과 직접 만나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나 소속 직원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는 제도로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2016년 12월까지 구금·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총 5만 1,398건으로 5만 1,106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92건이 진행 중이다. 종결처리 된 면전진정 중 1만 3,408건(26.2%)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2만 4,345건(47.7%)이 상담종결, 1만 3,353건(26.1%)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내용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문의이거나 위원회법상 관여할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우편 진정 활성화를 모색한 결과, 수용자들이 면전진정 대신 우편을 통해 진정함으로써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2012년 3,070건에서 2016년 2,619건으로 매년 감소해왔는데, 이는 면전진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수용자 개인 고충 등은 수용시설 자체에서 담당하고, 수용제도나 시설 환경 개선 등은 법무부, 소송 관련 상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및 차별 사안은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역할 분담 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2-2-15]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연도별	전년 이월	신청	종결처리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	51,398	51,106	13,353	26.1	13,408	26.2	24,345	47.7
2016	144	2,619	2,471	980	39.7	495	20.0	996	40.3
2015	213	2,658	2,727	916	33.6	654	24.0	1,157	42.4
2014	218	2,874	2,836	966	34.1	687	24.2	1,183	41.7
2013	202	3,068	3,095	992	32.0	781	25.3	1,322	42.7
2012	201	3,070	3,069	989	32.2	714	23.3	1,366	44.5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5. 민원 및 안내

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 접수 및 조사 업무 이외에도 각종 민원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진정 접수 절차 등 단순한 안내 외에도 위원회가 권고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 민원처리 등 건수는 총 1만 9,416건으로 위원회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민원 처리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원 이용수단을 살펴보면 총 1만 9,416건 중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7,934건(40.9%)으로 가장 많고, 국민신문고(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6,286건(32.4%), 우편/FAX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5,035건(25.9%) 순이다.

[표 2-2-16] 최근 5년간 접수경로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분류	합 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 비서실		국 민 신문고		기 타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누 계		148,191		40,539	27.4	84,298	56.9	658	0.4	22,189	15.0	507	0.3
2016		19,416		5,035	25.9	7,934	40.9	44	0.2	6,286	32.4	117	0.6
2015		14,677		4,748	32.3	7,237	49.3	30	0.2	2,552	17.4	110	0.7
2014		14,293		4,940	34.6	7,275	50.9	14	0.1	2,037	14.3	27	0.2
2013		13,222		3,321	25.1	7,018	53.1	15	0.1	2,839	21.5	29	0.2
2012		12,213		3,017	24.7	6,845	56.0	57	0.5	2,263	18.5	31	0.3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표 2-2-17] 최근 5년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12,213	13,222	14,293	14,677	19,416
조사대상 안내	3,289	4,360	3,915	3,395	3,699
진정 접수 절차 안내	1,411	1,147	1,501	969	943
진정 접수 안내	2,688	2,801	5,128	5,106	5,150
처리종결(회신 생략)	1,495	1,628	1,377	2,055	5,594
진정 내용 보완 요구	6	210	41	113	374
타 기관 안내	3	52	17	4	148
법령 등 자료송부	-	4	-	-	5
공람 종결	46	16	19	42	97
면전진정 안내	2	5	9	11	4
진정사건 처리 안내	15	72	110	78	46
민원인 취하	66	31	84	49	53
타 기관 이송	7	13	18	26	505
민원 회신	3,146	2,870	2,048	2,778	2,747
기타	39	13	26	51	51



##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및 제26조에 근거해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은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는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 근래 기업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고,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강화된 상황, 특히 2016년은 사회적 불평등과 혐오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해로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 인권교육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이 쉽지 않은 정치 현실에서 인권교육 제도화 기반을 조성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인권교육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강화는 인권교육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적절한 강사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분야별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인권교육과정 공동 운영, 인권교육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장애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추진 등을 통해 인권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인권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업무 효율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인권교육센터 4곳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 홍보

인권교육과 함께 인권감수성 증대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우선 위원회의 정책권고, 사업과 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총 170건의 보도자료<sup>16)</sup>를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렸다. 또한 총 700여 건이 넘는 언론의 인터뷰와 취재 요청에 응해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견해와 사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 제5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연간 개최에 대한 안정성을 더하였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일과 위원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위원회 설립일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지정하고 라디오 광고 진행, 명동 인권거리체험홍보관 운영,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도 주력하였다.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작품공모전’은 공모분야에서 기존의 논문을 빼고 에세이, 웹툰, 광고로 조정해 시행하였다. 인권영화 제작 14년차를 맞이하여 스포츠 인권을 다룬 <4등>과 감독 3인의 옴니버스 영화 <시선 사이>를 개봉하고 영화 보급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6) 보도자료 목록은 부록 310쪽 참고

##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 가. 학교·공공·시민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인권교육을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인권교육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보호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정책권고를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를 함으로써 인권교육 제도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각 영역의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원연수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중점 대상인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 365개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인권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하여 강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300여 개 대학이 응답함으로써 대학 내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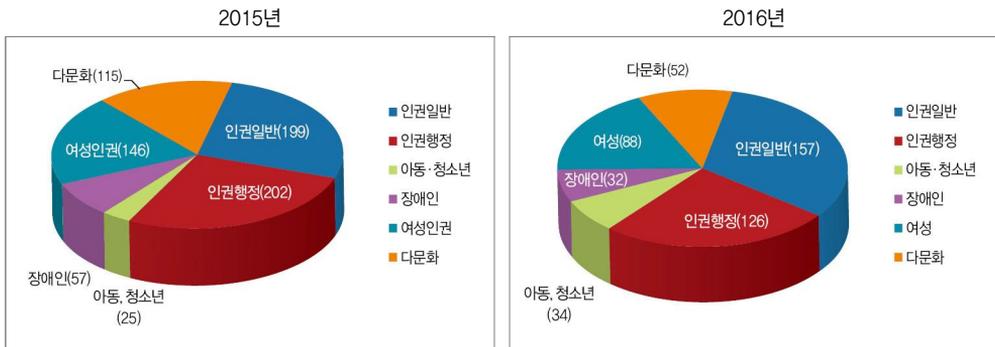
위원회는 총 64개 공무원·교원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조사를 시행하여 55개(86%) 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인권교육은 인권행정(지방자치단체 인권사례, 인권과 사법행정 등), 인권일반(인권감수성, 인권의 이해 등), 여성분야(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등의 과목에 집중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교육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표 2-3-1] 분야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명)

분야	2015		2016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인권일반	199	19,271	157	23,694
인권행정	202	14,930	126	11,224
아동·청소년	25	2,581	34	3,040
장애인	57	3,487	32	2,112
여성인권	146	17,216	88	7,902
다문화	115	9,354	52	21,118
합계	744	66,839	489	69,090

[그래프 2-3-1] 분야별 인권교육 횟수



한편 유엔은 2004년 12월 10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유엔 총회 결의(59/113)로 수립한바, 2015년부터 적용한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은 언론 및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언론인권 길라잡이> 교재를 발간하여, 제3차 프로그램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내적으로, 「정신보건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8개 법률에서 인권교육이 법제화·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권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인 ‘인권교육원’ 설립을 위해 ‘인권교육원 설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국토교통부), 청렴연수원(국민권익위원회), 통계수련원(통계청) 등 정부 주요 부처 교육훈련기관 현황조사(6. 29.)를 실시하였고, 인권교육원 설립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8. 22.), 인권교육 의무화 관련 법률 현황 분석(2016. 9.) 등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주요 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원의 추진전략, 조직구조, 교육과정, 미래 수요 예측을 위해 ‘인권교육원 설립에 따른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나.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등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



2016년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

위원회는 2009년부터 ‘초·중등 교과서의 차별·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해왔다. 2015년에는 ‘초·중등 인권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교과서 모니터링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2016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도교육청 인권담당, 교사, 교과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 워크숍을 개최하여 초·중·고교 교과서 내 차별 침해 사례를 발표하고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국대와 업무협약 체결

또한, 2016년에 위원회가 초·중등 검정교과서 사전 자문·감수기관(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참여하여 교과서 내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삽화 등을 사전에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 채널을 구축하였다.

2016년에 동국대학교와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연구 역량과 비전 제고를 위해 총 12개 대학과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권교육 및 연구, 지역 인권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육성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동계와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의 기관실무수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예전과 같이 총 2회(51명) 진행하였다.

[표 2-3-2] 2016년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과정 운영 현황

구 분	기 간	대상 인원
동 계	1. 25.~2. 5.(2주)	25명
하 계	7. 25.~8. 5.(2주)	26명

#### 다. 인권강사 양성 및 위촉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 인권교육의 대중화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인권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2015년부터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기본과정(3일), 전문과정(3일), 심화과정(2일)으로 세분화, 전문화하고, 인권강사 위촉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육대상도 해당 분야 현장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인권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이들로 하여, 인권강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좀 더 확대하였다. 우선 2015년에 운영하던 영유아, 장애, 이주, 노숙인, 정신보건, 스포츠, 아동 분야를 추가로 운영하였고, 노인, 사회복지, 발달장애 분야를 신규로 개설하였다. 인권사무소에서도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완료한 후에는 외부 인권(교육)전문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강의 시연 평가 등을 거쳐 위촉 심사를 실시, 229명을 인권강사로 위촉하였다.

## 2.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는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보편화하기 위해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인권교육협의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 등을 꾸려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학교인권교육협의회에는 교육부를 포함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인권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 우수 사례와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협의회에서 대학 내 인권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교육 발전을 위해 인권위-대학 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노인인권교육협의회에서는 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 노인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에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자와 협의를 추진하였다.

[표 2-3-3] 2016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과정형태	일자	인원	참석 대상
군대인권교육협의회	6. 27.	10명	국방부, 각군 본부, 인권위
	12. 23.	12명	국방부, 각군 본부, 인권위 등(국방부 주관)
학교인권교육협의회	11. 30.	20명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및 인권위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5. 4.	8명	보건복지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홀리스연대,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인권위
노인인권교육협의회	3. 29.	14명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노인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인권위
영유아인권교육협의회	3. 22.	14명	각 시도 지자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권위
인권교육·연구중심 대학협의회	11. 25.	15명	전남대, 영남대, 인하대, 한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전북대,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 충북대, 동국대, 인권위



2016년 제1차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회는 인권교육전문위원회를 2차례(8. 3., 12. 8.) 개최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업무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전문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충청남도, 한국인권재단과 공동으로 제2회 한국인권회의(3. 24.~25. 충남 덕산리솜스파캐슬)를 개최하였고,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광역시), 인권증진워크숍(울산광역시) 등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행사에 인권교육 관련 기술 지원 및 인권교육 원칙을 제시하여 인권교육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기존 6개 교육청 이외에 2016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체결, 운영 중인 업무협약(MOU)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광역시자체 및 교육청 업무협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조정 역할 기능을 강화하였다. 2016년에는 전라북도,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인권교육 공동과정 운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위원회는 제7차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칠레 산티아고, 12. 11.~ 17.)에 참가하여 다양한 인권교육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였다. 특히 칠레인권위원회와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관련 교육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였다.



2016년 제14차 인권교육포럼

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인권교육 포럼을 재개하여 공공부문의 인권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인권강사 등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인권교육포럼을 통해 인권교육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권 이슈인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포럼’과 ‘돌봄인권교육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등과 인권교육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

###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 가. 인권교육 실시 현황

위원회는 그동안의 인권교육 양적 성장을 기초로 최근 몇 년간 인권교육 운영의 안정화, 체계화, 프로그램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이와 더불어 2015년부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4개 지역 인권사무소에 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교육 운영 및 내용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지역별로 영유아·노인·사회복지사·장애 분야의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 연수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총 3,702회(20만 7,619명)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과 비교할 때 교육 횟수는 47.5%, 교육 이수자 수는 42.9% 급증한 것이다. 2016년 인권교육의 양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은 인권교육 운영 체계성과 표준화에 따른 성과와 더불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로 집합교육과 사이버 인권교육 이수자의 수가 급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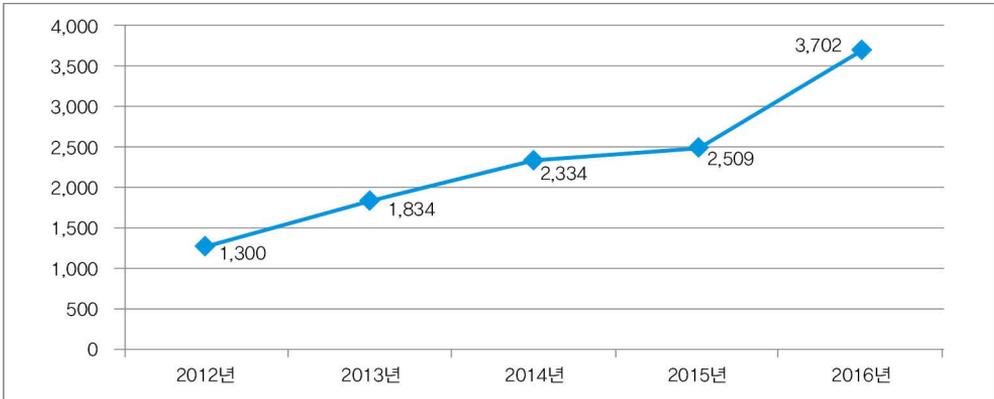
[표 2-3-4]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계		연수과정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계	16,608	1,239,098	2,560	116,093	1,656	42,447	2,005	263,753	10,387	816,805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2013년	1,834	168,580	245	11,382	159	4,588	150	39,654	1,280	112,956
2012년	1,300	124,937	214	10,456	119	2,204	109	21,550	858	90,727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그래프 2-3-2] 최근 5년간 인권교육 횟수 증감 현황



위원회는 근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유아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장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장애, 이주, 스포츠 등 4개 분야에서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

## 나. 다양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위원회는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체계화 및 표준화 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였다. 특히 본부와 부산·광주·대구·대전 인권사무소에서 위원회 위촉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인권강사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2015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인권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이른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교육방식을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학교 영역, 공공 영역, 시민 영역을 대상으로 인권강사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등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734회 (3만 3,953명) 실시하였다. 2015년과 비교할 때 교육 횟수는 67.6%, 교육 이수자 수는 83.8% 증가하였다.

[표 2-3-5] 2016년 인권교육 실시 세부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접 교육			교육 지원		합 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인권특강	찾아가는 인권특강	
	교육과정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횟수	734	380	828	1,030	730	3,702
인원	33,953	5,930	71,434	66,084	30,218	207,619
합계	1,942회 111,317명			1,760회 96,302명		

2016년 인권연수과정에서 교육 횟수나 교육 이수자 수 모두 급증하였다. 먼저, 인권강사양성과정은 우리 사회 인권교육 수요가 특히 높은 10개 분야(군, 장애, 정신보건, 노숙인, 이주, 아동, 영유아, 노인, 사회복지, 스포츠)에서 총 142회 (3,632명) 실시되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2015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인권 강사양성과정의 기본, 전문, 심화 단계를 지속 시행하여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한편, 공무원, 경찰, 지방의원, 학교관리자, 교사, 영유아교육 종사자, 기업인, 정보인권, 언론인, 학교관리자 및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법적 의무교육 대상자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136회, 7,311명), 노숙인시설 종사자(39회, 1,610명)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1)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인권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2016년에는 충청남도, 전라북도와의 공동으로 공무원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총 4회(236명) 시행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16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의무 강화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 장애분야 인권강사가 인권교육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였다.

[표 2-3-6] 2016년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회 수	인 원	대 상
공무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2	72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6	
	2	30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38	
장애인식개선교육	48	6,549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2) 군 인권교육과정



군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군부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군대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육군, 해군, 공군을 대상으로 군 인권교관양성과정과 군 간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해왔다.

2016년 위원회는 육군, 공군, 해군 각 대대 단위에 위관급 1명, 부사관급 1명 등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총 15회(554명) 군 인권교관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군대내 인권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도관, 수사관, 의무관, 인권모니터단, 법무관 등을 대상으로 총 5회(102명)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표 2-3-7] 2016년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횟 수	인 원	대 상
군 인권교관 교육과정	15	554	육·해·공군 장교 및 부사관(군 인권교관)
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5	102	육·해·공군 수사, 의료, 교도관, 법무관 등

### 3) 경찰 인권교육과정



경찰 인권교육과정

교육을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경찰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친화적 경찰업무 수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매년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운영해왔다. 2016년에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여성·아동분야, 경찰청 인권강사, 수사분야, 외국인분야 업무에 관련된 경찰을 대상으로 총4회(113명) 인권

[표 2-3-8] 2016년 경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횟 수	인 원	대 상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4	40	여성·아동 분야 경찰관
		30	경찰청 소속 인권강사 경찰관
		22	수사분야 경찰관
		21	외국인분야 경찰관

### 4) 정신보건 등 장애인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교육 내용의 변화 및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하여 「정신보건법」에 대한 위험심판 및 헌법불합치 판결,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등 정신보건 환경의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인권교육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일을 ‘정신

보건분야 인권교육의 날'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일된 교육을 실시하여 2016년 정신보건 인권교육을 총 136회(7,311명) 실시하였다

[표 2-3-9] 2016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본부(수도권)		인 권 사 무 소								합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40	2,159	31	1,497	15	954	31	1,977	19	724	136	7,311

또한, 위원회는 2016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인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기본과정(3일), 정신보건 관련 전문적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과정(3일), 그리고 강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향상시키는 심화과정(2일) 등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시행한 후, 별도의 강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권강사를 선발하였다.

[표 2-3-10] 2016년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교육대상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3. 10.~11.	65	서울 정신보건, 장애, 스포츠 분야 인권강사
	5. 3.	9	부산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3. 3.~ 4. 3. 17.~18.	48	광주 정신보건 등 전 분야 인권강사
	5. 3.	11	대구 정신보건분야 인권강사
	2. 23.~24. 3. 9.~10.	56	대전 정신보건 등 전 분야 인권강사
인권강사 양성과정	6. 22.~24.	19	장애보건분야 경력자 등
	8. 17.~19.	16	장애보건분야 경력자 등
	9. 1.~ 2.	18	장애보건분야 경력자 등



장애분야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2015년 위촉된 장애분야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분야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별도로 시행하였다. 또한 장애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등을 교육 대상으로 선발하여 인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기본과정(3일), 장애 관련 전문과정(3일), 강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향상시키는 심화과정(2일) 등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한 후, 별도의 강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권강사를 선발하였다.

[표 2-3-11] 2016년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교육 대상 및 과정
인권강사 역량강화과정	3. 10.~11.	65	서울 정신보건, 장애, 스포츠 분야 인권강사
	3. 8.~11.	46	부산 장애 등 전 분야 인권강사
	3. 3.~ 4. 3. 17.~18.	48	광주 정신보건 등 전 분야 인권강사
	2. 22.~23. 3. 15.~16. 12. 9.	79	대구 장애 등 전 분야 인권강사
	2. 23.~24. 3. 9.~10.	56	대전 정신보건 등 전 분야 인권강사
인권강사 양성과정	5. 18.~20.	33	서울 장애분야 기본과정
	7. 20.~22.	33	서울 장애분야 전문과정
	9. 22.~23.	33	서울 장애분야 심화과정
	5. 11.~13.	30	광주 장애분야 기본과정
	6. 13.~15.	30	광주 장애분야 전문과정
	9. 6.~ 7.	30	광주 장애분야 심화과정
	9. 17.~18.	27	서울 장애분야 심화과정 2기

## 5) 노숙인분야 인권교육과정

2011년 6월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위원회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3년 노숙인분야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분야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인권강사양성 과정을 통해 양성한 노숙인분야 강사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을 총 39회(1,610명) 운영하였다.

[표 2-3-12] 2016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본부(수도권)		인 권 사 무 소								합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20	868	4	187	5	229	5	171	5	155	39	1,610

또한 위원회는 인권교육운영 종합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운영되던 노숙인 강사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인권 일반론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과정(3일), 노숙인 인권을 다루는 전문과정(3일), 강의 요령 및 인권적 강의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2일)을 운영하여 노숙인분야 인권강사를 양성하였다.

[표 2-3-13] 2016년 노숙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교 육 과 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4. 25.~27.	18	노숙인분야 기본과정
	5. 26.~17.	10	노숙인분야 전문과정
	7. 14.~15.	10	노숙인분야 심화과정

## 6) 이주분야 인권교육과정



이주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고, 이주 인권교육을 고도화 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인권교육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했으며, 인권교육과정을 운영 해왔다.

2016년 이주 관련 시설 종사자 및 활동가 등을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여 인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기본과정(3일), 이주와 관련한 전문적 내용을 포함 하는 전문과정(3일), 그리고 강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향상시키는 심화과정(2일) 등 이주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시행한 후, 별도의 강의 심사과정을 거쳐 인권 강사를 선발하였다.

[표 2-3-14] 2016년 이주분야 인권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교 육 과 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4. 27.~29.	31	이주분야 기본과정
	5. 25.~27.	29	이주분야 전문과정
	7. 28.~29.	28	이주분야 심화과정

## 7) 노인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우리 사회 노인의 인권 향상과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노인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노인분야 인권교육과정을 운영 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 노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노인 관련 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표 2-3-15] 2016년 노인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인원	교육 과정 및 대상
인권강사 양성과정	3. 23. ~ 25.	25	서울 노인분야 기본·전문과정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회원
	6. 4. ~ 6.	25	서울 노인분야 심화과정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소속 회원
	3. 23. ~ 25.	35	서울 노인분야 기본·전문과정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소속 회원
	3. 30. ~ 4. 1.	35	서울 노인분야 심화과정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소속 회원
	4. 27. ~ 29.	15	부산 노인분야 기본과정
	6. 22. ~ 24.	27	부산 노인분야 전문과정
	9. 22. ~ 23.	26	부산 노인분야 심화과정
	4. 20. ~ 22.	45	대전 노인, 사회복지사 분야 기본과정
	6. 1. ~ 3.	19	대전 노인분야 전문과정
	9. 21. ~ 22. 9. 28. ~ 29.	74	대전 노인, 영유아, 사회복지사 분야 심화과정

## 8) 영유아 및 초·중등학교 분야 인권교육과정



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위원회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회적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의 보수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교육을 수행할 강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사양성과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 단위의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부와 인권사무소가 기본

과정(3일), 전문과정(3일), 심화과정(2일)으로 나누어 총 24회(664명)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인권조례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총 4회(60명)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인권조례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소속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특강’을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21회(476명) 실시하였다.

[표 2-3-16] 2016년 영유아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회)

구 분	합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강사양성과정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
교육인원	1,200	60	664	476
횟수	49	4	24	21



초·중등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향상과정을 총 2회(63명) 운영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과정을 총 3회(106명)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더욱 확산하는 차원에서 학교관리자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감수성

[표 2-3-17] 2016년 학교 관계자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기 간	대상인원	교육대상
5. 23.~27.	37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7. 26.~27.	41	강원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8. 17.~18.	28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6. 29.~30.	39	학교 관리자 및 장학사
10. 6.~ 7.	24	

또한, 위원회는 2011년 권고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2016년 스포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1,059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을 실시하여 운동부 학생들의 편익과 눈높이에 맞는 인권교육으로 인권친화적 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표 2-3-18] 2016년 스포츠인권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대상 인원
스포츠분야 인권강사역량강화과정	3. 10.~11.	15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스포츠)	연중	1,059
스포츠분야 강사양성과정(기본)	6. 22.~24.	31
스포츠분야 강사양성과정(전문)	8. 17.~19.	26
스포츠분야 강사양성과정(심화)	9. 1.~ 2.	27

### 9)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2010년부터 언론인의 인권옹호자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언론보도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강화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인권 워크숍을 매년 실시해왔다.

2016년에는 인권 관련 언론보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부 사건기자(팀장급)를 대상으로 인권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인권옹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언론의 역할과 분야별 매뉴얼(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인권, 아동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을 담은 인권보도준칙의 성실한 이행을 안내하였다. 또한 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와의 공동 운영을 통하여 교육 효과의 확산뿐만 아니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표 2-3-19] 2016년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기 간	대상인원	교육대상
6. 2.~ 4.	20	방송·언론인
9. 23.~24.	70	방송·언론인

### 10) 기업 대상 인권교육과정



기업 대상 인권교육과정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기업의 인권보호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위원회는 기업 대상 인권교육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왔다. 위원회는 2016년 기업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기업을 대상

으로 인권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총 31회 방문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기업 인권경영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초빙하여 집합 인권교육을 시행하였다.

[표 2-3-20] 2016년 인권경영 감수성과정 실시 현황

(단위 : 명)

대 상	대상 인원	주 제
공기업	3,615	공기업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공기업	32	공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 11) 지방의원 대상 인권교육과정



지방의원 대상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그동안 지역 내 인권옹호자 및 인권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해왔다. 2016년 여성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와 인권조례 제정 및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2-3-21] 2016년 지방의원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 간	대상인원	교육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	7. 18.~22.	31	아동·청소년분야 기본·전문과정
	9. 19.~20.	27	아동·청소년분야 심화과정

## 12)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는 인권교육 업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 체험식 인권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방문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2016년에는 학교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방문교육을 총 380회(5,930명) 운영하였다.

[표 2-3-22] 최근 5년간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연 도	계		학교 영역		공공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6	380	5,930	284	4,473	19	383	77	1,074
2015	239	9,194	175	7,916	16	420	48	858
2014	206	4,926	169	4,178	1	8	36	743
2013	159	4,588	126	4,060	5	82	28	446
2012	119	2,204	102	1,905	4	99	13	200

## 13) 인권특강

위원회는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부터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의 인권특강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학교, 공공, 시민영역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총 1,030회(6만 6,084명) 실시하였다.

[표 2-3-23] 연도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연 도	계		학교 영역		공공 영역		시민 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6	1,030	66,084	179	12,659	254	28,793	597	24,632
2015	1,060	57,781	389	18,973	194	17,660	477	21,148
2014	1,506	110,080	801	52,196	279	27,958	426	29,926
2013	1,280	112,956	711	69,989	226	24,283	343	18,684

한편, 위원회는 각급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균등한 인권교육 기회 제공,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장애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스포츠 선수 및 영유아의 인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11회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서 대규모 강의를 최소화하고 1학급 50명 내외로 신청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의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표 2-3-24] 2016년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계	지역별 현황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대전·충청
횟수	730	213	172	79	111	155
대상인원	30,218	9,261	6,270	2,732	4,553	7,402

#### 14)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이버 자율학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 강화, 인권 관련 소양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2005년 사이버 인권교육센터를 개통하고 2006년부터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 해왔다. 2016년에는 총 828회 7만 1,434명이 사이버 인권교육을 이수하였다. 2015년에 비해 횟수는 134.6%, 이수자 수는 106.2% 급증하였다. 이처럼 사이버 인권교육이 급증한 요인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화,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운영지침」 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위원회가 적극 대응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을 적극 안내하여 공직자 이수자 수가 2015년에 비해 412.3% 급증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공기업 및 사기업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일반 시민의 사이버 인권 교육 실적이 2015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것도 전체 이수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표 2-3-25] 최근 5년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명)

연 도	이수인원(명)					이수율(%)			
	공직자	시민	교사	기타	전체	공직자	시민	교사	기타
2016	46,226	8,297	13,066	3,845	71,434	80	50	81	93
2015	9,022	4,143	12,194	*9,276	34,635	76	40	87	95
2014	7,578	2,175	24,863	**128	34,744	84	36	86	56
2013	9,944	5,338	24,372	-	39,654	90	69	90	-
2012	10,776	2,027	8,747	-	21,550	90	66	87	-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종사자

\*\* (강사과정)집합교육연계과정으로 미분류

위원회는 2016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인권교육센터에 <경찰과 인권>, <정신장애인과 인권>, <이주민과 인권>, <노인관련 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사회복지와 인권>, <인권의 이해(개정)> 등 8개 신규 과정을 탑재 운영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기존 교육운영 시스템(LMS)의 서버 용량 부족, 신규 콘텐츠 탑재 한계, 모바일과의 연계성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인권교육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다.

## 4.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물적 인프라를 형성해 각 분야의 인권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며, 인권교육 콘텐츠의 구성 내용,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인권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의식의 사회적 저변 확대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콘텐츠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2016년 위원회는 〈언론인권 길라잡이〉,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등의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스포츠와 인권〉, 〈언론과 인권〉 표준강의안을 제작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교재 개발 연구〉, 〈부모용 아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노인 인권 교재 개발 연구〉, 〈그림으로 보는 인권 교재 개발 연구〉 등의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고, 〈스포츠와 인권〉, 〈기업과 인권〉, 〈별별이야기(1,2)〉 등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3종을 개발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대시민용 인권 에세이 〈그림으로 보는 인권〉, 〈부모용 아동인권〉 등 3종을 개발하였다.

언론인용 인권교육 교재 〈언론인권 길라잡이〉는 유엔 제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권고의 주요 대상인 언론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발간되었다. 〈언론인권 길라잡이〉는 총 4장 21절로 구성되었고, 부록으로 인권보도준칙, 인권보도준칙 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등이 실려 있어 언론인을 위한 기본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표 2-3-26] <언론인권 길라잡이> 교재 주요 내용

언론이 인권을 다시 만나야 하는 이유	대상별 언론보도	영역별 언론보도	인권을 위한 언론
1. 언론보도의 관행과 변화한 현실 2. 언론보도와 인권의 관계 3. 언론의 인권보호, 두 가지 형태 4. 인권보도준칙의 제정	1. 아동·청소년 2. 장애인 3. 노인 4. 성폭력 피해자 5. 군인 6. 이주민 7. 북한이탈주민	1.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2. 기업과 노동인권 3. 재난 4. 의료 5. 종교 6. 전쟁	1. 능동적 언론보도 준칙 준수 2. '적극적 형태'의 인권보호 3.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4. 관습과 편견을 넘는 언론보도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교재는 읽기자료, 지도자료 2권으로 구성되었다. 읽기자료는 인권의 개념, 스포츠와 인권의 관계 등 스포츠인권의 이해를 돕는 설명서 형식으로, 지도자료는 현장에서 스포츠인권을 교육·토론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제작하여 체육인, 교사들이 본 교재를 통해 스포츠인권을 이해·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표 2-3-27]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교재 주요 내용

읽기자료			지도자료
스포츠인권, 왜 지금인가	스포츠인권, 무엇을 할 것인가	스포츠인권, 어떻게 열 것인가	
1. 스포츠와 인권 2. 스포츠의 본질과 인권의 의미 3. 스포츠의 인권교육적 가치	1. 체육활동 참여권 2. 장애인 참여권 3. 여성차별 4.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5. 학습권과 인격권 6. 스포츠와 폭력 7. 존중과 연대 8. 인권감수성과 변화하는 스포츠 문화	1. 인권친화적 스포츠 지도법 2. 스포츠와 저항 3. 스포츠와 평화	1. 체육활동 참여권 2. 장애인 참여권 3. 권리주체별 인권 4. 여성차별 5.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6. 학습권과 인격권 7. 스포츠와 폭력 8. 인권감수성

특히 사이버 콘텐츠 〈스포츠와 인권〉은 스포츠 종사자들의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과 인권〉은 국내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다루었고, 〈별별이야기(1,2)〉는 인권영화를 학습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인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수화영상 위치 조절 및 크기 조절 기능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 나. 인권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1) 영화 보급

2016년에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인권영화의 제작이 중단되었고 기존에 제작된 영화의 개봉과 보급에 힘을 쏟았다. 특히 2014년 제작된 〈4등〉과 2015년 제작된 〈시선 사이〉를 모두 개봉하면서 인권영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지우 감독의 연출로 기대를 모은 12번째 인권영화 〈4등〉은 엘리트 체육과 폭력 문제 등을 다루며 스포츠인권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4월 13일 전국 213개관에서 개봉하였다. 국회, 서울시교육청, 은평구, 노원구 등 많은 단체상영 요청을 받았으며 상하이국제영화제, 카를로비바리영화제 등에 초청받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3번째 인권영사 〈시선 사이〉는 최근 주목받는 최익환, 이광국, 신연식 감독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6월 4일 전국 35개관에서 개봉되었으며 릴레이 시사 등을 통해 관객과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4등〉 시사회



〈시선 사이〉 시사회

열악한 배급 사정 등으로 인권영화를 접할 수 없는 지역민들의 상황을 고려, ‘찾아가는 영화관’을 기획하고, 지역민들에게 위원회 및 인권영화를 소개하며 대중친화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원회 인권사무소가 위치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소재 극장을 활용, 〈4등〉을 상영하고 영화 감상 후에는 영화에 담긴 인권 관점, 그리고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배우와 제작진에게 묻고 답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하였다.

[표 2-3-28]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현황

일 정	상영 지역 및 장소	대담자(이야기 손님)
5. 23.	광주(롯데시네마광주점)	임동헌(전남 공교 교사)
5. 26.	부산(동래 CGV)	정희준(동아대 생활체육학과 교수)
5. 28.	대구(CGV 대구점)	이정연(대구 강등중 교사)
6. 16.	대전(대전 CGV)	임용석(충북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또한 인권영화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도서출판 창비와 인문포털 알라딘 그리고 위원회 주관으로 시민과 함께 인권영화 보기 ‘인권, 일상으로의 초대’를 진행하였다. 총 4회에 걸쳐서 2016년 개봉한 인권영화 〈4등〉과 〈시선 사이〉의

각 단편들을 함께 보고 감독 및 배우와 함께 영화와 인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 인권작품(논문, 광고, 에세이) 공모사업

위원회는 해마다 일상생활 소재를 중심으로 인권이 생활 영역 곳곳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실시해왔다.

2016년 인권작품 공모전에는 에세이(학생부·일반부) 228편, 미디어(사진·웹툰·UCC) 159편 등 총 387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총 33편을 선정하여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선정된 수상 작품 중 인권 에세이는 <2016년도 인권에세이집>으로 발행하여 도서관, 인권사무소, 인권 단체에 배포하였고, 인권미디어(사진·웹툰·UCC) 작품은 인권주간 행사와 세계 인권선언 기념식 등에서 전시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의 페이스북·카카오토티스토리·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역대 공모전 수상작 중 인권 사진과 포스터(지면광고) 등은 태백경찰서, 전라북도청에서 개최하는 인권작품 전시회에 전시되었으며, 교학사, 금성출판사, 천재교과서가 진행 중인 개정 교과서에 인권 포스터 수록 요청이 있어 제공하였다.

[표 2-3-29] 2016년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부문	분야	수상내역	수상자	작 품 명
인권 미디어	UCC	미디어 대상	정승찬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최우수상	안지호	연기수업
		우수상	클로즈업(팀)	3%의 사랑
			유지혜	사람이 먼저인 사회 만들기
	장려상	잡초(팀)	고정관념	
	웹툰	최우수상	김 환	멋진 농구선수
		우수상	김수민	나를 찾아주세요
			정재현	아동학대 인권침해 대물림과 반복
		장려상	김보은	아낌없이 뺏긴 나무
	박수빈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진	최우수상	황규호	삶의 무게
		우수상	김학기	제3의 눈
			이도은	위험한 이동
		장려상	최승관	황단보도
	유재은		인권은 빗방울에 젖지 않는다	
	포토 스토리	우수상	정심(팀)	우리 그냥 공부하게 해 주세요
			고치(팀)	대추나무골 민들레
		장려상	박찬홍	첫 만남에서 그리움까지
			빠샤(팀)	계단아래 청소년
	인권 에세이	일반부	에세이 대상	김성현
최우수상			양성은	사과잼
우수상			박영숙	나는 19급 공무원입니다
			김민채	그 어떤 병도 죄가 될 순 없다
장려상			김울하	외모가 모든 것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허국녕 외 2명	고등학교 성적지향 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학생부		최우수상	장두희	엄마의 미성
		우수상	최수빈	배워야 이해할 수 있어요
			서정윤	외국인 근로자와 인권
		장려상	박시원	나의 고향 방글라데시
			곽서현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세상
		최지윤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 5. 인권도서관 운영

위원회 인권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 도서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에 근거하여 2002년 별도의 소속기관인 인권자료실로 개관하였다. 하지만 2009년 위원회 조직 축소 과정에서 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인권자료실은 2012년에 명칭이 인권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부터는 인권 교육기획과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 서비스, 위원회 간행물<sup>17)</sup>의 등록 및 관리·보존,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교류,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인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3-30] 인권도서관 장서 현황

자료유형	소장현황	자료유형	소장현황
단행본	30,368종 42,434권	전자저널	3,102종
비도서자료	4,468종 6,930점	Web-DB	8종(학술정보 6종 / 법률정보 2종)
연속간행물	102종	전자책	1,883권

자료회원제와 장년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택배서비스 실시, 지역민을 위한 인권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권사무소와 협력하여 분관(부산·광주·대구·대전)을 운영하여 누구나 인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서 관리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도서 등 대출 및 반납에 이용자의

17) 위원회 간행물 목록은 부록 307쪽 참고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다양한 인권 정보를 통해 국민이 인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인권영화 상영회,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표 2-3-31] 2016년 인권도서관 개최 행사 현황

행 사 명	개최 현황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6. 8.~12. 21. 전국 도서관(8개), 인권사무소 인권체험관(4개)
정기 인권영화상영회	총 12회 약 350명 참여
세계인권선언기념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11. 25.~12. 16. 전국 도서관(81개)
인권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총 58건 999명 참가

## 6.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진행했던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인권교육기획과를 직원역량강화 총괄 부서로 지정하여, 직원 역량강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위원회 기능별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정책학교, 인권조사관학교, 인권교육학교, 인권행정학교 등을 2~4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 참여 욕구를 반영하고, 인권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내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여, 4개 팀이 각각 3박4일 일정으로 국내 인권현장을 방문하였다.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인권재단 ‘사람’ 등의 현장 방문을 병행하였다.

[표 2-3-32] 2016년 직원 인권역량강화교육 현황

(단위 : 명)

프로그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인원
인권정책학교	7. 6.~ 8. (2박3일)	충주 인권교육센터	인권정책 업무 추진 사례와 시사점 혐오 표현과 반차별 정책의 과제	25
인권조사관 학교(1차)	7. 12.~15. (3박4일)	충주 인권교육센터	유관기관 조사관 특강 (조사) 인터뷰의 이론과 실습 등	33
간부 리더십 교육	7. 21.~22. (1박2일)	더케이호텔	언론대응 및 홍보전략 인문학 리더십을 통한 조직관리	29
신규직원 역량강화	7. 1.~28.	여성플라자 등	인권위 기능별 업무의 이해 지역인권체험관 방문 인권재단 ‘사람’ 방문	7
국내 현장 탐방	7. 18.~11. 28. (회당 3박4일)	광주, 밀양 등	다양한 인권친화적 아동교육 모색 소록도100년, 한센인 인권 현주소 등 (4개팀)	17
인권교육학교	8. 8.~ 9. (1박2일)	유진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전략 현장에서 본 인권교육의 현황과 이슈	22
인권행정학교	8. 31.~ 9. 2. (3일)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갈등은 풀고, 소통은 쌓는 조직문화 진정한 자기 돌봄을 통한 타자의 돌봄	27
직원 인권강사 역량 강화	9. 21.(1일)	센터마크호텔	인권교육 기법 등	21
인권조사관 학교(2차)	11. 30.~12. 2. (3일)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인권활동가가 말하는 인권 조사보고서 쓰기 실습	33
합 계				214

## 7.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 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170건의 보도자료<sup>18)</sup>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표하였다. 보도자료는 인권위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어젠다를 신문이나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해 공표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도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 신뢰도와 주목도 면에서 광고 대비 5~10배의 효과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2016년 위원회의 언론 공표 활동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향상되고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성명 및 논평, 기타 인권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국내외 주요 활동 등이었다.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대한 지원 또한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사의 인터뷰와 취재 요청에 대해 지원한 건수가 700건이 넘는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해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통해 언론의 기획보도를 이끌어낸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위원회는 언론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언론홍보에 대한 내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언론홍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이슈 및 위기관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는 미디어 트레이닝을 추진하였다.

18) 보도자료 목록은 부록 310쪽 참고

마지막으로 대언론 이해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브라운백 미팅 등 정기적·비정기적 만남을 추진하였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브리핑을 시행, 언론 보도의 집중 조명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인권문제에 대한 환기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브리핑

## 나.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위원회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생활 속 인권을 알리는 한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및 다양한 정책과 주요 활동 성과를 홍보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고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인쇄물, 방송, 온라인, 영상물 등 매체 다각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였다.

먼저, 각 부서의 홍보 수요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6년은 위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였기에 설립기념일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KBS FM(77회), CBS FM(16회), TBS FM(16회)을 통해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원회 조사관 2명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차별행위 사례를 현장감 있게 소개하였다.

2016년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SNS 활용 프로모션

우선 기존의 블로그와 휴먼레터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 고객 3만여 명에게 매일 발송하여 위원회의 주요 보도자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알렸다. 블로그 <별별 이야기>를 통해서도 시민기자단의 기고 등 210건의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으며 생활 속의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페이스북에는 위원회 권고 사항, 현안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 등 기존의 콘텐츠는 물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210건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관심 구독자 수가 전년도보다 4,000명 이상 증가한 3만여 명이 되었다. 모바일 매체의 활용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하여 210건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1,084명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여 총 구독자는 2,311명이 되었다.

아울러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 속 인권을 유머러스하게 다룬 웹툰 <차대리의 인권매뉴얼>을 확대 제작하고 기존의 웹툰 콘텐츠를 모아 인권만화집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청사에서 가까운 지하철 을지로3가역의 입구에 와이드컬러 광고판을 활용하여 개봉하는 인권영화, 대한민국 인권상과 인권공모전, 조정제도 등을 홍보하였고, 위원회 인근 버스 정류장의 기존 명칭에 위원회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식과 인권주간 행사 진행



인권주간 전시체험관

12월 6~8일까지 신한은행 명동금융센터 앞 공간에서 인권전시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인권상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유쾌하게 인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명동을 찾은 많은 이들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2월 9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68주년 및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내 주요 인사는 물론 독일, 핀란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10개국 주한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아나운서 이금희의 진행, 방송인 이동우의 애국가 선창, 스카밴드인 킹스틴 루디스카와 팝페라 가수인 카이의 공연으로 다채롭게 채워진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여 낭독하는 영상이 감동을 주었으며, 위원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역사를 사진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식도 동시에 진행되어 귀화한 박문수 신부가 훈장을, 이경혜 활동가가 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온 개인과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세계인권선언 68주년 및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

## 라. <인권> 잡지 발간을 통한 홍보

<인권> 잡지는 2003년 8월 월간으로 창간돼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된 이후 2016년 12월 통권 107호까지 발간되었다.

<인권> 잡지는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웹진을 발행하고 인쇄합본호를 격월로 3,500부를 발행하여, 웹과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하였다. 또한 웹진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권> 잡지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임과 동시에 국민 교양지를 지향하며 콘텐츠와 디자인의 조화를 통한 ‘읽는 잡지’, ‘보는 잡지’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년에 발행된 <인권> 잡지의 주요 내용은, 시기별

인권 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특집, 위원회 인권 정책 사항 등을 담은 기획 등으로, 다양한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2-3-33] 2016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호 수	특 집	인권이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세상	기타 주요 기사
1/2월호 (통권 96~97 합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을 위한 비인격화는 없다</li> <li>- 이상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 깊은 곳에 길을 내리(한국정신장애 연대 권오용)</li> <li>-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읽기 : 부르카 금지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li> <li>- 국제인권 따라잡기 : 왜 국제인권인가 국제인권조약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li> <li>- 연재 : 나비</li> <li>- 인권만화경 : 아빠는 재택근무자 엄마는 직장맘, 주부 우울증</li> <li>- 시선 : 여전히, 남아있다. 서로 기대다.</li> </ul>
3/4월호 (통권 98~99 합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친권 제한이 필요하다</li> <li>- 영화&lt;4등&gt;을 통해 본 스포츠인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인 없는 수영장에 대한 상상</li> <li>- 2월, 나는 불안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읽기 :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li> <li>- 국제인권 따라잡기 :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규약, 자유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li> <li>- 연재 : 금강산 호랑이, 바다의 왕</li> <li>- 인권만화경 : 나를 소개합니다. 인권등급</li> <li>- 시선 : 어머니, 어머니들</li> </ul>
5/6월호 (통권100~101 합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제도</li> <li>- 인권영화 프로젝트 &lt;시선 사이&gt; 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lt;시선 사이&gt; "갈거나 다르거나, 그림에도 인권"</li> <li>-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읽기 : 수사목적 비밀감청과 인권침해</li> <li>- 국제인권 따라잡기 : 인종차별철폐협약, 양성평등과 여성차별철폐협약</li> <li>- 연재 : 흥부와 놀부, 길 잃은 남매와 늑의 마녀</li> <li>- 인권만화경 : 그때 그랬더라면, 이웃</li> <li>- 시선 : 오월 광주, 그 기억의 회복</li> </ul>
7/8월호 (통권 102~103 합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격침해 급증... 학대만큼 문제죠"</li> <li>- 훈육이라 쓰고 아동학대라 읽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난을 넘어 희망으로 (여명학교 교장 조명숙)</li> <li>- 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는 거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읽기 : 나는 네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li> <li>- 국제인권 따라잡기 : 고문방지협약과 추가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li> <li>- 연재 : 계의 공격, 철갑의 괴수</li> <li>- 인권만화경 : 세입자, 오해</li> <li>- 현장 : "아동권리, 제가 알려 드리죠"</li> <li>- 인권위조정제도안내, 인권작품공모전 안내</li> </ul>

호 수	특 집	인권이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세상	기타 주요 기사
9/10월호 (통권104~105 합본호)	- 노인인권	- 인생은 60부터 (노인인권모니터링단 탁은나) - 20만2000원, 60만원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읽기 :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성적 자기결정권 허용, 어디까지인가 - 국제인권 따라잡기 : 아동보호와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협약 - 연재 : 원송이 임금님, 마술피리 - 인권만화경 : 법상인권, 경력단절사원 - 인권위조정제도 안내
11/12월호 (통권106~107 합본호)	- 세계가 정한 첫 번째 약속, 세계인권선언 -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들	- 성큼성큼 낮은 자리로 (대한민국인권상 국민 훈장 박문수 신부) - 동네북 치듯이 이리 저리	- 국제인권 따라잡기 :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 연재 : 아기 장사, 검은 늑대 - 인권만화경 : 여전히 가난한 인권, 인권 약속 - 현장 : 장애를 넘어 시민과 함께 - 인권위 조정제도 안내

## 마. 인권보도상 시상

2011년 9월 23일 위원회는 언론의 인권 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 바 있다. 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의 정착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인권보도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6년 제5회 인권보도상부터는 대상을 신설하고 상금을 증액하는 등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하였다.

심사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6명의 외부위원과 정책교육국장, 홍보협력과장 2명의 내부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되었다.

제5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31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일간지 11건, TV 18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심사 끝에 총 5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표 2-3-34] 2016년 제4회 인권보도상 당선작

구분	매체명	보도제목	기자
대상	한겨레신문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임인택 외 4인
본상	광주MBC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정소송 승소	김철원
	경인일보	인권사각지대, 산단의 뒷모습 기획보도	김환기 외 3인
	이데일리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관련 보도	조용석 외 1인
	CBS	'마포 장애형제 사건' 연속보도	김광일
	청주CBS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보도	박현호 외 1인
	JTBC		손영석 외 2인

## 바. 결정례 동영상 제작과 배포

2016년에도 2014년부터 시작된 결정례 영상 제작을 진행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이던 결정례를 재연 드라마 형태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인권에 대해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군 폭력, 스포츠인권 등 6개의 분야별 결정례를 선정해 재연 드라마를 통해 설명하였다. 또한 교육 등에서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된 결정례 영상을 모두 담은 DVD를 제작·배포하여 대내외 보급에 나서고 있다.

[표 2-3-35] 결정례 동영상 DVD 수록 내용

분야	사건내용
개인정보	무죄판결 관보 게재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군 폭력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스포츠	운동부 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정신장애	정신 병동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출신지역	이주노동자 자녀의 중등교육 기회 제한
가족형태	계부모에 대한 학부모 위원 피선거권 제한



##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하여 국내외 인권단체와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내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2016년 위원회는 인권사무소가 없는 강원지역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원지역의 인권단체와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다. 원주 및 춘천 등 강원도 내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권과 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특히 강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인권감수성 제고, 인권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 등 정보를 나누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할 예정이며, 2017년 강원인권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역에서 인권옹호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협력 기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인권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새로운 인권 이슈 개발 등 인권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의 인권 관련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 원주 인권박람회 등 14개 사업을 선정해 총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을 중심으로 외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GANHRI 승인심사에서 A등급으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외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특히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을 수입하여 노인인권 의제에 관한 국제적 활동을 견인 하였다. 아울러 2014년 ASEM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노인인권증진사업의 이행을 위해 2015년 ASEM 노인인권콘퍼런스에 이어 2016년 6월 15~16일까지 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ASEM 회원국 장·차관·차관보를 비롯한 ASEM 회원국 대사,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국내외 NGO 및 전문가 등 36개국 266명이 참가하여 노인인권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덴마크와 필리핀 국가인권기구 및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주요 국가인권기구 및 저명한 연구 기관의 활동 및 현안을 파악함으로써 위원회의 국제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독일,



몽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 국가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9차 GANHRI 연례회의 및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F 제21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제60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에 참가해 논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2016년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석하여 위원회가 권고한 기업인권 NAP를 발표하였다. 또한 제7차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의 초청을 받아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하여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발전 방안 등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가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에서 정식 참여권을 인정받는 데 기여하였다.

끝으로 직원 역량 강화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는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스위스 인권현장 훈련, 스페인·미국·캐나다 부처 간 협업 훈련, 프랑스·덴마크·호주 등 부처 내 협업 훈련을 진행하였다.

##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 가. 인권단체와 일상적 협력



강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워크숍

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인권사무소가 없는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원주 및 춘천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 현안과 위원회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하고 인권 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강원인권 사무소 개소가 확정됨에 따라 강원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권사무소 유치 활동에 따른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석요청(총 42회), 단체행사 명의후원(총 8회) 등 다양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위원회가 제작·발간한 각종 영상 자료, 실태조사 보고서 및 인권교육 자료 등에 지역의 인권활동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개 단체에 74종, 135권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표 2-4-1] 지역별 인권도서 전달 인권·시민사회단체 현황

지역	단체명
서울	인권연대, 인권재단 사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	다산인권센터(수원)
충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경북	경북장애인부모회
울산	울산인권운동연대
제주	제주장애인연맹(DPI) 새날도서관

## 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해 시행해오고 있다. 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및 인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새로운 인권과제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 원주 인권박람회 등의 사업을 선정해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활동 프로그램과 지역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도모하였다.

[표 2-4-2] 2016년 분야별 인권단체 협력사업 접수 및 선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장애	이주 다문화	난민	아동· 청소년	북한 인권	여성	군·경	기타
접수	28	4	2	2	7	4	2	2	5
선정	14	3	2	0	2	2	1	1	3

2016년에 선정된 14개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모니터링 활동, 국제인권 모니터링 사업, 건강한 인권도시 원주민들기, 탈북여성 인권개선을 통한 정착지원사업,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모니터링 등으로 분야별 주요 인권 현안이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인권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표 2-4-3] 2016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연 번	단 체 명	사 업 명
1	공익희생자지원센터	근무환경 조사를 통한 해양경찰 인권실태 보고서
2	기업책임시민센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기초한 기업 책임 컨설팅 프로젝트
3	대전YMCA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ART(Arbeit/Right/Team)프로젝트
4	무지개다문화가족	ON AIR '인권': 이주인권(다문화인권)을 말하다
5	버텨	인권교육으로 키우는 정신장애인동아리'티움'
6	부산여성회	여성노동자 말하기 대회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생생톡talk"
7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청소년 의견전달 프로젝트 '내 목소리 들리니'
8	통일미디어	UN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인포그래픽스 "종교의자유"
9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보호 캠페인 및 소비자단체 네트워크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 사업
11	장애여성공감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연구와 인권의제개발 프로젝트
12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인권오감
13	엔케이워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북한인권 실태 영상제작
14	원주시민연대	2016 원주인권박람회

또한 모범적인 사업의 성과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14개의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종료 후 6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표 2-4-4] 2016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사업명(단체명)	선정 이유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ART(Arbeit/Right/Team)프로젝트 <대전YMCA>	원고료 및 식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강사단 양성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거점 센터로 위탁계약을 맺고 시의회와의 연계를 통한 연대활동의 폭이 넓어짐
ON AIR '인권' : 이주인권(다문화인권)을 말하다 <무지개다문화가족>	이주인권 현장 방송, 인권영화 상영, 캠페인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이주인권 접점과 이주인권감수성 함양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주인권 현장 방송으로 외국이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제공함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개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함
여성노동자 말하기 대회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생생톡talk" <부산여성회>	소규모 예산으로 여성노동자의 생생한 여성노동현실 드러내기와 공감대 넓혀가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생한 여성노동자 현실을 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인권오감 <아시아의창>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상점 등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SNS와 소식지를 통해 캠페인 홍보로 인지도 구축함.
청소년 의견전달 프로젝트 '내 목소리 들리니'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인권기획단 20여 명 구성과 언론보도, 실태조사결과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지역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구축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함

#### 다.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위원회는 우리 사회 인권 취약 분야를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원회의 정책과제 발굴, 시설 및 단체 관계자와 당사자의 의견 수렴, 현안 논의 등을 위해 인권현장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인권현장 방문은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현장과 시설을 총 7회 방문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지적·발달장애인 등 당사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 청취하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들의 제언이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방문(3. 30.)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5. 17.)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방문(10. 5.)



장애인보호작업장 누야하우스 방문(12. 14.)

[표 2-4-5] 2016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연 번	방 문 일	방 문 자	시 설 명	시 설 성 격
1	3. 30.	이성호 위원장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살롬의집)	결혼이주·이주아동·이주노동자 지원시설
2	5. 17.	정상환 상임위원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3	9. 28.	이성호 위원장	금암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4	10. 5.	이성호 위원장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쉼터
5	11. 14.	정상환 상임위원	대구이주여성쉼터	폭력피해 등 이주여성쉼터
6	11. 29.	이성호 위원장, 정상환 상임위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소
7	12. 14.	이경숙 상임위원	누야하우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 라. 직원 연찬회

위원회는 6월 24~25일 양일간 문경새재에서 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직원연찬회

전 직원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소통하는 조직 만들기를 주제로 외부인사 초청 특강과 함께 위원장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 부서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문경새재 옛길을 동료들과 함께 걸으며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였다.

## 마. 인권위원 워크숍

국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인권 이슈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인권위원 워크숍을 5월 27~28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힐하우스에서 개최하였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의 인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 초청 특강 및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인권 의제를 발굴하였으며, 인권위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였다. 2016년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독일의 정치와 통일’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특정 인권 이슈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권위원 워크숍

##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 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이다. 출범 시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2016년 3월 연례회의에서 명칭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변경하였다.

위원회는 매년 GANHRI 연례회의 및 집행이사회에 참가해 다자간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2016년 3월 제29차 연례회의에서 △정관 변경, △명칭 변경, △메리다 선언 후속조치, △분쟁 중 혹은 분쟁 이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난민 등에 관한 국가인권기구 역할 △인종차별 철폐 등에 관한

인권적 접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 활동을 시작한 GANHRI 고령화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실무그룹의 업무 세칙을 확정하고 부의장을 선출하였으며, 유엔 고령화실무그룹에 제출할 성명서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국가인권기구의 노인인권 증진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위원회는 GANHRI 승인소위가 권고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를 개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2016년 상반기 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다. GANHRI 승인소위는 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위원회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특히 높게 평가하였다.

## 2)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조정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2016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1차 APF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연례회의에서는 △바레인, 이라크 인권기구 준회원 가입 승인, △사형제도에 관한 APF 자문위원회 수정보고서 검토, △APF 아랍어 웹사이트 서비스 실시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이성호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소개하고, 인권 NAP 수립 권고, 노인인권 증진 사업, 그리고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등 위원회 최근 활동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6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PF 고문방지대사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가 실시한 고문방지 프로젝트에 관하여 발표하였으며,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세션에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 나.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주요 국가인권기구 교류방문을 통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주요 인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6년에는 덴마크와 필리핀 국가인권기구를 교류 방문하였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세계의 국가인권기구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로, 이번 교류방문을 통해 필리핀 인권위원회와 지역사무소 등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직접 대화하고 둘러봄으로써 기존 연구 문헌이나 온라인상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생생한 정보와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한 현실 감각을 높일 수 있었다.



필리핀 국가인권기구 방문

덴마크 인권기구를 방문해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 확립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공무원, 인권활동가, 일반 시민, 학생,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과 사회적 평등,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활동 성과를 파악하였으며, 위원회 관련 업무에 이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덴마크 국가인권기구 방문

## 다. 유엔기구 및 기타 인권 관련 기구와의 협력

### 1)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위원회는 2016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총회에 참가하여 △2030 어젠다의 성인지적 실행을 위한 주요 전략, △2030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의 성인지적 실행을 위한 참여와 파트너십, △여성에 대한 데이터 격차와 방법론 등 전문가 패널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모로코, 캐나다 국가인권기구들과 함께 국가인권기구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사회권 관련 활동 단체의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국제네트워크(ESCR-Net: International Network for Economic & Social & Cultural Rights)를 방문하였다. ESCR-Net은 2004년 설립된 국제인권단체로 사회권 관련 단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멤버십이 강하고 아시아 쪽이 약한 편이라 아시아 지역의 멤버십을 만들어가고 있다.

## 2)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평의회 방문



유럽인권재판소 방문

위원회는 3월 17~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공식 방문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1959년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동 협약에 가입한 47개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판결하고, 각 가입국이 국내법을 협약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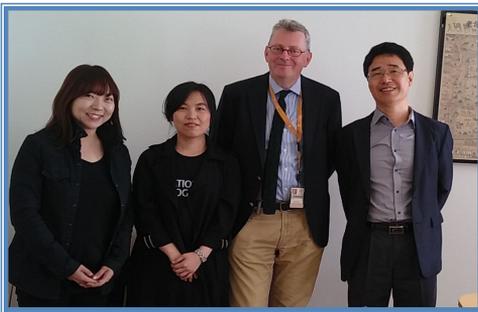
이성호 위원장과 라이몬드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 3)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연구소 방문 교류협력

위원회는 국제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위원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웨덴 라울발렌베리연구소(Roul Wallenberg Institute)를 2016년 9월에 방문하였다. 이 연구소는 다수의 대학, 정부기관, 국가인권기구 등과 함께 긴밀히 연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교육의 방법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웨덴 내의 경찰, 검찰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기관 관계자,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12개 국가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라울발렌베리연구소 방문을 통해 사법부·검찰·경찰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기구 및 제3세계 국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인권교육 성과와

인권 일반 및 국제인권법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소의 다양한 인권교육 경험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위원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위원회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인권교육 운영체계와 내용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상호간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었다.



라울발렌베리연구소 방문

## 라.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위원회는 2016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2016 Partnership Program for Human Rights Defenders)를 5월 16~20일 진행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이 사업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및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소속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을 초청하여 위원회의 활동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지역적·국제적 인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입교식



도서관 방문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일 국가인권기구 정책자문가 1명, 인도네시아 국가인권기구 직원 2명, 말레이시아 국가인권기구 직원 1명, 몽골 국가인권기구 1명, 필리핀 국가인권기구 1명 등 총 5개국에서 6명이 참여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과 인권’ 및 ‘정보인권’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참가자 소속 국가인권기구 소개, 활동 현황 및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각 주제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 인권기구의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국제회의 개최

위원회는 6월 15~16일 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ASEM 회원국 장·차관·차관보를 비롯한 ASEM 회원국 대사,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인권기구, 국내외 NGO 및 전문가 등 36개국 266명이 참가하여 노인인권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포럼 개최식



포럼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포럼의 주제는 △노인 빈곤해소·건강권 증진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sup>19)</sup> 이행점검 및 향후 발전방안, △노인 빈곤 해소와 관련된 유럽과 아시아의 정책 경험, △노인 건강권 증진과 관련된 유럽과 아시아의 정책 경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었다. 주제별 전문가의 발표 및 참여자의 토론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포럼 참가자들은 노인 관련 정책 수립 시 노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 보호 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국제기구·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ASEM 고령화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포럼 개최 결과는 2016년 6월 몽골에서 개최된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 보고되었으며, 의장 성명서에 공식 행사 결과로 명시되었다.

19) UN은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에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for Action on Ageing)'을 발표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 의장 성명서(요약)〉

-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노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 빈곤과 장기요양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노인에게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장기요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각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노인의 공공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그리고 소득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노인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최저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노인인권 공론의 장 개최, 국제적·지역적 연계 강화, 국제사회의 동향 모니터링, 관련 자료의 축적과 정보의 공유, 노인인권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주의 환기,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토론하고 이행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ASEM 고령화센터 (ASEM Ageing Cent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마지막으로 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의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협력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2017년에도 ASEM 노인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 4. 직원 국외 연수

### 가. 인권현장훈련

위원회는 6월 6~15일 2016년 국외 인권현장훈련을 진행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인권현장훈련은 해외 인권 현장 및 인권기구 방문, 교류를 통해 국제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 이슈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해외 사례 연구, 검토를 통한 직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4명은 노동·이주민·난민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기구와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제적 인권보호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권퍼런스 참관,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등을 방문하였고, 관련 활동가 면담 등을 통해 직원 인권의식 고양은 물론 위원회의 주요 인권의식 개선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었다.

### 나. 부처 간 협업 훈련

위원회는 10월 25일~11월 4일, 10월 30일~11월 12일 두 차례 부처 간 협업 훈련을 진행하였다. 2016년 진행한 부처 간 협업 훈련은 위원회의 주도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함께 공동 과제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최종 선발된 12명은 프랑스 고문방지위원회, 스페인 고문방지국가기구, 마드리드 교도소 등을 방문,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 및 실제적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버클리 로스쿨 및 건강복지서비스부, 캐나다 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 등을 방문하여 정신병원 및 보호시설의 정신건강장애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훈련 결과는 관련 실태조사, 정책개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향후 수용자 처우기준 및 지원 프로그램인 ‘특별배려·지원이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한 모범적 처우기준’ 마련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되며, 정신건강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 검토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캐나다 아동청소년건강증진센터 방문

#### 다. 부처 내 협업 훈련

위원회는 6월 6~19일과 7월 10~29일 두 차례 부처 내 협업 훈련을 진행하였다. 2016년 진행한 부처 내 협업 훈련의 경우 기업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교육 방법 모색 및 글로벌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방법론 현황 연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제 및 인권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 세계협력개발기구, 덴마크 인권위원회, 호주 남호주대학교 및 아동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훈련의 결과물은 인권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 제5장 인권사무소

###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소속 기관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에 4개의 인권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 부산·광주인권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대구인권사무소, 2014년 10월 대전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인권사무소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

[표 2-5-1] 인권사무소 위치 및 관할 구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전인권사무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인권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인권 상담,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기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 조사·구제, △인권교육,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권체험관 운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사무소 개소 이후 지역 주민의 인권접근성이 향상되고 인권 관련 교육,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권상담, 진정 접수, 인권교육 요청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5-2] 2016년 인권사무소 진정 및 인권교육 등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진정·상담 민원·안내 접수건수	면접진정		진정사건		인권교육	
		접수	처리	접수	처리	횟수	인원
합 계	20,210	1,842	1,749	3,330	3,296	1,703	83,356
부산인권사무소	4,453	566	537	859	862	473	27,965
광주인권사무소	6,988	372	366	779	735	280	10,250
대구인권사무소	4,342	589	550	806	804	599	24,553
대전인권사무소	4,427	315	296	886	895	351	20,588

## 제2절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3월 인권사무소의 조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권 확대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신규 조사 영역에 대한 조사관들의 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조사관사건토론회)을 운영하였다.

관할 구역 내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사회복지·노인·영유아 분야의 인권교육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470여 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2016년 8월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학교분야 인권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2016년 9월에는 인권전시관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해 전시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다양한 주제의 인권작품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의 인권 캠페인, △울산인권마라톤 인권 캠페인, △세계인권선언 기념 찾아가는 인권문화행사, △인권토크콘서트, △시민인권강좌, △인권영화 상영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인권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워크숍 등 인권 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권 행사를 추진하였다.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가.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부산인권사무소의 진정접수·상담·안내·민원 처리건수는 2007년부터 4,000건을 상회해 대체적으로 연간 4,000~4,500건을 처리하고 있다.

[표 2-5-3]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원 / 안내	합 계
누 계	6,188	28,444	15,702	50,334
2016	553	2,497	1,403	4,453
2015	605	1,793	2,103	4,501
2014	681	1,948	845	3,474
2013	753	2,656	687	4,096
2012	786	3,172	548	4,506

※ 누계는 2005. 10. 11. ~ 2016. 12. 31. 합계임(상담은 면진진정 상담건수 포함)

2016년 부산인권사무소가 처리한 인권상담(2,497건)의 접수 방법별 분석 결과, 전화상담이 1,797건(72%), 방문상담이 163건(6.5%), 그리고 구급·보호 시설에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면진진정 상담이 537건(21.5%)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분류에 의하면,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등)이 1,170건 (46.9%)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발적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인권침해 호소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뒤를 이어 구금시설 379건(14%), 경찰 127건(5.1%)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2016년에 접수된 진정사건 553건 중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행위 사건이 각각 511건(92.4%)과 39건(7.1%)을 차지하였다. 피진정기관은 보호시설 305건(59.7%), 구금시설 108건(21.1%), 경찰 68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접수된 면진진정은 총 566건으로 교정시설 348건(61.5%), 정신보건시설 218건(38.5%) 순이다.

[표 2-5-4]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연도	전년 이월	신청	종결처리				평균소요 일수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8,578	8,550	1,827 (25.4)	1,931 (22.6)	4,792 (56)	
2016	14	566	537	213 (39.7)	115 (21.4)	209 (38.9)	17.7
2015	37	557	565	213 (37.7)	144 (25.5)	208 (36.8)	16.6
2014	38	645	647	180 (27.9)	190 (29.4)	277 (42.8)	16.1
2013	23	867	852	251 (29.5)	240 (28.2)	361 (42.4)	16.7
2012	24	977	978	237 (24.2)	243 (24.8)	498 (50.9)	12.7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나. 인권순회상담 및 진정함 운영실태 점검

부산인권사무소는 격오지 거주민과 인권취약계층의 균등한 권리구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거제(7. 27. 거제청소년수련관), 창원(8. 16. 마산야구장, 11. 24.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울산(11. 6. 울산인권마라톤대회장, 11. 22. 울산장애인부모회), 김해(11. 25. 김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총 6회의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도 병행하여 방문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한편, 구금·보호시설 시설장은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

위원회법 시행령」에 의거, 위원회 진정함을 시설 내에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관내 경찰서 유치장(16곳)과 군 영창시설(6곳) 등 총 22개의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진정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침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부산인권사무소는 2006년 9월 관할 구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4월부터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왔다. 2016년 3월에는 장애인 차별사건과 국가기관(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제외),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조사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인권사무소는 4~5월 부산, 울산, 창원, 거제에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권 확대 설명회를 개최하여 진정제도 및 조사 분야 확장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였다.

[표 2-5-5]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인 용						미 인 용				
			소계	권고	징계 권고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소계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누 계	5,331	5,232	360	158	2	5	-	195	4,872	1,999	2,843	20	10
2016	859	862	20	12	-	-	-	8	842	270	562	9	1
2015	729	787	67	22	-	1	-	44	720	259	460	1	-
2014	765	710	65	18	-	1	-	46	645	265	378	1	1
2013	693	691	52	13	1	-	-	38	639	315	320	1	3
2012	723	733	51	18	-	-	-	33	682	284	397	-	1

※ 처리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누계 2,211건, 2016년 417건임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2016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862건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당해 연도 배당 사건 수(859건) 대비 100.3%의 처리율을 보였다. 전년 대비 사건처리율은 약 110%를 기록하였으며, 사건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53일이었다.

사무소가 조사한 총 862건 중 정신보건시설 사건이 378건(44.0%), 교정시설 사건이 242건(28.2%), 각급학교 사건이 82건(9.5%), 장애인 차별사건이 58건(6.8%), 지방자치단체 사건이 42건(4.9%)을 차지하였다.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 수는 총 20건(권고 12건, 합의종결 8건), 조사 중 해결건수는 51건이다.

주요 인용사건으로는 △뇌경색이 발생한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진정사건 조사 이외에도, 부산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2016. 8.),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단식농성(2016. 3. 부산광역시교육청 앞) 등 긴급한 인권 현안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 3. 인권교육·홍보·협력

#### 가. 인권교육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군인, 정신보건시설·노숙인 시설·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연간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473회, 2만 7,9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교육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증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 및 다양화 요구,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교육 수요 증가, △시민의 인권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5-6]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인권특강	양성과정	의무교육	방문교육	감수성향상	합 계
횟 수	369	14	35	36	19	473
인 원	20,576	266	1,687	500	4,936	27,965

[표 2-5-7]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회)

구 분	학생/학교	시민	공공 (행정, 복지, 의료)	교정/경찰	군인	합 계
인권특강	12,139 (221)	6,033 (120)	3,153 (50)	698 (11)	240 (2)	22,263 (404)
과정운영	-	266 (14)	4,936 (19)	-	-	5,202 (33)
방문교육	200 (15)	287 (19)	13 (2)	-	-	500 (36)
합 계	12,339 (236)	6,586 (153)	8,102 (71)	698 (11)	240 (2)	27,965 (473)

[표 2-5-8] 부산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교정/검/경/공무원	545	555	43	1,883	938	8,085
행정/교육공무원	1,365	2,654	1,460	3,003	1,732	11,002
보호시설	2,714	2,016	3,161	2,131	1,687	18,570
학교/학생	2,964	6,162	8,905	9,134	12,339	42,811
이주/다문화	5,240	6,028	332	155	135	12,433
노인	645	425	10,623	1,527	340	14,170
기타	2,108	2,313	5,917	3,552	10,794	26,131
합계	15,581	20,153	30,441	21,385	27,965	133,202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부산인권사무소는 3~9월 사회복지·노인·영유아 분야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기본·전문·심화과정을 운영하고, 10월 역량평가를 통해 인권강사를 최종 선발하였다. 또한 강사단 보수교육 총 5회, 강사단 인권연구모임을 총 18회 개최

하여 인권강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6년 5월에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여 부산시가 인권교육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였다.



교원 인권감수성향상 직무연수과정

8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학교분야 인권보장과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MOU 체결과 더불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7~8월 초·중·고교 교원 총 88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9~11월 부산지역 초·중·고교 60개 학급, 총 1,5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MOU를 체결한 경상남도교육청과는 9~11월 경남지역 초·중·고교 78개 학급, 총 3,0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특강’을 실시하는 등 학교분야 인권교육을 확대해나갔다.

2015년 4월 개관한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는 2016년 인권교육과 다양한 인권 행사(토론회, 워크숍, 연구모임 등)가 총 100차례 개최되어, 지역의 인권교육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나. 홍보·협력

### 1)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운영

2010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에 개관한 부산인권전시관은 인권작품 전시, 인권교육, 문화공연 등 시민과 학생들의 인권문화 체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권전시관의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작품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전시관 시설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전시 벽면 등을 보수하고, 공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 큐레이터, 작가 등에게 자문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전시 관람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2-5-9] 부산인권사무소 2016년 인권전시관 운영 현황

연번	분야	전시 제목	협력 기관
1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사진작품전'마음의 시각을 보여주세요'	인천해광학교
2	안 전 권	'재난, 사건, 사고 그리고 인권' 전시전 '쿠마모토에 보내는 편지'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3	정신장애	세상에 외치는 소리 2	문화공간 <빈빈>
4	노인인권	노인인권증진 카툰 전시회	부산시동부노인전문기관
5	인권일반	2016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도서관
6	장애인권	한솔학교(특수학교) 작품전'예술아 놀자'	부산한솔학교
7	장애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미술, 영상작품 전시회	사상구장애인복지관
8	인권일반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홍보협력과
9	인권일반	부산지역 도시사진전'파괴된 공동체의 회복'	부산 대안예술사진 작가모임

또한, 부산대안예술작가 작품전 <공간과 주거, 인권>, 장애인특수학교 학생 작품전 <인권아, 놀자>, 재난과 인권에 관한 사진 작품전 <쿠마모토에 보내는 편지>, 정신장애인 시화전 <세상에 외치는 소리 2>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 작품을 발굴하여 전시관 운영의 질을 높였다. 그 결과 인권전시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인권전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외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인권전시관 시설 개선 전(좌측 사진), 후(우측 사진) 모습(2016. 9.)

## 2) 지역인권문화 확산 홍보활동

부산인권사무소는 홍보사업을 계획하면서 지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스포츠 행사와 연계한 ‘시민참여형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인권캠페인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와의 협력을 통해 8월 16일 마산야구장에서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인권캠페인’을 펼쳤다. 이주민, 장애인, 보육시설 아동 등 120명을 초청하여 야구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부스에서는 ‘인권도화지에 내 얼굴 담기 (캐리커처 제공)’, ‘손끝으로 느끼는 내

이름(점자이름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초등학교생의 시구와 장애인 합창단의 장내 공연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홍보하였다.

또한 11월 6일에는 매년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울산인권마라톤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달리는 울산인권마라톤대회 인권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6년 울산에 지진과 태풍 피해가 컸던 만큼, 부산인권사무소는

12월 9일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안전할 권리(재난과 인권)’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는 인권토크콘서트도 개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68주년을 기념하여 12월에는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지역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 8곳, 총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합창 공연과 인권체험(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신장애인의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부산인권사무소는 인권영화 상영회(5. 24. 부산 동래 CGV), 시민인권강좌(4~12월, 총 6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였다.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블로그(<http://blog.naver.com/human1331>)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제7기 블로그 인권기자단 12명을 선발해 부산인권사무소의 주요 활동과 인권 소식을 알리는 기사를 작성, 블로그에 실었다.

### 3) 인권단체 협력

부산인권사무소는 2015년에 이어, 인권활동가의 역량 강화 및 상담단체 종사자의 소진 방지를 위해 ‘인권연수 프로그램(7. 13.~14. 거제)’과 ‘쉼 프로그램(7. 21. 진주)’을 운영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총 60여 차례에 걸쳐 여러 분야의 인권단체와 업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권단체간담회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가. 장애인 인권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부산인권사무소는 2016년도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단 28명(장애인 21명 포함)을 선발해 5~8월 부산, 울산, 창원, 거제, 통영 소재 우체국(33곳), 고용센터(9곳), 백화점(8곳) 및 대형마트(20곳)를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접근성 및 편의제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통지받은 대다수의 기관이 시설 개선 및 편의제공 조치 계획 등을 통보해왔다.

한편 4월 2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 (사)열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 정보통신·정보이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 나. 노인 인권

부산인권사무소는 연령차별, 빈곤, 학대 등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권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노인 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5월 모니터링단원 15명을 선발하고, 6월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9월 부산지역 노인복지관 13곳과 경로당 9곳을 대상으로 ‘노인의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 및 문화 욕구’에 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6월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제9회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에 참여하여 노인 대상 인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 다. 아동 인권

위원회는 2016년 5개 도시(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서 권역별로 '제1기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5월, 중·고교학생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18명을 선발하여 '학교교칙 및 상·벌점 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5~8월까지, 총 9차에 걸친 정기모임에서 단원들은 중·고등학교의 학칙을 분석, 토론하였다. 또한 부산 광안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캠페인(8. 27. '인권 UP, 불륜을 올리고')을 펼쳤다.

## 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및 인권조례 이행 지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인권조례 이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인권사무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과 역량에 맞게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울산광역시 민관합동 인권 워크숍(9. 8.~9.)'과 '울산광역시 인권정책협의회 운영 모색 워크숍(10. 24.)'을 개최하였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파트너 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 인권행사(인권토크콘서트 등) 기획 단계에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워크숍'(11. 24.)을 개최하고, 시군구 인권 담당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권행정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2017년에는 '인권행정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제3절 광주인권사무소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2016년에는 기존 구금, 정신병원,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과 별도로 장애인차별 사건을 비롯한 각급학교,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인권사무소로 이양되었다. 이양된 사건은 대부분 그동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서 사건 처리의 접근성과 신속성이 향상되었으며 진정사건 접수 대비 98%의 처리율을 보였다. 아울러 사무소 내에 조사팀(2014. 9.)과 교육협력팀(2016. 3.)이 신설되어 지역 내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과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도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인권옹호자워크숍

한편, 지역 내 인권제도 확산을 위해 9월 27일 전라북도와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했는데 기관 간 협치 모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아울러 인권업무에 대한 경험과 추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인권담당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인권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진행한 실무자 초청 간담회에는 17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또한 인권옹호자 워크숍, 40개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제6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장애, 사회복지, 영유아 분야에 대한 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해 41명의 인권강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가.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광주인권사무소는 2016년 진정·상담·안내·민원을 5,254건 접수하였다. 상담은 2,129건으로 접수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전화 1,800건(85%), 방문 225건(10%), 구급·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에 조사관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면진진정이 104건(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보건시설의 상담이 1,060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불법·강제입원되었다는 상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10]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누 계	6,352	21,009	30,041	57,402
2016	654	2,129	2,471	5,254
2015	771	2,326	3,891	6,988
2014	787	2,411	3,406	6,604
2013	670	2,245	3,412	6,327
2012	731	2,178	4,155	7,064

※ 진정접수 숫자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한 진정만 포함한 숫자이며, 본부에서 이송된 사건은 제외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나.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 및 인권순회상담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상담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지역별 인권단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인권상담활동가 워크숍’과 ‘인권상담사례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인권상담활동가 워크숍은 상담원 소진 방지 프로그램과 위원회 상담 현황 및 결정례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5월 광주, 10월



2016년 인권상담활동가 워크숍(제주)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두 차례 워크숍에는 21개 단체의 인권상담활동가 40명이 참석하였다.

11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했는데, 여성, 여성장애,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청소년 등 분야별 인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16개 단체에서 상담활동가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사례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사례발표회에서는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와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사례 등이 공유되었다.



인권순회상담(광주종합버스터미널)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총 4회 실시하였는데, 5월에는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특히 7월에는 인권취약계층인 청소년들과 상담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대표 축제인 ‘청소년어울림 마당’과 병행하여 주말에 추진하였다.

[표 2-5-11]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회 차	일 자	장 소	대 상	내 용
1	4. 20.	익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인권·법률 상담, 인권사진 전시홍보활동
2	5. 21.	남부대학교(광주)	이주민	
3	7. 9.	광주광역시종합버스터미널	청소년	
4	11. 14.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시민	

## 다. 진정함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2016년 진정함 점검 대상은 △정신보건시설 중 우편을 통한 진정접수가 미비한 시설, △2015년 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설, △지역별 시설 규모와 인원이 많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현장 점검 전 우선 점검 대상 시설에 점검 관련 안내문을 통지한 후 자체 점검토록 한 뒤 조사관이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시설에 건의하였고 시설 측도 진정함 점검이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란 점에 공감하였다. 점검 결과, 정신보건시설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정 제기 및 면전진정 방법 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안내되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진정함 내에 환자가 넣어둔 서면이 오랜 기간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시정 조치하였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은 진정함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높고 설치·운영도 대체로 잘되고 있으나 거주시설 생활인들의 장애 특성상 진정함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보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16년 진정함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진정서 방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에도 재점검을 통해 진정함 관리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표 2-5-12]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 진정함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항 목	구 분	양 호	개선필요	총 계
1	진정함 설치	26	0	26
2	진정서 및 봉투, 필기구 설치	22	4	26
3	진정안내문 부착	24	2	26
4	진정함 시건 상태	24	2	26
5	진정함 관리자 지정	26	0	26
6	독립된 진정서 작성 공간 유무	26	0	26

## 라.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2016년도에 접수된 면전진정 신청은 총 374건이었다.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꾸준한 진정함 점검 및 조사·구제활동의 결과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고, 가족·친지·지인 등을 통해 우편이나 온라인 매체(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5-13]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일)

구분 연도	전년 이월	신청	종 결 처 리				평균소요 일수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누 계		7,027	6,669	1,506 (21.4)	2,049 (29.2)	3,472 (49.4)	
2016	27	374	357	170 (47.6)	83 (23.3)	104 (29.1)	32.3
2015	19	372	366	140 (38.2)	118 (32.2)	108 (29.5)	21.9
2014	17	497	498	175 (35.1)	169 (33.9)	154 (30.9)	18.4
2013	22	527	518	157 (30.3)	168 (32.4)	193 (37.3)	17.4
2012	47	639	664	131 (19.7)	229 (34.5)	304 (45.8)	16.5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2016년 3월부터 장애인 차별사건, 국가기관(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 제외),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인권사무소로 이양되어 조사 범위가 확대된 이후 진정사건이 전년도보다 117건(15.1%)이 증가한 총 888건이 접수되었다.

확대된 조사 범위에서 총 186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진정사건이 78건, 장애인 차별사건이 56건으로 이 두 범위의 진정사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각급학교 사건 중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20건이며 나머지 58건은 대부분 교직원 또는 대학생이 진정한 사건이었다.

2016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처리한 진정사건 중 인용은 고발 5건, 권고 17건, 합의종결 8건이며, 조사중 해결은 61건이다. 주요 인용 사례로는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판단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을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시킨 행위, △보호의무자 2인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1인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 행위, △실질적 퇴원 없이 여러 병원에 지속적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누락한 행위(이상 고발조치), △교정시설에서 자해 방지 명목으로 수용자에게 장기간 뒷수갑을 채운 행위,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킨 행위, △공기업 소속 측량기사가 측량을 이유로 무단 주거침입한 행위(이상 행위자에 대한 주의조치, 인권교육 및 지도감독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등이 있다.

[표 2-5-14]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인용사건						미인용사건				
			소계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누 계	4,395	4,343	268	99	6	2	1	160	4,075	2,338	21	1,712	4
2016년	888	926	30	17	5	-	-	8	896	540	9	346	1
2015년	771	735	57	16	-	-	-	41	678	449	-	227	2
2014년	749	713	40	10	1	-	-	29	673	390	5	277	1
2013년	675	720	56	13	-	-	-	43	664	336	4	324	-
2012년	750	718	46	28	-	-	-	20	670	392	2	276	-

※ 처리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누계 1,925건, 2016년 414건임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5. 10. 1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3. 인권교육·홍보·협력

#### 가. 인권교육



인권강사단 연구워크숍

광주인권사무소는 2015년에 이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권 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장애, 사회복지 3개 분야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각 과정은 기본, 전문, 심화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최종 시연 평가를 통해 41명의 강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주제별, 대상별 맞춤형 인권특강(67회, 4,290명), 찾아가는 학교인권특강(79회, 2,732명),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15회, 954명),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5회, 229명)을 진행하였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은 토론회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 스스로 교육을 주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였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의 경우 입퇴원, 격리강박 등 모두 10개의 주제를 제시했는데 ‘폐쇄병동 내 환자들의 휴대전화 허용 여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양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11월에는 그동안 인권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하던 ‘활동가 워크숍’을 인권교육 현장에 있는 활동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쟁점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인권옹호자들 간의 연대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2-5-15] 광주인권사무소 2016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인권특강	의무교육 (정신,노숙)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방문 프로그램	기타	합계
횟수	67	20	79	73	16	255
인원	4,290	1,183	2,732	1,132	496	9,833

[표 2-5-16] 광주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누 계
경찰/국가기관	3,454	1,270	2,497	163	120	9,883
공무원/군인/지자체	691	1,751	534	235	1,499	6,815
보호시설	1,159	1,227	1,585	1,280	1,331	9,492
사회복지증사자	1,674	1,554	930	-	40	11,555
학교(아동·청소년)	1,716	1,043	6,023	5,494	3,919	25,890
장애인	-	1,671	200	119	567	3,738
이주다문화	2,203	2,352	1,770	244	80	9,344
노 인	20	160	1,654	40	90	2,593
대학교	100	110	-	-	55	265
노숙인시설	-	-	220	222	229	671
시민사회단체	125	70	-	560	-	755
기 타	40	172	452	743	771	3,353
방문체험	1,362	1,468	1,813	1,150	1,132	6,925
합 계	12,544	12,848	17,678	10,250	9,833	91,279

※ 누계는 2008.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나. 홍보·협력

### 1) 홍보

광주인권사무소는 종전 광주전남 중심의 언론사 초청 기자간담회를 전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진행하여 관할 구역 내 인권침해 이슈, <인권보도준칙> 등과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블로그 기자단은 3년차를 맞아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13명의 기자가 한 해 동안 72건의 다양한 인권 관련 분석 기사를 작성하였다.

인권테마역사는 이주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무지개다문화가족센터' 현장 공개 방송 진행과 인권영화 상영, 동화 구연 등을 진행하며 프로그램 다양화를



홍보 브로슈어 표지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한 ‘2016 서울인권콘퍼런스’에서 인권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인권은 사람이 먼저임을 강조한다. 광주인권사무소는 11년간 지역사회와 협치를 실현하면서 인권보호와 예방을 위한 주요 활동을 담은 <광주인권사무소 이야기, 사랑의 꽃>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다. 위 홍보자료는 총 2편으로 제작되었다. 1편에는 광주인권사무소가 걸어온 11년의 과정과 주요 업무를 소개하였고, 2편에는 위원회의 비전과 미션,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2편에는 주요 정책 권고 내용과 침해 및 차별 사례를 소개하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예방의 효과도 고려하였다. 위의 자료는 2017년 인권교육 현장과 기관 방문 시 다양한 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 2) 협력

2016년 협력사업은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자리를 통해 참석 단체들은 광주인권사무소의 인권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



광주인권정책라운드 테이블

2011년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는 민·관·학 소통 및 학습의 공간인 ‘광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그간 46회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도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공동 참여하여 △인권마을,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학교협동조합, 참여와 자치로 그리는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참여권과 청소년의회, △인권의 지평(새로운 인권이론을 위한 밋그림),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성을 묻다, △기업과 인권, △국민의 안전과 인권,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 △생활 속 인권모니터링, △광주는 원전에서 안전한가? 등 주요 인권 이슈를 비롯하여 안전권, 인권마을 등 다양한 관점의 인권 담론을 다뤘다.

또한 2011년 시작한 ‘광주인권정책 연석회의’도 2016년까지 50회를 진행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기관들의 인권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인권 거버넌스를 실현하였다.



광주인권정책 연석회의

2015년 인권사무소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한 청소년 인권골든벨의 호응에 힘입어 2016년에는 광주시교육청과 공동 주관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골든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기념 제68주년을 맞아 12월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아름다운 약속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제로 하여 광주 지역 주요 인권기관 및 40여 개 인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가.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단 활동

8기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활동은 총 28명의 모니터링 단원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기관 42곳(우체국, 고용센터)과 대형 판매시설 18곳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시 접근성 및 편의 제공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적으로 결과 보고회(12월)를 가졌다. 또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광주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황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정보접근권 분야로 나누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나. 노인 인권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은 20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전북(전주, 군산), 전남(화순, 담양, 목포, 순천) 지역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은 노인 당사자들이 직접 현장으로 출장하여 복지관 관계자를 포함해 이용인들과 직접 면담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의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 다. 아동청소년 인권

2016년 처음으로 운영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에서는 광주광역시 청소년(중학생 69명, 고등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참여권 실태 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 홍보활동

인권지킴이단은 스스로 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2차례에 걸친 전국 모임과 4차례에 거친 자체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우쳐가는 자리가 되었다. 이외에 광주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진행한 인권순회상담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하였고,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캠페인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 밀집도가 높은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표준계약서’ 배포와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방문 프로그램 참여, 제68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시 인권선언문 낭독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 라. 이주 인권



광주광역시 이주민인권개선 포럼

우리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2014년의 다문화 인권교육 포럼, 2015년의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인권교육 현황 토론회에 이어 2016년에는 ‘광주광역시의 이주민인권개선 포럼’을 진행하였다. 발제문에는 경기도 이주민 인권정책(경기도의 외국인 인권조례와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이 소개되었고, 광주광역시에도 이주민인권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다. 위 포럼은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동아시아법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 마. 인권제도 확산 사업



지방자치단체 인권담당자 초청 간담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008년부터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실무협의 등을 통해 광주광역시 인권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 사업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2016년 말 현재, 관할 구역 내 광역자치단체 4곳은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구역 내 4개 광역 및 7개 기초자치단체 인권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인권제도 확산을 위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4절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2015년 5월 1일 대구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고, 2015년 9월 15일 인권도서관 대구분관을 설치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4년 9월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관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순회상담과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였다.

또한 인권친화적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대구시민사회포럼 등을 통하여 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에도 힘썼다.

인권의 가치를 알리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향 소통 중심의 블로그, SNS, 그리고 지역 라디오방송, 인터넷 신문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고, 주민 참여 기자단, 시민초청 인권영화 상영회 등을 운영하여 소통과 함께 인권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가.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표 2-5-17]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누 계	4,829	19,542	12,120	36,491
2016	527	2,146	1,669	4,342
2015	643	2,258	1,910	4,811
2014	633	2,543	2,083	5,259
2013	703	2,660	878	4,241
2012	533	2,249	455	3,237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7. 7.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건수 포함)

## 나. 인권상담 활동 및 보호시설 진정함 점검

대구인권사무소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인권상담 활동가들로 구성된 인권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노숙인 무료급식소, HIV/AIDS감염인의 인권, 성매매와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의 주제로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16년 총 7회의 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및 시설 이용자들의 고충과 인권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표 2-5-18] 대구인권사무소 2016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구분	일시	대상	장소
1차	4. 14.~15.	지역주민	대구엑스코(정신건강박람회)
2차	6. 11.	지역주민	대구 2.28기념 중앙공원
3차	6. 27.	지역주민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4차	6. 28.	장애인(부모)	경북지방경찰청
5차	8. 16.	청소년	경북 울진 청소년인권캠프
6차	9. 3.	장애인	대구육상진흥센터
7차	10. 15.	지역주민	경북 포항 플라워 광장

대구인권사무소는 2016년 5~9월에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보건시설 30개소에 대하여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진정안내문 미부착 등에 대하여서는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 다.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면전진정은 2016년 총 589건을 접수하고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여 총 550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면전진정 소요일수는 17.5일로 2015년과 비슷하였다.

[표 2-5-19]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일)

구분 연도	전년 이월	신청	종결처리						평균소요 일수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 종결			
누 계		7,495	7,428	1,947	26.2%	1,368	18.7%	4,095	55.1%	
2016	28	589	550	203	36.9%	97	17.6%	250	45.5%	17.5
2015	31	548	551	196	35.6%	126	22.9%	229	41.6%	17.8
2014	42	603	614	244	39.7%	78	12.7%	292	47.6%	18.8
2013	26	696	680	230	33.8%	132	19.4%	318	46.8%	13.6
2012	44	583	601	186	30.9%	103	17.1%	312	51.9%	17.9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7. 7.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대구인권사무소는 2016년 접수된 진정사건 806건 중 804건을 처리하였는데 인용은 44건이었다. 그중 권고 16건, 고발 3건, 합의종결 24건, 조정 1건이며 전체 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는 64일이었다.

2016년 주요 인용 사건은 △△정신병원 입원 환자 배식, 청소, 타환자 간병 등 노동 강요 사건에 대한 권고, ○○교도소 여성수용자 과밀수용에 대한 권고 등이다.

[표 2-5-20]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처리	인 용						미 인 용				
			소계	권고/ 합의 권고	조정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소계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누 계	4,978	4,848	288	109	1	9	-	169	4,560	1,397	3,050	85	12
2016	806	804	44	16	1	3	-	24	760	200	558	2	-
2015	695	695	56	22	-	2	-	32	639	159	473	7	-
2014	665	644	49	6	-	4	-	39	595	122	461	11	1
2013	668	651	62	22	-	-	-	40	589	194	394	1	-
2012	494	508	32	24	-	-	-	8	476	159	312	3	2

※ 처리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누계 2,328건, 2016년 444건임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7. 7.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3. 인권교육·홍보·협력

#### 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질적 향상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의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규모 강당 강의, 방송 강의를 최소화하고 소규모의 참여형 강의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2016년 전체 인권교육은 총 599회, 2만 4,5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1회 교육 평균 인원 40.9명(2015년 51명, 2014년 72명)으로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참가자와 교감하는 인권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주요 인권 주제에 대한 기획교육으로 대구경북 각급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의 경우, 그 대상을 학생에서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총 111회(4,553명)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장애인권 등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표 2-5-21]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전 체		인권특강		오프라인교육(과정)		체험관방문교육	
합 계	2,394	156,814	1,486	131,489	452	15,035	456	12,627
2016	760	24,553	337	18,995	262	5,558	161	2,352
2015	402	20,738	229	11,085	48	2,981	125	6,672
2014	548	39,724	386	35,090	64	2,749	98	1,885
2013	436	36,960	323	33,132	48	2,171	65	1,657
2012	248	34,839	211	33,187	30	1,576	7	61

[표 2-5-22] 대구인권사무소 최근 5년간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교정 /감/경	공무원/ 군인	보호시설 (정신보건 포함)	사회 복지분야 종사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 다문화	노인	기타	합계
누 계	20,455	12,555	12,308	6,448	106,758	8,687	651	1,075	14,325	183,262
2016	4,466	2,417	2,201	489	7,003	4,197	-	254	3,526	24,553
2015	1,058	1,341	1,729	1,796	12,541	1,381	130	150	612	20,738
2014	4,356	3,260	2,515	1,297	24,295	863	40	119	2,979	39,724
2013	5,105	1,933	1,966	1,276	25,285	648	211	150	386	36,960
2012	4,315	2,152	1,621	676	24,499	574	-	45	957	

※ 누계는 사무소 개소일(2007. 7. 1.)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표 2-5-23] 대구인권사무소 2016년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 분	횟 수	인 원
합계	599	24,553
학교	292	8,938
시민	247	8,683
공공	60	6,932

## 나. 인권전문강사양성 및 감수성 향상과정, 의무교육 활성화



대구경북 인권강사양성과정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실력 있는 인권강사를 발굴하기 위해 대구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이주다문화, 장애, 정신장애 등 4개 분야 49명의 인권강사를 양성하였고 2016년에는 발달장애, 사회복지, 영유아 3개 분야의 인권

강사 23명을 양성하였다.

또한 신입경찰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장애인, 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향상과정을 총 44회 운영하여 각 분야에서 인권 실천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상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8년째 시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대구, 포항, 안동, 구미, 영천, 김천, 청도, 청송 등지에서 총 31회, 1,98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총 5회 진행하여 171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 다. 인권체험관 및 방문 프로그램

대구인권사무소는 전국 최초로 폐교를 활용한 ‘체험형 인권학습장’인 ‘인권체험관’을 개관(2013. 7.)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체험관은 각종 전시물과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권체험관 방문 프로그램은 2014년 67회(1,847명), 2015년 124회(1,887명), 2016년 161회(2,360명)로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16년 전시 작품과 도서를 이용한 교육인원은 2,668명이다. 또한 인권체험관 참여 수요가 증가해

초·중등학생에 집중되었던 교육대상이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과 신임 경찰관, 특수교육학생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인권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 라. 온라인 소통 공간 확대 운영

대구인권사무소는 네티즌과 인권 이슈를 나누고 양질의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웹 블로그 ‘사이시옷’(<http://blog.naver.com/humandg>)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 이후 총 1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매년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의 공간으로 대구인권사무소 페이스북([www.facebook.com/nhrcdg](http://www.facebook.com/nhrcdg))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팟캐스트 제작, 온라인 매체 릴레이 기고 등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 마. 지역민과 함께하는 인권기자단, 인권영화 상영회 등 활동

대구인권사무소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인권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권기자단 22명을 선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46건(기사 34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12개)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공동체라디오(성서FM) 정규코너인 ‘산소같은 인권, 톡톡’은 기자단에서

PD, 작가, 취재, 진행을 맡아 월 1회 제작하여 2016년에 88회를 맞았으며, 팟캐스트로 편집하여 인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권필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별별인권이야기 코너를 개설하여 생활 주변의 인권 이슈에 대한 기사를 28건 연재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였다.

영화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시네마수다’ 또한 9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분기 1회 극장을 대관하여 위원회가 제작한 영화 <4등>, <시선사이>를 비롯한 청소년 인권을 다룬 독립영화 <겉기왕> 등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지역민들과 감상하였다.

## 바. 위원회 설립 1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 인권문화프로그램 운영

대구인권사무소는 위원회 설립 1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68주년을 맞아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진행하였다.

홈리스 인권, 언론, 여성 분야 등 대구·경북 지역 주요 관심사와 이슈를 반영하고, 영화, 강의, 공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기념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인권문제를 되돌아보고 각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가 인권옹호자로서 삶 속에서 인권지킴이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주제별 인권 이슈에 대한 토론회 및 인권특강을 개설하여 ‘인권’이란 주제로 지역민과 소통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옹호자 활동의 디딤돌 역할을 꾀하였다.

[표 2-5-24] 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행사

행사명	일시	주요 내용
어린이 도서전시회	11. 1. ~ 12. 10.	어린이 도서 전시회, 독후감 모집
인권영화 상영회	11. 24.	위원회 결정례 동영상, 인권영화 상영
노숙인 인권 토론회	11. 30.	노숙인 인권증진 과제 제안 및 실행 토론회
인권특강	11. 21.	언론과 표현의 자유
	12. 13.	여성과 인권
인권실천가의 날	12. 16.	함께했던 옹호자들과 세계인권 의미 되새기기

##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가. 장애인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회

8기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활동은 총 27명의 모니터링 단원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기관(우체국 32곳, 고용센터 8곳)과 대형 판매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시 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및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2017년 모니터링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권 사무소의 장애차별 조사권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와 발달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역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나. 노인 및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청소년인권지킴이단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은 15명의 단원을 선발하여 18개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 여가복지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 사항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지역의 노인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노인들을 찾아가 설문과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위원회에 대한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노인인권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대구권역 제1기 아동청소년인권지킴이단원 20명을 선발하고 정기모임을 통해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 내 참여권 보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특강 등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다. 인권제도 확산 사업



포항시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6년 12월 대구광역시 인권증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상북도 포함에서는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인권조례 추진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10월 12~15일 조례제정 토론회, 인권영화 상영회 등 인권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 제5절 대전인권사무소

2016년은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해 업무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해로 무엇보다 대전인권사무소에 대한 홍보,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인권교육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인권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진정사건 조사와 인권교육, 인권홍보 활동 및 본부 연계사업,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이다.

대전·충청권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10곳의 교정기관에 7,000여 명의 수용자와, 150개소의 정신보건시설에 8,000여 명의 환자가 있어, 조사관들은 이들의 사건 처리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체계화된 지역 인권교육을 전개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2015년 4월 28일 인권교육센터 개소와 더불어 양질의 인권강사단을 양성하는 한편,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유형별로는 장애, 노숙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대학생,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는 등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에 힘을 쏟았다.

또한 인권단체들과는 일상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보완적 업무 협조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무소 업무 추진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2014년 개소 이후 사무소 개소 소식과 함께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꾸준히 알리고자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권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전인권 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주요 방송사(KBS, MBC 등)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 진정사건 현황 및 대전인권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권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범국민적 인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2016년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대전인권사무소와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 대전시민대학 내 317㎡ 규모의 대전인권체험관을 개관한 것이다.

대전인권체험관은 전시실(218㎡)과 체험공간(99㎡)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벽면 입구에서부터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아동권리, 이주민 인권, 노인 인권, 기업과 인권 등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고, 전시관 내 벽면 모니터를 통하여 인권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꾸몄다. 그 외에도 위원회 결정문, 인권영화, 발간자료 등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와 국제 인권규범 및 인권보호 시스템을 소개하는 포스터 등을 전시하였다. 체험공간에는 인권영화를 관람하거나 각종 인권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다양한 인권 관련 주제 아래 자유로운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양한 인권 정보와 영상체험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어 가볍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어 관람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가.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대전인권사무소의 2016년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10월 15일 개소 이후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2월 말 현재 상담건수 1,966건, 진정 건수 586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충남권역의 경우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공단이 조성되어 이주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기업인권 문제 등 생활 속 인권 관련 의제가 발생하여 상담 및 진정접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표 2-5-25] 대전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합 계	1,144	3,320	227 / 2,303	6,994
2016	586	1,966	153 / 1,722	4,427
2015	478	1,135	68 / 523	2,204
2014	80	219	6 / 58	363

※ 2014년 현황은 사무소 개소일(2014. 10. 15.)부터 2014. 12. 31.까지 집계임

### 나. 인권상담 네트워크 운영 및 인권순회상담

2015년 권역별 인권상담 네트워크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한 인권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6년에는 인권상담에 필요한 법률 기초 이해, 인권담당자의 소진 방지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강, 사례 발표 등을 담은 워크숍 형태의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진행하였다.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충남, 충북, 세종 지역별로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지역의 인권상담 현황 파악, 상담 사례 발표, 상담 단체 간 업무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 현안에 대한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과



인권순회상담 현장 모습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로 총 3회의 순회 상담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분야 인권 상담 시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차별 등의 상담뿐만 아니라 임대차 상담, 채권채무 상담, 소액심판 등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함께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순회상담은 전국지역아동센터 대전지부에서 주최하는 아동인권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였는데, 아동인권축제의 취지와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렛을 이용한 인권퀴즈, 인권나무 열매 맺기, 유엔 아동인권협약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상담을 요청한 초등학생들은 주로 공부에 대한 어려움,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토로했고, 중고생들은 두발 및 복장 규제, 체벌 및 인격권 침해, 자율 학습 강제 등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표 2-5-26] 대전인권사무소 2016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구분	일시	대상(주요분야)	장소
1차	4. 19.	지역주민(장애)	충남 당진체육관
2차	4. 30.	지역주민(일반)	대전시청 광장
3차	10. 29.	지역주민(아동)	대전 서대전공원
4차	11. 4.	지역주민(장애)	충남 태안군민회관

#### 다. 보호시설 진정함 점검

대전인권사무소는 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진정함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대상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수용 정원 및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였고, 정신의료기관은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교정시설은 청주교도소 등 9개 교도소와 국립법무병원, 청주외국인보호 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보호시설이 위원회 진정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시설 수용자들에게 위원회 및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하도록 조치하였다.

##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2016년 대전인권사무소는 총 866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895건을 처리하였다. 처리 현황을 보면 보호시설 사건이 399건(44.6%), 구금시설 사건이 310건(34.6%), 기타 국가기관 78건(8.7%), 지방자치단체 사건이 28건(3.1%), 각급학교 사건이 24건(2.7%), 공직유관단체 사건이 21건(2.3%), 사인 및 사법인 사건이 21건(2.3%), 기타 14건(1.6%) 순으로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다.

지역 인권사무소의 경우 보호시설과 구금시설 사건이 주를 이룬다.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 수는 총 49건(권고 17건, 징계 2건, 고발 및 수사의회 3건, 합의 종결 27건)으로 대부분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정신보건시설 관련 사건이며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정신보건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외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였다.

2016년 진정사건 중 주요 권고 사례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공익제보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민원 내용을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한 사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 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보낸 사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권한 없이 민원이 제기된 택시운전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택시회사 또는 개인택시

조합에서 확인한 후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건, △권한 없는 자가 보호의무자를 대리하여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근거로 환자를 입원시킨 사건, △정신보건시설의 직원이 보호의무자의 성명을 대리 서명한 사건 등이 있다.

[표 2-5-27] 대전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연도별	전년 이월	신청	종결처리						평균소요 일수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 종결	진정종결			
합 계		695	657	216	28.2%	144	24.1%	297	45.2%	
2016	25	315	296	119	40.2%	48	16.2%	129	43.6%	31.4
2015	25	290	296	85	28.7%	75	25.3%	136	46.0%	21.0
2014		90	65	12	18.5%	21	32.3%	32	49.2%	19.6

※ 2014년 현황은 사무소 개소일(2014. 10. 15.)부터 2014. 12. 31.까지 합계임

[표 2-5-28] 대전인권사무소 최근 3년간 유형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인 용						미 인 용				
			소계	권고/ 합의 권고	징계 권고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소계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합 계	1,691	1,481	84	27	2	5	-	50	1,397	412	966	19	-
2016	866	895	49	17	2	3	-	27	846	284	546	16	-
2015	683	554	35	10	-	2	-	23	519	128	388	3	-
2014	142	32	-	-	-	-	-	-	32	-	32	-	-

※ 처리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합계 760건, 2016년 432건임

※ 2014년 현황은 사무소 개소일(2014. 10. 15.)부터 2014. 12. 31.까지 합계임

### 3. 인권교육·홍보·협력

#### 가. 인권교육

대전인권사무소는 2016년 한 해 동안, 법정 의무교육인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24회, 879명), 4개 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12회, 368명), 학교 관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6회, 249명), 인권특강(124회, 11,273명),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실(155회, 7,402명),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체험관 방문 교육프로그램(30회, 417명) 등 총 351회 2만 58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5-29] 대전인권사무소 2016년 유형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명)

구 분	인권특강	양성과정	의무교육	방문교육	기 타	합 계
횟 수	124	12	24	30	161	351
인 원	11,273	368	879	417	7,651	20,588

특히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충남·북, 세종교육청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물론 담당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나. 홍보·협력

### 1)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 인권문화 행사



인권공감 토크콘서트

대전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68주년을 맞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자 아름다운 가치인 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고자 2015년에 이어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대전광역시와 공동 주최로 대전·충청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공감 토크콘서트, 인권작품 전시회, 인권영화 상영, 인권도서 전시회, 인권체험 부스(노인생애 체험, 다문화 체험, 발달장애인 이해 및 공감), 아동인권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인권영화는 <4등>, <자백>, <시선사이> 등을 상영하여 인권감수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인권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참석한 주민과 함께 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에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 2) 다양한 홍보활동

대전인권사무소는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 알리고자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인권 홍보 콘텐츠, SNS, 충청인권누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인권 현안 취재, 인권옹호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인권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인권기자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6년 3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2기 인권기자단을 모집해 총 25명을 선발하였다. 3월 19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제2기 기자단은 12월 말까지 총 113건의 인권 기사를 작성해 블로그 등에 게재하였다. 또한 대전시민 NGO 한마당 잔치에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관공서, 도서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인권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그 외도 <인권> 잡지를 배포, 대전 지하철 내 위원회 홍보 방송 등 위원회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다.

### 3) 단체 협력활동



대전광역시의 업무협약(MOU) 체결

대전인권사무소는 2월 23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대전·충청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과 대전인권체험관 설치에 필요한 공간 제공, 대전시민대학 내 인권교육과정 개설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4월 22일에는 (사)노근리국제평화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인권현장 체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및 인권교육과정 개설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6월 30일에는 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은 지역 인권의식 향상에 관한 상호협력 및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대전충남인권연대 등 10개 단체), 대전비정규직지원센터 인권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협약, 여성 인권단체 주최 일본군 위안부와 젠더 정의 토론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동아리 간담회, 대전충남 양심수 후원사업 협력(양심과인권나무), (사)여성인권팀움 자활작품 전시회, 찾아가는 해변영화제(시민인권센터) 등 다양한 단체와 교류 협력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인권정책협의체 구성, 권역별 인권상담네트워크 구축, 인권문화사업 평가회 개최, 2017년 업무계획 수립 의견수렴 인권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사업을 충청권역 단체 및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 지역의 인권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권역별 주요 이슈가 된 청양 강정리 폐석면 광산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6.25전쟁 시기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당진화력 발전소 사망 은폐사건, 촛불집회 참여 학생 사찰사건, 초등학교 급식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인권옹호자들이 대응한 방식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4. 장애인·노인·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 가. 장애인 인권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활동

대전인권사무소는 2016년 4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을 선발해 대전·충남·충북·세종 소재 공공기관(우체국, 고용센터), 대형판매시설(백화점, 대형마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난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안전권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였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피모니터링 기관에 공유하여 자체 개선 계획을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 신장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2016년 4월 7일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전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방안과 지역 내 장애인차별에 관한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나. 노인 인권



노인인권 모니터링 과제설명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인의 선호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권역 제8기 노인 인권지킴이단을 선발(15명)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20여 곳, 135명을 대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을 3개월간 실시하였다.(2016. 7.~9.) 노인여가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 사항을 물어본 결과 고령자에 알맞은

## 다.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청소년 모니터링단 캠페인 활동

YMCA 등 10여 개 단체와 함께 6차에 걸친 인권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는 지역(서울, 전북 등)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대전 지역 청소년의 인권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전시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전달하였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제1기 대전권역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23명을 선발하여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인권 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전 충남인권연대, 양심과 인권나무, 대전

## 라. 인권조례 제정 지원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와 더불어 2016년 관할 지역 내 인권제도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협력, 지원으로 충청권은 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자치단체 9곳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사무소는 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4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도록 지원하였고, 이에 각 광역자치단체 내 인권증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 부 록

- 1 |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 2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3 | 2016년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 4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 5 | 2016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 6 | 2016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7 | 위원회 간행물
- 8 | 보도자료
- 9 | 위원회 소관 법규
- 10 | 사진으로 보는 2016년
- 11 | 위원회 활동일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6

#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2016. 12. 31. 기준)

## 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 ■ 인권위원

성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b>이 성 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회 사법시험 합격</li> <li>• 대법원 재판연구관</li> <li>• 대전지법 천안지원 지원장</li> <li>•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li> <li>• 특허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li> <li>•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li> <li>•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법원장</li> <li>• 서울특별사건거판리위원회 위원장</li> <l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2016~)</li> </ul>	대통령 지명 (2015. 8. 13.~ 2018. 8. 12.)
 상임위원 <b>이 경 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부회장, 상임대표, 공동대표</li> <li>•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기획위원장, 상임대표, 공동대표</li> <li>• 언론중재위원회 위원</li> <li>• 방송위원회 위원</li> <li>• 열린우리당 탈성매매여성지원단장, 육아지원정책기획단장</li> <li>• 대통합민주신당 제6정책조정위원장</li> <li>• 제17대 국회의원(문화관광위, 교육위)</li> </ul>	국회 선출 (2015. 3. 16.~ 2018. 3. 15.)
 상임위원 <b>정 상 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9회 사법시험 합격</li> <li>•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li> <li>•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li> <li>• 청주지검 차장검사</li> <li>• 수원지검 1차장검사</li> <li>•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li> <li>• 법무연수원 연구위원</li> <li>•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li> </ul>	국회 선출 (2016. 3. 22.~ 2019. 3. 21.)
 상임위원 <b>최 혜 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법원 판사</li> <li>• 서울가정법원 판사</li> <li>•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li> <li>• 정부법무공단 변호사</li> <li>•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li> <li>•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li> <l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li> <li>•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li> </ul>	대통령 지명 (2016. 11. 28.~ 2019. 11. 27.)

부  
속

성명	주요경력	비고
 인권위원 윤남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li> <li>•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li> <li>•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li> <li>•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li> <li>• 법조윤리협의회 위원</li> <li>•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li> <li>•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li> </ul>	대법원장 지명 (2011. 1. 19.~ 2017. 1. 18.) * 2014. 1. 19. 연임
 인권위원 한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마산지법 판사</li> <li>•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li> <li>•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li> <li>•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li> <li>• 한국언론법학회 제5대 회장</li> <li>•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li> <li>•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li> <li>•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li> </ul>	대법원장 지명 (2012. 8. 10.~ 2018. 8. 9.) * 2015. 8. 10. 연임
 인권위원 이선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li> <li>•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li> <li>• 헌법실무연구회 회원</li> <li>• 법률신문 편집위원</li> <li>•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li> <li>•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li> <li>• 법무법인(유) 화우 구성원 변호사</li> </ul>	대법원장 지명 (2014. 1. 19.~ 2017. 1. 18.)
 인권위원 최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군 군목</li> <li>•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산광림교회, 왕십리교회 담임목사</li> <li>•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li> <li>•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상임단장</li> <li>•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li> <li>•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li> </ul>	대통령 지명 (2014. 11. 3.~ 2017. 11. 2.)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b>인권위원 이 은 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판사</li> <li>• 사법연수원 외래교수</li> <li>•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li> <li>•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li> <l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감사</li> <li>• 언론중재위원회 위원</li> <li>•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 선출 (2015. 2. 5.~ 2018. 2. 4.)</p>
 <b>인권위원 장 애 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국대학교 불교대 학장 및 대학원장</li> <li>•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장</li> <li>•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li> <li>• 동국대학 불교대학 교수</li> <li>• 대한불교조계종 원교사 주지</li> <li>•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이사</li> <li>•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li> <li>• 일본인도학불교학회 평의원</li> <li>• 대한불교조계종 중회의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 지명 (2016. 6. 16.~ 2019. 6. 15.)</p>
 <b>인권위원 김 기 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li> <li>•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li> <li>•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li> <li>•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li> <li>•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국회 선출 (2016. 9. 23.~ 2019. 9. 22.)</p>

## ■ 역대 위원장

성 명	주 요 경 력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li> <li>• 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li> <li>•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li> <li>• 참여연대 공동대표</li> <li>•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li> </ul>	2001. 11. 25. ~ 2004. 12. 23.
 제2대 위원장 최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li> <li>•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li> <li>•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li> <li>•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li> <li>• 참여연대 공동대표</li> </ul>	2004. 12. 24. ~ 2005. 3. 22.
 제3대 위원장 조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li> <li>•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li> <li>•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li> <li>•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충군법원 판사</li> <li>•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li> </ul>	2005. 4. 4. ~ 2006. 10. 1.
 제4대 위원장 안경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li> <li>•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li> <li>• 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li> <li>•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li> <li>•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li> </ul>	2006. 10. 30. ~ 2009. 7. 5.
 제5~6대 위원장 현병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li> <li>• 한양대학교교사무처장</li> <li>• 한국법학교수회사무총장 겸 부회장</li> <li>•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li> <li>•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li> <li>•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li> </ul>	2009. 7. 17.~ 2015. 8. 12. * 2012. 8. 13. 연임

## ■ 역대 위원

구분 / 성명	주요 경력	재임 기간
상임위원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2001. 11. 25. ~ 2004. 12. 23.
상임위원 유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7. 20.
상임위원 유시춘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2001. 11. 25. ~ 2004. 3. 12.
인권위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1. 11. 25. ~ 2003. 2. 23.
인권위원 김덕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1. 11. 25. ~ 2005. 3. 14.
인권위원 김오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01. 11. 25. ~ 2002. 11. 29.
인권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조미경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2001. 11. 25. ~ 2004. 12. 23.
인권위원 류국현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2002. 12. 12. ~ 2003. 2. 23.
인권위원 이흥록	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2003. 5. 1. ~ 2005. 4. 18.
인권위원 김만홍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2003. 8. 1. ~ 2006. 10. 24.
상임위원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04. 7. 23. ~ 2007. 9. 20.
상임위원 김호준	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	2004. 12. 24. ~ 2008. 2. 3.
상임위원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나천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 12. 24. ~ 2006. 6. 28.
인권위원 이해학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2004. 12. 24. ~ 2006. 12. 31.
인권위원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4. 12. 24. ~ 2007. 12. 23.
인권위원 신혜수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05. 3. 15. ~ 2008. 3. 19.
인권위원 원형은	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2005. 6. 1. ~ 2008. 9. 9.
인권위원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6. 8. 10. ~ 2012. 8. 9.
인권위원 윤기원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2006. 10. 25. ~ 2009. 12. 28.
인권위원 정재근	조계종 금선사 주지	2007. 2. 8. ~ 2010. 2. 7.
상임위원 최금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2007. 9. 21. ~ 2010. 10. 10.
상임위원 유남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2007. 12. 24. ~ 2010. 11. 4.
인권위원 조 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 12. 24. ~ 2010. 11. 15.
인권위원 황덕남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7. 12. 24. ~ 2011. 1. 18.
상임위원 문경란	중앙일보 논설위원	2008. 2. 4. ~ 2010. 11. 4.
인권위원 최은희	건국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08. 9. 4. ~ 2012. 1. 2.
인권위원 김양원	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이사	2008. 9. 10. ~ 2011. 9. 27.

구분 / 성명	주요 경력	재임 기간
인권위원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 변호사	2009. 12. 29. ~ 2012. 6. 27.
인권위원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2010. 2. 8. ~ 2016. 6. 15.
상임위원 장향숙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2010. 10. 11. ~ 2012. 1. 12.
상임위원 김영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0. 11. 15. ~ 2016. 11. 27.
인권위원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 1. 19. ~ 2014. 1. 18.
상임위원 홍진표	(사)시대정신 이사	2011. 2. 21. ~ 2014. 3. 6.
인권위원 김성영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2011. 9. 28. ~ 2014. 11. 2.
인권위원 객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2012. 1. 3. ~ 2015. 2. 4.
상임위원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12. 3. 8. ~ 2015. 3. 15.
인권위원 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2012. 8. 13. ~ 2016. 9. 22.
상임위원 유영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14. 3. 7. ~ 2016. 1. 12.

### ■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사무총장 안석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li> <li>• 인권위 예산행정운영과장</li> <li>• 인권위 침해조사과장</li> <li>• 인권위 운영지원담당관</li> <li>• 인권위 정책교육국장</li> <li>• 인권위 기획조정관</li> </ul>	 기획조정관 이석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 이주인권팀장</li> <li>• 인권위 비서실장</li> <li>• 인권위 인권정책과장</li> <li>•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li> </ul>
 정책교육국장 심상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li> <li>• 인권위 총무과장</li> <li>• 인권위 정책총괄팀장</li> <li>• 인권위 혁신인사팀장</li> <li>• 인권위 조사총괄과장</li> <li>• 인권위 조사국장</li> </ul>	 조사국장 김성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위 법무감사담당관</li> <li>• 인권위 정책총괄팀장</li> <li>• 인권위 침해조사과장</li> <li>• 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장</li> <li>• 인권위 기획조정관</li> </ul>

## 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 ■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주요경력
송상현 (위원장)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재판관
강경근	송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곽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전 인권위원
권태면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김상우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JTBC 보도제작국 부국장
김석우	前 통일원 차관
김왕식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교육과 교수
김유니스	前 하나금융그룹 부사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생	前 병무청장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전 인권위원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영심	유엔세계관광기구(UNTWO) 이사장
라종일	前 우석대학교 총장(9대)
문병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벤처미디어 대표이사
문정숙	前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박성원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박영아	前 국회의원(제18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재욱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장 겸 디자인경영센터장
박종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영	前 국악방송 사장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춘택	前 제25대 공군참모총장
배일성	前 육군 군수 사령관
서병진 (성운스님)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석좌교수
신혜수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위원회 위원, 전 인권위원
오혜정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무국장
유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공현	원불교 교무
이동익	신부, 前 가톨릭중앙의료원장(27대)

성명	주요경력
이복실	前 여성가족부 차관
이승한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이양희	前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영세	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이우근	법무법인 총정 고문변호사
이재교	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 (사)시대정신 대표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현청	前 상명대학교 총장(8대),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인요한 (John Linton)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임정근	前 가천대학교 음악대학장,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성악전공 명예교수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장명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인권위원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창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유엔 세계연맹 부회장
조한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이사 및 정책분과 위원장
최혁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
하정열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허은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
홍성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전문위원회

### 1) 사회권전문위원 (위원장 : 윤남근 인권위원)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사 회 권 반	구 혜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김 제 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헌 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 근 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선 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 동 권	강 성 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 광 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 귀 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지 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희 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 갑 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회보장권	김 미 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문 진 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 거 권	홍 인 옥	한국도시사회연구소 소장
건 강 권	임 준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형 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 육 권	김 대 유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문 화 권	김 남 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혜 진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교수

## 2) 인권교육전문위원 (위원장 : 정상환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강진령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윤재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구정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창범	인터넷 법학회 부회장
김성학	Eduway 대표	이필우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연욱	한양사이버대학 교육공학과 교수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전영주	신라대학교 가족노인복지학과 교수
노기호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수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지원센터 소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

## 3) 국제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라종일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이영애	前 국회의원, 춘천지방법원장
박경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변호사	조창범	유엔협회세계연맹 부회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최석영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자문위원
신혜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4) 자유권제1전문위원 (위원장 : 정상환 상임위원)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육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경용	법무법인 LKB.&Partner 변호사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수연	법률사무소 가인 변호사	정문식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희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관호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우진	예비역 중령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황윤상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

## 5) 자유권제2전문위원 (위원장 : 최혜리 상임위원)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교 정 분 과	강 희 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임상조교수
	권 수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신 권 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옥 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 름	이림·김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동인권 분 과	권 건 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명 주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김 수 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진 호	부천실업고등학교 교감
	김 형 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 귀 남	한양초등학교 교무부장
	안 동 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호 균	아동행복포럼 교문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소 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황 옥 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6) 차별시정전문위원 (위원장 : 이경숙 상임위원)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강 동 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화 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강 을 영	법무법인 참 변호사 (노사분야)	장 윤 경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성희롱분야)
김 엘 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 상 우	인하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종교분야)
김 용 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 형 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박 수 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상 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사분야)
이 상 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숙 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 정 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 갑 선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이 준 일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

### 7) 장애인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이경숙 상임위원)

분 야	성 명	주 요 경 력
장 애 차 별	김 기 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 정 열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
	박 속 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유 동 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 철 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원 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 애 시 설	김 경 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귀 자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관장
	김 명 연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 정 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마 명 원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서 정 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동 석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정 신 장 애	문 용 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홍 선 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 진 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전문의
	이 소 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
	신 권 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 지 훈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 조정위원회

### 1) 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희은	(사)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채근직	변호사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최경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 2) 성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

### 3) 장애차별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강영심	부산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

### 4) 인권침해조정위원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이림	이림·김태환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형규	한양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환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의결사항	심의사항	보고사항
전원위원회	16	50	28	-	22
상임위원회	37	101	55	19	27
계	53	151	83	19	49

#### \* 전원위원회

- 11명으로 구성(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전원위원회 회차별 안건목록 〉

회 차	의 안 명	비 고
2016-0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2016-02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의결
2016-02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6-02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의결
2016-03	2015년 진정, 상담, 민원/안내 현황 보고	보고
2016-03	2015년 법령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보고
2016-03	2015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보고
2016-03	201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
2016-04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관련 행사 취소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보고
2016-04	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의결
2016-05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2016-05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수정권고 사항 권고수용 보고	보고
2016-05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일괄정비의 건	의결
2016-05	북한인권법 제정 영향 및 대응 방향	보고
2016-06	조정제도 활성화 추진 현황 보고	보고
2016-06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계획안 보고	보고

회 차	의 안 명	비 고
2016-07	병동 내 휴대폰 사용 등 제한	보고
2016-07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15-직권-0000900)	의결
2016-07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15-직권-0001300)	의결
2016-07	2017년 예산안 요구	의결
2016-07	노인요양시설의 외출 외박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보고
2016-07	노인인권 관련 사업 진행경과 보고	보고
2016-08	2016년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개최 결과보고	보고
2016-08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15-직권-0001300)[재상정]	의결
2016-08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의결
2016-09	재판중인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권고	의결
2016-09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6-10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의 건	의결
2016-10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의 건	의결
2016-10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 18차, 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11	2016년 상반기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	보고
2016-11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의결
2016-11	2016년 상반기 법령·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	보고
2016-11	2016년 상반기 진정·상담·민원/안내 현황 보고	보고
2016-11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의결
2016-12	미인가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의결
2016-12	병적증명의 병력 유출로 인한 채용차별	의결
2016-13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추진경과 및 검토보고	보고
2016-13	2017년 예산(안) 및 소요정원 경과보고	보고
2016-14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수용 보고	보고
2016-14	지방자치단체의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결
2016-14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6-14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일부 수용 및 북한인권법 시행 상황 보고	보고
2016-15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6-15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6-15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따른 인권침해	의결
2016-16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	의결
2016-16	권고불수용보고-집회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보고
2016-16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보고
2016-16	2017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의결

## \*\* 상임위원회

- 4명으로 구성(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상임위원회 회차별 안건목록 〉

회 차	의 안 명	구 분
2016-01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 연장 심의의 건	심의
2016-01	2016년 상반기 ICC 승인소위 심사관련 위원회 답변서(안) 보고	보고
2016-01	2016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채택의 건	의결
2016-02	201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의
2016-03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16-04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용역 계획 보고	보고
2016-04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16-04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16-04	2016년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16-04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건 처리절차 검토보고	의결
2016-05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보고	보고
2016-05	2016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보고
2016-05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보고
2016-05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보고
2016-05	북한인권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보고
2016-05	2015년 연간보고서(안) 보고	보고
2016-05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06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일괄정비 심의의 건	심의
2016-0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 건	심의
2016-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6 모니터링 사업 운영 계획(안) 보고	보고
2016-07	2016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	보고
2016-08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 예방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 일부수용 보고	보고

회 차	의 안 명	구 분
2016-08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수용보고	보고
2016-09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의 건	보고
2016-0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 건	의결
2016-0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0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위한 정책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10	국가인권위원회-동국대학교 인권교육 연구중심 대학 지정 업무협약(MOU) 체결 검토보고	의결
2016-10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의결
2016-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의 건	의결
2016-11	2017년 실태조사 관련 예산요구서(안)	심의
2016-11	2017년 예산요구서(안) 심의의 건	심의
2016-1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위한 정책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12	국가인권위원회-대전광역시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안)	의결
2016-12	국가인권위원회·AFT간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결
2016-12	「정신보건법」 개정 동향 보고	보고
2016-13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14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14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의 건	심의
2016-15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의 건	의결
2016-15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안)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권고의 건	의결
2016-1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2016-16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부산광역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결
2016-17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16-17	공공사업에서 주민의 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절차참여권 보호 권고수용 보고	보고
2016-18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채상정)	의결
2016-18	「인신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18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의 건	의결
2016-19	기업과 인권 NAP 권고의 건	심의

회 차	의 안 명	구 분
2016-19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18,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심의의 건	심의
2016-19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의 건	심의
2016-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16-21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16-21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의 건	심의
2016-2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보고	의결
2016-22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수용보고	보고
2016-23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16-23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23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24	국가인권위원회-전라북도 간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의결
2016-25	중소기업 인권경영 역량강화방안 권고의 건(재상정)	의결
2016-25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보고
2016-25	회화지도(E-2)비자소지외국인의 HIV/AIDS 검사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의 건	의결
2016-26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27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의결
2016-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28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2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 개선(안)	의결
2016-2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 권고 수용 보고	보고
2016-28	노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수용 보고	보고
2016-2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의결
2016-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	의결
2016-30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재상정	의결
2016-31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심의의 건	심의
2016-31	「국가인권위원회화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2016-32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회 차	의 안 명	구 분
2016-32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의 건	의결
2016-32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심의의 건(재상정)	심의
2016-33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33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안)	의결
2016-33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33	2016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보고
2016-3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일부수용 보고	보고
2016-33	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의 건	심의
2016-3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보고	의결
2016-34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3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2016-34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표명에 대한 회신보고	보고
2016-34	축사노예사건 대응방안에 대한 추진 결과 보고	보고
2016-35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의 건	의결
2016-35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36	2016년 보상금 지급계획(안)	의결
2016-36	2017년 위원회 업무계획(안)	심의
2016-36	2016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심의의 건	심의
2016-3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검토보고((재)한배평화재단)	의결
2016-3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의 건	의결
2016-37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의 건	의결
2016-37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안) 심의의 건	심의
2016-37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 관련 상임위 권고 일부 수용 보고	보고

## 나. 소위원회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의결사항	보고사항
침해구제제1위원회	11	925	785	140
침해구제제2위원회	11	1,302	1,178	124
아동권리위원회	7	131	93	38
차별시정위원회	11	348	288	6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13	1,730	1,141	589
계	53	4,436	3,485	951

\*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포함 3~5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1~2회 개최되고,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

## 다. 조정위원회

접수	합계 (①+②+③)	처 리 건 수				
		조정성립 ①	조정불성립 ②	조정갈음결정		각하 ③
				성립	이의신청	
38	30	18	4	(2)	(1)	8

\* 조정갈음결정의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또는 불성립에 포함

\*\* 분야 : 차별조정위원회(성장애를 제외한 차별 분야), 성차별조정위원회(성차별 분야), 장애차별조정위원회(장애차별 분야), 인권침해조정위원회(인권침해 분야)

\*\*\* 조정의 효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조정과 제42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기 인권 NAP 및 기업과 인권 NAP 권고 주요 내용</li> <l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심사 결과</li> <li>• 위원회 직제 개정사항</li> <li>• 2017년 위원회 업무계획(안)</li> <li>•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사항 보고</li> <li>• 2016년 위원회 업무계획</li> </ul>

\* 구성 : 50명(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북한인권 등 다양한 분야)

## 마.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관한 협의</li> <li>•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관한 협의</li> </ul>

\* 구성 : 106명(중앙행정기관 44명, 지방자치단체 17명, 교육청 17명, 민간위원 28명)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정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도 회의 소집 가능

## 바. 전문위원회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사회권전문위원회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의 주요 쟁점 논의</li> </ul>
인권교육전문위원회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도 인권교육 주요 업무 보고</li> <li>• 인권교육포털구축사업 경과보고</li> <li>• 2017년도 인권교육 주요 사업 보고</li> <li>• 인권교육전문위원회 운영방식</li> </ul>
국제인권전문위원회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사업 종합계획 보고</li> <li>•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 보고</li> <li>• 노인인권 관련 사업 진행경과 보고</li> <li>• GANHRI 승인소위 심사 결과 보고</li> <li>• 위원회 노인인권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li> <li>•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관련 출장(안)</li> <li>• 위원회 노인인권 사업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li> <li>• 유엔고령화실무그룹 및 북한인권 관련 출장(안)</li> </ul>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의 판결서 등본(약식명령) 송달 내용의 사생활 침해</li> <li>• 검사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일방적 구속 장소 변경</li> <li>•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소환</li> <li>• 대검찰청의 언론 보도로 인한 인권침해</li> <li>• 수사기관 영상녹화제 운영 실태 파악과 개선을 위한 방문조사(안)</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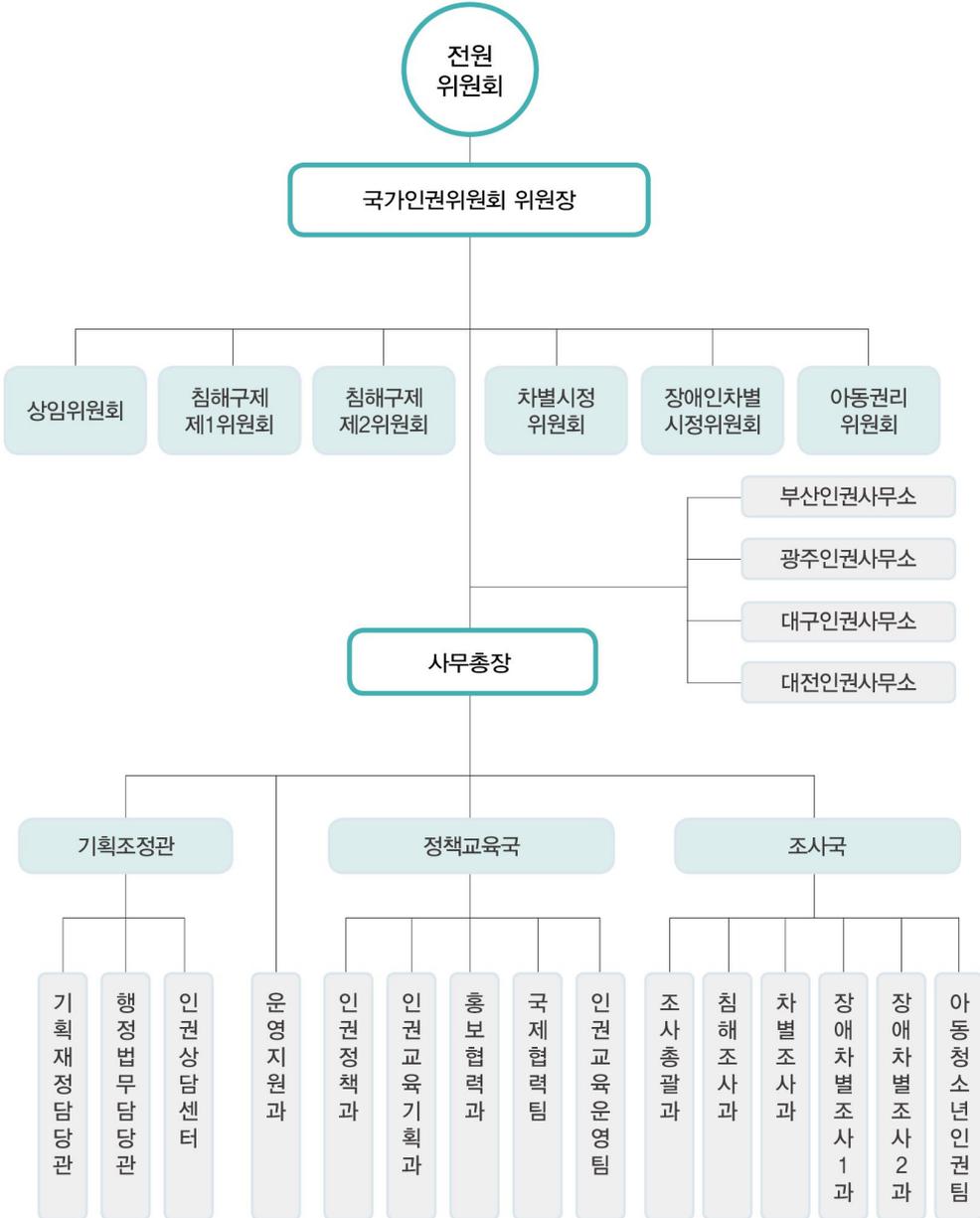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자유권 제2전문위원회	교정분과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 관련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현황 보고</li> <li>• 보호장비, 조사수용, 진정실, 3진 아웃제 등 수용자 인권 관련 주요 현안</li> <li>• 교정시설 방문조사(조사항목, 조사방법·일정)</li> </ul>
	아동인권분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관련 위원회의 대응방안 보고 및 논의</li> <li>•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의견제시</li> </ul>
차별시정전문위원회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거부는 비정규직 차별</li> <li>• 승무원 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li> <li>• 지입차주에 대한 차별</li> <li>• 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li> </ul>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병원의 노동 및 작업치료 시 허용되는 작업의 내용 및 범위 검토</li> <li>• 응급이송단의 환자이송에 따른 인권침해 검토</li> </ul>

### 3. 2016년 조직·예산·주요 사업 통계

#### 가.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 3인, 인권위원 7인 총 11인
  -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임기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사무처 : 사무총장, 1관 2국 12과(담당관) 3팀 4소속기관
  - 정원 : 189명(2016. 12. 31. 기준)

## 나. 위원회 기구 도표



## 다. 2016년도 예산

### 1) 경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증 감(%)
계	26,926	28,176	1,250 (4.6%)
인 건 비	12,816	13,667	851 (6.6%)
기 본 경 비	7,593	7,608	15 (0.2%)
주 요 사 업 비	6,517	6,901	384 (5.9%)

### 2)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6년도 예산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16
	① 인권의식 향상	362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100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454
인권교육 활성화		1,478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47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536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81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980
	⑦ 장애인 인권증진	375
인권제도 선진화		1,051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17
	⑨ 북한인권 개선	334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808
	⑩ 국제교류협력	684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124
인권위 정보화		1,112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112

## 라. 2016년도 결산

### 1)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비 고
총 계	21	152.8	152.8	-	-	-
기타 경상이전수입	10	146.6	146.6	-	-	퇴직후 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기타 잡수입	10	0.1	0.1	-	-	인권자료실 복사수수료 등
위약금	-	6.0	6.0	-	-	계약 지체상금 등
기타 재산수입	1	0.1	0.1	-	-	통장 이자 등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전년이월포함)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28,325	26,936	140	1,249	
인 건 비	13,667	12,827	-	840	
기 본 경 비	7,757	7,460	140	157	
주 요 사 업 비	6,901	6,649	-	252	
일반 · 지방 행정 분야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16	893	-	23
	① 인권의식향상	362	353	-	9
	②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100	100	-	-
	③ 지역인권문화 확산	454	440	-	14
	인권교육 활성화	1,478	1,432	-	46
	④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478	1,432	-	46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536	1,463	-	73
	⑤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81	174	-	7
	⑥ 취약분야 인권개선	980	926	-	54
	⑦ 장애인 인권증진	375	363	-	12
	인권제도 선진화	1,051	969	-	82
	⑧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717	650	-	67
	⑨ 북한인권 개선	334	319	-	15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808	798	-	10
	⑩ 국제교류 협력	684	675	-	9
⑪ 인권단체 공동협력	124	123	-	1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1,112	1,095	-	17	
⑫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12	1,095	-	17	

※ 예산현액은 2016년 예산액(28,176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149백만원)을 반영

## 마. 상담, 정책권고, 진정사건, 교육 관련 통계 현황

### 1) 연도별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누 계	110,565	300,268	382,582	793,415
2016	10,636	31,608	38,020	80,264
2015	10,695	32,030	37,961	80,686
2014	10,923	34,547	36,623	82,093
2013	10,056	35,508	36,670	82,234
2012	9,582	29,267	30,943	69,792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상담은 면진진정 상담종결 건수 포함)

### 2)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연 도	합 계	정책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누 계	646	304	319	23
2016	72	44	26	2
2015	36	12	23	1
2014	46	27	18	1
2013	43	27	16	-
2012	42	24	18	-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3) 2016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인용							미인용			조사 중지	
			소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각하	이송		기각
합계	10,636	10,853	447	21	11	-	238	158	1	18	7,126	95	3,165	20
침해	8,167	8,412	330	19	7	-	172	122	1	9	5,424	82	2,556	20
차별	2,432	2,407	117	2	4	-	66	36	-	9	1,669	12	609	-
기타	37	34	-	-	-	-	-	-	-	-	33	1	-	-

※ 각하 중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건수는 4,902건임

### 4)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계		연수과정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누계	16,608	1,239,098	2,560	116,093	1,656	42,447	2,005	263,753	10,387	816,805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2013년	1,834	168,580	245	11,382	159	4,588	150	39,654	1,280	112,956
2012년	1,300	124,937	214	10,456	119	2,204	109	21,550	858	90,727

※ 누계는 위원회 설립일(2001. 11. 25)부터 2016. 12. 31.까지 합계임

## 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명** ▶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4대 전략 목표	성과 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5. 인권평가제도 도입
II.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1. 아동·청소년·노인 인권 증진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1. 지역주민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 전국적 확산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기능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IV.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b>&lt;특별사업&gt;</b>	1. 북한인권 개선
<b>&lt;기획사업&gt;</b>	1.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추진 기반 (인권위 역량강화)	1. 위원회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 5. 2016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 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 ■ 정책권고

연번	권고명	의결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여부
1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1. 27.	국방부장관 국군교도소장	수용
2	2015년 정신의료기관 부당입원 등 방문조사 결과보고	2. 17.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등 6개 지자체 ○○병원 등 6개 병원	수용
3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개선정책권고	2. 17.	보건복지부장관	수용
4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2. 25.	기획재정부장관	수용
5	2015년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4. 12.	법무부장관	일부수용
6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에 따른 피치료 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 인권증진 개선 권고	4. 12.	법무부장관	일부수용
7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 인권보호 지침 마련 권고	4. 12.	행정자치부장관	수용
8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권고	5. 12.	고용노동부장관	일부수용
9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5. 24.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일부수용
10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권고	6. 9.	고용노동부장관	일부수용
11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관련 정책권고	6. 13.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시장 ○○○○(7개)시장	검토중
1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활용권고	6. 20.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검토중

연번	권고명	의결 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13	노인 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6. 20.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14	재판중인 병역 기피자에 대한 해직권고에 의한 인권침해 제도개선 권고	6. 27.	국방부장관	검토중
15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7. 7.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검토중
16	북한이탈주민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7. 7.	통일부장관	수용
17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7. 25.	정부(주무부처:법무부장관)	검토중
18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7. 25.	정부(주무부처:법무부장관)	검토중
19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7. 28.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20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	8. 4.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21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8. 22.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회장	검토중
22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 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에 따른 응시자의 인격권 침해 등	8. 24.	행정자치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토중
23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	8. 25.	법무부장관	일부수용
24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8. 25.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25	2016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 따른 휴대폰 사용제한 관행 개선 권고	8. 29.	○○병원장 △△병원장 ○○시장 △△시장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26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9. 8.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검토중
27	병적증명의 병력 유출로 인한 채용차별	9. 12.	병무청장	검토중

연번	권 고 명	의결 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28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시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	9. 21.	○○○○교육원장	검토중
29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10. 6.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30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인권상황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10. 21.	보건복지부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검토중
31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11. 4.	교육부장관 182개 대학총장	검토중
32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	11. 10.	고용노동부장관 국회의장	검토중
33	2016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정책권고	11. 17.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 ○○시장	검토중
34	민사집행과정에서 아동보호지침 마련 정책권고	11. 17.	법원행정처장	검토중
35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권고	11. 24.	여성가족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검토중
36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11. 24.	국민안전처장관	검토중
37	「청탁금지법령」의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에 따른 인권침해	11. 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검토중
38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12. 1.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39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	12. 5.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40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12. 5.	고용노동부장관	검토중
41	2016 교정시설 방문조사	12. 23.	법무부장관	검토중
42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12. 27.	고용노동부장관	검토중
43	2016년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12. 27.	경찰청장	검토중
44	민간응급이송업체의 강제이송 등	12. 28.	보건복지부장관	검토중

## ■ 의견표명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외국인 비정규직을 이유로 보험 비가입에 대한 의견표명	3. 2.	고용노동부장관
2	안심알리미서비스 사업의 인권침해 여부 검토요청에 대한 의견표명	3. 10.	부산광역시 ○○군수
3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4. 12.	법무부장관
4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4. 29.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표명	4. 29.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	5. 12.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5. 12.	보건복지부장관
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5. 25.	○○일보 사장
9	교환(파견)근무 각서 작성에 대한 의견표명	5. 25.	○○○○교육감
10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6. 2.	통일부장관
1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7. 7.	법무부장관
12	특정학교 합격 후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7. 8.	전국 각 시·도 교육감
1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7. 25.	외교부장관
14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8. 25.	고용노동부
15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8. 30.	경찰청장 검찰총장
16	검찰의 참고인에 대한 강압수사로 인한 자살	9. 28.	검찰총장
17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9. 29.	법무부장관
18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13.	금융위원회위원장
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 13.	여성가족부장관
20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10. 26.	교육부장관 17개시도교육감
21	경찰의 과도한 전자 충격기 사용 등	10. 27.	경찰청장
22	간병협회 회원가입의 나이 제한	10. 31.	고용노동부장관
23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11. 10.	법무부장관
2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	11. 24.	법무부장관
2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12. 1.	국회의장 경찰청장
26	2016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12. 23.	법무부장관

## ■ 의견제출

연번	의견제출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11. 28.	헌법재판소
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	11. 28.	헌법재판소

## 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 검찰·경찰·사법기관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1. 25.	수 용
2	대질조사 시 전과사항 질문에 의한 인권침해	3. 2.	수 용
3	경찰의 부당한 집회시위 금지통고처분	3. 28.	불수용
4	부당한 임의동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5. 4.	수 용
5	피의자 신문과정 시 변호인의 메모 검사	6. 9.	수 용
6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한 인권침해	7. 20.	수 용
7	약식명령 송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8. 22.	검토중
8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부당한 수갑 사용	9. 28.	검토중
9	경찰의 참고인 조사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9. 28.	검토중
10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상 서명날인 강요 등	10. 27.	수 용
11	경찰의 부당한 전자충격기 사용	10. 27.	검토중
12	미체포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후 부당한 교도소 유치	11. 25.	검토중
13	조사과정에서 피혐의자 권리 등 미고지	11. 25.	검토중
14	우범자 첩보수집 과정에서 전과사실 누설	11. 25.	검토중
15	경찰의 손가락 손상 피의자 대상 뒷수갑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11. 25.	검토중
16	검찰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인권침해	12. 27.	검토중

## ■ 군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군 수사관의 폭행 및 욕설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4. 6.	수 용
2	군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4. 6.	수 용
3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등	4. 6.	기 타
4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의 과도한 열차려	7. 20.	수 용
5	일기장 돌려 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7. 20.	수 용
6	법정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착용	7. 20.	수 용
7	학군단 간부의 사병 폭행 및 폭언	7. 20.	수 용
8	관심 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8. 30.	수 용
9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 등 인권침해	9. 28.	검토중
10	해병대 선임 병사의 취식강요 등 가혹행위	12. 27.	검토중
11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12. 27.	검토중

## ■ 구금·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제외)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서신 미전달	4. 12.	수 용
2	구금시설 수용자에 전화통화 불허	9. 29.	검토중
3	노인요양시설의 응급조치 미흡	10. 26.	검토중
4	구금시설 수용자에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12. 23.	검토중

## ■ 보호시설(장애인·정신보건시설)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생활장애인 폭행	1. 19.	수 용
2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동력착취 등	2. 7.	수 용
3	정신병원의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등	3. 7.	수 용
4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노동강요 등	3. 7.	수 용
5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퇴원 거부 등	3. 7.	수 용
6	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추행 등	3. 7.	수 용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7	정신병원 심전도검사실의 CCTV 녹화	4. 22.	수 용
8	전원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지연에 의한 인권침해	4. 22.	수 용
9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4. 22.	수 용
10	정신병원의 진정서 미발송 등 인권침해	5. 13.	수 용
11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형식 변경 등 인권침해	5. 13.	수 용
12	정신병원의 부당노동 및 폭행 등	5. 13.	수 용
13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5. 13.	수 용
14	정신병원 입원 인신보호구제청구자 변호인 접견 제한	6. 8.	수 용
15	정신병원 보호사의 폭행	6. 8.	수 용
16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6. 8.	검토중
17	정신병원 내 입원환자들의 휴대폰 사용 제한	6. 8.	수 용
18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7. 21.	수 용
19	정신병원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인권침해	10. 5.	검토중
20	부당한 격리, 강박	11. 14.	검토중
21	정신병원의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11. 14.	수 용
22	강박중 인격권 침해	12. 7.	검토중
23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12. 7.	검토중
24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	12. 7.	검토중
25	정신병원 보호실 CCTV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12. 7.	검토중

###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공직유관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권 침해	8. 24.	일부수용
2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수사 및 체포 등	9. 29.	검 토 중
3	지자체 공무원들의 집단따돌림, 폭행 등 인권침해	9. 29.	검 토 중
4	지방자치단체의 표현의 자유 침해	11. 7.	검 토 중

## ■ 각급학교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교내 흡연 단속 시 소변채취로 인한 인권침해	2. 24.	수 용
2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질문	2. 24.	수 용
3	교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5. 16.	검토중
4	기숙사 휴대전화기 사용제한(15-진정-1052200 등 병합)	5. 16.	검토중
5	기숙사 휴대전화기 사용제한(15-진정-0376900)	5. 16.	검토중
6	토익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5. 16.	검토중
7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7. 8.	검토중
8	대학교수에 의한 인격권 침해	7. 8.	수 용
9	성추행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7. 8.	수 용
10	학생 봉사활동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8. 24.	검토중
11	교사의 학생 체벌	8. 24.	수 용
1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소홀	8. 24.	수 용
13	미인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공모전 수상 차별	9. 12.	검토중
1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9. 29.	검토중
15	학교 앞 유인물 배포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9. 29.	수 용
16	급식종사자의 막말 등에 의한 인권침해	9. 29.	검토중
17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9. 29.	수 용
18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 등	9. 29.	수 용
19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불허	10. 26.	수 용
20	교사의 인격권 침해	10. 26.	검토중
21	학교폭력사안 조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12. 23.	검토중
22	교사의 인격권 침해	12. 23.	검토중
23	상담내용 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2. 23.	검토중
24	중학교 내 체벌	12. 23.	검토중

## 다. 차별행위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 ■ 성 차별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5. 25.	-
2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	5. 25.	수 용
3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12. 22.	검토중

### ■ 용모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호텔 단기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8. 31.	수 용

### ■ 성희롱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메신저를 이용한 남직원들의 여성직원 성적비하 성희롱	10. 31.	검토중
2	회사대표의 여직원 강제추행	12. 22.	검토중

### ■ 장애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청각장애를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	2. 17.	수 용
2	콜택시 이용 시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에 따른 인권침해	5. 13.	검토중
3	지자체 제작물 배포 시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 미흡	6. 8.	수 용
4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2. 7.	검토중

### ■ 나이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승무원 채용 시 나이차별	8. 31.	검토중

## ■ 사회적 신분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국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7. 19.	검토중

## ■ 사상, 정치적 의견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공직유관단체 채용 면접 시 정치적 성향 질문으로 인한 차별	9. 21.	검토중

## ■ 기타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에 의한 차별	5. 25.	검토중

## 라.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 ■ 직권조사

연번	제 목	직권조사 개시결정	조사 대상기관
1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	1. 20.	○○아동양육시설
2	여성의 결혼에 따른 퇴사 등 성차별적 고용 관행	3. 3.	주식회사 ○○○ 등 4개 회사
3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의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5. 13.	○○○○ 보호작업장
4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	6. 13.	○○요양원, ○○재활원
5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8. 3.	○○병원
6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7. 21.	대구○○○○원 등 4개 시설
7	00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관련 의료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9. 7.	○○교도소
8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 시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10. 27.	경찰청
9	보호사의 환자 폭행	11. 29.	○○○○병원
10	부대 내 가혹행위 및 병사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12. 27.	공군 제○전투비행단
11	경찰의 피의자 신문절차 시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12. 27.	경찰청

## ■ 방문조사

연번	방문조사 명	방문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1	군 영창 방문조사	7. 1.~ 8. 30.	육군 6개소, 해군·공군·해병대 각 1개소
2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9. 28.~10. 30.	○○경찰서 광역유치장 등 7개소
3	노숙인 복지시설 방문조사	8. 1.~31.	○○시립복지원 등 4개소
4	노인 요양시설 방문조사	8. 1.~31.	○○○○요양원 등 5개소
5	교정시설 방문조사	8. 1.~31.	○○구치소 등 4개소
6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7. 1.~31.	○○외국인보호소 등 2개소
7	정신보건시설 휴대폰 제한 관련 방문조사	5. 16.~24.	국립○○병원 등 3개소
8	2016년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5. 30.~6. 1.	○○아동센터 등 3개소

## 마. 연구용역 등 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1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28.~11. 30.
2	ASEM 회원국 노인인권 이슈분석 및 구체적 협력방안 연구용역	(사)한국노인복지회	3. 31.~11. 15.
3	구급시설 건강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4. 7.~12. 6.
4	일정기준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실태조사	사단법인 두루	4. 18.~10. 18.
5	방송 뉴스 보도 성차별 실태조사	(사)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4. 20.~ 9. 30.
6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4. 21.~10. 20.
7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용역	(재)한국인권재단	4. 22.~10. 21.
8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운영현황 연구용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25.~11. 24.
9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4. 25.~11. 24.
10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4. 27.~10. 26.
11	고용영역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실태 모니터링 연구용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28.~ 8. 27.
12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5. 13.~11. 11.
13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5. 16.~11. 15.
14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5. 24.~11. 22.
15	기업과 인권 로드맵 연구용역	(사)기업책임시민센터	5. 24.~11. 23.
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연구용역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5. 25.~12. 23.
17	장애인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5. 27.~11. 25.
18	바이오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5. 27.~11. 26.
19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5. 31.~11. 29.
20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장애여성공감	6. 29.~11. 28.
21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용역	(사)21세기군사연구소	6. 29.~11. 30.
22	인권교육원 설립에 따른 교육체계 개발 연구용역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1. 4.~12. 23.

## 6. 2016년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현황

### 가. 국제회의의 참가 현황

연번	회의명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
1	제60차 유엔 여성 지위위원회 회의	3. 13.~ 3. 19.	미국 뉴욕	이경숙 상임위원 외 2명
2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모니터링	3. 13.~ 3. 18.	스위스 제네바	조홍래 주무관
3	제29차 GANHRI 연례회의	3. 16.~ 3. 25.	스위스 제네바	이성호 위원장 외 5명
4	APF 고문방지대사 최종회의 참가	6. 18.~ 6. 24.	스위스 제네바	김영혜 상임위원 외 1명
5	제8차 국제군음부즈만기구 회의 참석	10. 1.~10. 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상환 상임위원 외 2명
6	제21차 APF연례회의 참가	10. 23.~10. 28.	태국 방콕	이성호 위원장 외 4명
7	UN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11. 14.~11. 21.	스위스 제네바	이성호 위원장 외 3명
8	2016 UN 인터넷거버넌스 포럼 참석	12. 6.~12. 12.	멕시코 과달라하라	김만섭 사무관
9	제7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회의 참가	12. 10.~12. 16.	미국 뉴욕	이성호 위원장 외 2명
10	제7차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12. 11.~12. 17.	칠레 산티아고	김철홍 인권교육기획과장 외 2명
11	북한인권 정책 협력 및 전문가 회의	12. 14.~12. 18.	미국 워싱턴	이성호 위원장 외 4명

### 나. 국제회의의 개최 현황

연번	회의명	일시/장소
1	북한 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	5. 19. 서울 롯데호텔
2	ASEM 노인인권 전문가 콘퍼런스	6. 15.~16. 서울 포시즌 호텔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6. 29. 글래드 호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24	제조업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정책과	11월
	25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인권정책과	12월
	26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차별조사과	10월
	27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인권팀	12월
	28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인권정책과	12월
교육 자료	29	언론인권 길라잡이	인권교육기획과	9월
기타 보고서	30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차별조사1과	11월
	31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 2016년 :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인권정책과	12월
자료 집	32	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차별조사1과	9월
	33	2016 청소년 인권증진 방안 토론회	대전인권사무소	1월
	34	2016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인권정책과	5월
	35	ASEM Expert Forum on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국제협력팀	6월
	36	노인인권 국내 전문가 포럼-한국 노인의 인권 현황과 점검	국제협력팀	6월
	37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토론회-방송 뉴스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차별조사과	10월
	38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차별조사과	1월
	39	생식독성물질 취급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인권정책과	11월
	40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발표 토론회	차별조사과	1월
	41	이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팀	11월
	42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팀	10월
	4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장애차별조사1과	6월
44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차별조사과	1월	

자료 유형	연번	간행물명	발간부서	발행월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	부산인권사무소	4월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제고를 위한 토론회-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안전권을 중심으로	대전인권사무소	4월
	47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대구인권사무소	4월
	4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장애유형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 제안	장애차별조사1과	4월
	49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	장애차별조사1과	4월
	50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	장애차별조사1과	4월
	51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모색	광주인권사무소	4월
	52	제14차 인권교육포럼	인권교육기획과	10월
	53	초단시간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자료집	차별조사과	11월
	54	탈시설화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차별조사1과	10월
	55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팀	12월
56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아동청소년인권팀	10월	
일 반 단 행 본	57	2016 인권에세이 수상집	홍보협력과	12월
	58	구금·보호시설 모니터링 매뉴얼	침해조사과	12월
	59	인권도시(증보 개정본)	인권교육기획과	12월
	60	인권상담사례집 2016	인권상담센터	12월
	61	인권에세이 수상집 2015	홍보협력과	1월
	62	한·영 북한인권용어집	인권정책과	12월

## 8. 보도자료

연번	배포일	제 목
1	1. 4.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시무식개최
2	1. 7.	인권위,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 제도 마련 권고
3	1. 8.	인권위, “국방부,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개선 권고 수용”
4	1. 1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5	1. 11.	인권위, “복지관 경로식당, 기초생활수급자 식권구입 제한은 차별”
6	1. 12.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7	1. 13.	사내하청근로자 산재 예방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권고
8	1. 15.	경찰행정학과 2016년 제2차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9	1. 18.	감사 시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10	1. 19.	인권위,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11	1. 21.	「제5회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
12	1. 21.	인권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13	1. 22.	사실 확인 없이 ‘내연 관계’등 언론 브리핑한 경찰서장 징계 권고
14	1. 22.	인권위, “치료·치유전문 의료소년원 설치 필요” 의견표명
15	1. 25.	인권위, 군부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 국방부에 7개항 권고
16	1. 26.	인권위, 유통업서비스 판매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17	1. 26.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동정
18	1. 27.	군 수사와 사법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19	1. 27.	인권위, 아동인권보호·학대예방 위해 최선의 역할 도모
20	1. 28.	환경미화원 채용 시, 남녀동일한 체력평가 기준적용은 차별
21	1. 28.	OO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 1순위로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경력도 인정키로
22	1. 28.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3	1. 29.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 정보접근·절차참여권 보장 강화해야
24	2. 1.	“○○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나이제한 두지 않도록”
25	2. 5.	ICC 권고 반영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6	2. 18.	인권위, 장애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7	2. 23.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연번	배포일	제 목
28	2. 23.	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29	3. 2.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30	3. 3.	인권위, 충청남도와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공동 개설
31	3. 7.	인권위, 국방부와 공동 「2016년 군 인권교육」 실시
32	3. 8.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권고
33	3. 9.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34	3. 16.	인권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35	3. 17.	인권위, “교내 흡연단속 시, 학생 인권 보호 고려해야”
36	3. 21.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37	3. 21.	국가인권위원회 정성환 상임위원 임명
38	3. 22.	현재 앞 불법집회 대비한 경찰의 지나친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39	3. 2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 및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공식 방문
40	3. 24.	이성호 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선출
41	3. 24.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42	3. 29.	인권위, 「기업과 인권 로드맵」 수립 위한 연구 추진
43	3. 30.	국가인권위원장,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인권현장 방문
44	3. 30.	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45	3. 31.	의료기록 변조, 불법 강제입원 등 혐의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46	4. 1.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47	4. 6.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초대 위원장 별세
48	4. 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 지역순회 토론회
49	4. 11.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50	4. 12.	청각장애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한 건물주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51	4. 14.	인권위, 사회복지사 대상 ‘사회복지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52	4. 20.	제36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53	4. 21.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열차려는 인권침해
54	4. 22.	인권위, 장애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55	4. 25.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 인권위,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56	4. 28.	인권위, 장애인차별 개선 위한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실시

연번	배포일	제 목
57	4. 28.	이성호 인권위원장, 28일 주한 EU 대사들과 오찬 간담회
58	5. 2.	인권위, 경찰청과 공동 '2016년 경찰 인권 교육 과정' 개설
59	5. 2.	인권위, 아동인권보호 전담 소위원회 신설
60	5. 4.	인권위, "국가행사 아동 참여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해야"
61	5. 10.	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 1년 9개월여 만에 순직 결정 받아
62	5. 12.	인권위, 일괄적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 침해
63	5. 17.	인권위,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과정 운영
64	5. 17.	인권위, 제13회 한센인의 날 맞아 인권순회상담 실시
65	5. 17.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66	5. 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한 위원장 성명
67	5. 23.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68	5. 24.	인권위,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 개최
69	5. 24.	인권위, 2016 GANHRI 승인소위 심사에서 A등급 받아
70	5. 30.	"군 인권 관련 조사 시 국방부,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71	5. 31.	사회적 약자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위원장 성명
72	6. 1.	새벽 두시 후임장교 집합시켜 욕설폭행한 선임, 검찰 수사요회
73	6. 2.	인권위, 정신의료기관의 노숙인 유인 입원 등 관행 개선권고
74	6. 3.	하청근로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75	6. 8.	인권위,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76	6. 13.	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 개최
77	6. 14.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78	6.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위원 임명
79	6. 17.	인권위, 이주노동자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80	6. 20.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81	6. 21.	"토익점수 기준 대학생 외출·외박금지는 지나친 제한"
82	6. 2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83	6. 22.	인권위, 인권친화적 초·중등 교과서 개발 워크숍 개최
84	6. 23.	인권위, 중고교 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85	6. 27.	인권위, 170일 동안 환자 불법 입원시킨 국립정신병원장 고발

연번	배포일	제 목
86	6. 28.	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87	6. 28.	실업계고 경력경쟁응시자격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이중제한 차별
88	6. 30.	알려드립니다[교육연합신문 등 6.24.자 인권위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설명]
89	6. 30.	국가인권위원회, 30일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
90	7. 5.	장남에게 지급하는 부모부양 가족수당, 여성은 무남독녀여야 지급하면 차별
91	7. 15.	인권위,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92	7. 18.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개인정보 충분히 보호되어야"
93	7. 18.	지방의회 여성의원 아동청소년 인권강사양성
94	7. 18.	인권위, 「2016년 인권작품 공모전」 실시
95	7. 20.	인권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개선 권고
96	7. 25.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의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97	7. 28.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기반 강화, 사회적 관심 촉구 위원장 성명
98	8. 2.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배식, 청소, 환자간병 등 노동강요
99	8. 5.	국가인권위원회, 5일 동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100	8. 8.	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마련
101	8. 16.	인권위, 어르신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102	8. 17.	학군단 행정병에게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 등 책임 물어
103	8. 18.	사설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개선돼야
104	8. 23.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내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 등 지급 권고 불수용
105	8. 24.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106	8. 25.	시각장애인에게 모바일 보안문자 음성서비스 제공해야
107	8. 29.	법정에서 군 수용자 포승줄·수갑 착용은 인권침해
108	9. 5.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수 피해 관련 의견표명
109	9. 5.	인권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110	9. 7.	인권위, 정부에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권고
111	9. 8.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개선 정책권고
112	9. 20.	인권위, 소방공무원 안전과 건강보호 위해 법 개정 등 권고
113	9. 21.	인권위, 원주시민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114	9. 22.	인권위,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출국대기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연번	배포일	제 목
115	9. 26.	인권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
116	9. 27.	인권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117	10. 4.	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 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118	10. 5.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말아야
119	10. 6.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120	10. 6.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121	10. 6.	인권위, 군얼차려 시행지침 지키도록 전군에 전파 권고
122	10. 7.	경찰대 신입생 여성 비율 확대 권고 불수용
123	10. 7.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124	10. 12.	방송뉴스 보도에 나타난 성차별 모니터링 결과발표 토론회
125	10. 13.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126	10. 13.	숙제 안 한 학생 손으로 등 때려 모욕감 준 행위… 교육지도방식으로 부적절
127	10. 17.	항공기 이용 시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필요
128	10. 1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동정
129	10. 18.	인권위, 인천시와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130	10. 25.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131	10. 25.	인권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기준지 확인하도록 개선 권고
132	10. 25.	이성호 위원장,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하기로
133	10. 27.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 제도적 기반 필요
134	10. 27.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조치 관련법 개정 등 권고
135	10. 31.	규율위반 병사 주말에 집합시켜 얼차려 부여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
136	10. 31.	인권위, 학교폭력 분쟁 완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37	10. 31.	도로명 주소안내 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필요
138	11. 3.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아동들에 대한 막말 등 개선 권고
139	11.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40	11. 7.	인권위,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요건 구체화해야
141	11. 8.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142	11. 9.	필요한 최소범위 벗어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말아야
143	11. 10.	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연번	배포일	제 목
144	11. 11.	인권위,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145	11. 15.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및 제보내용 민원상대방에 유출 않도록 해야
146	11. 17.	거듭 처벌 소지가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147	11. 17.	이성호 위원장, 「2016유엔기업과인권포럼」 참석
148	11. 22.	근로감독관 필요최소 범위를 넘는 수갑사용은 인권침해
149	11. 22.	인권위,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
150	11. 23.	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151	11. 28.	인권위 설립 15돌, 봉사활동으로 의미 되새겨
152	11. 28.	인권위, 장애노숙인시설 가혹행위 급식비횡령 등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153	11. 29.	인권위, 우체국 백화점 등 장애인 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154	11. 29.	설립 15돌 맞이한 국가인권위원회
155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동정
156	11. 30.	인권위, 선박이용 장애인 접근성 보장 권고
157	12. 1.	세계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58	12. 2.	인권위, 청탁금지법서약서제출의무는 양심의 자유 침해
159	12. 7.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제작 보급
160	12. 8.	인권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
161	12. 1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 개최
162	12. 13.	인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163	12. 14.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 고려해야
164	12. 15.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참석
165	12. 19.	인권위, 미 워싱턴에서 북한인권 전문가회의 개최
166	12. 21.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167	12. 23.	인분교수 사건 다시 없어야, 대학원생 인권증진 정책 권고
168	12. 23.	인권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제작 보급
169	12. 28.	범죄혐의 조사하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170	12. 28.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군부대 격려방문

## 9. 위원회 소관 법규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 2. 3.	행정법무담당관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013. 1. 28.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 12. 27.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2016. 5. 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2005. 7. 6.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2012. 11. 23.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2016. 5. 4.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4. 5. 19.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2016. 4. 28.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2014. 5. 19.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2011. 1. 28.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2012. 5. 8.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09. 4. 8.	인권정책과	
	규칙 (18)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2014. 5. 19.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2016. 5. 4.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2015. 6. 2.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2002. 1. 10.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2010. 8. 2.	행정법무담당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		2014. 12. 30.	행정법무담당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2009. 4. 8.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		2016. 5. 4.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2014. 11. 21.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15. 12. 23.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2015. 12. 11.	행정법무담당관	
훈령 (42)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2014. 4. 7.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2011. 9. 19.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14. 8. 27.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2012. 9. 6.	인권상담센터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훈 령  (42)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2009. 7. 27.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2012. 10. 12.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2015. 2. 24.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2014. 12. 1.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2016. 3. 15.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2016. 4. 14.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2016. 3. 30.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2016. 9.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2015. 6. 29.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2014. 11. 21.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2011. 12. 6.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2016. 3.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2016. 4. 11.	인권교육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2012. 5. 11.	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2016. 10. 12.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6. 3. 30.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2012. 5. 11.	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2016. 8. 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011. 12. 6.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15. 5. 20.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2016. 3. 31.	기획재정담당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2014. 11. 21.	운영지원과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4. 8. 1.	운영지원과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2011. 12. 20.	홍보협력과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2015. 8. 11.	인권상담센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2014. 11. 21.	기획재정담당관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2012. 5. 21.	행정법무담당관
	인권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규정	2015. 5. 1.	행정법무담당관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2012. 5. 21.	행정법무담당관
	인권보도상 포상규정	2015. 6. 12.	홍보협력과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6. 5. 10.	운영지원과	

구분	법 규 명	제·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예 규  ( 22 )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2009. 4. 16.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2009. 6. 10.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4. 11. 21.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2012. 8. 6.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2015. 6. 9.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2014. 8. 27.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2014. 10. 31.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2016. 3. 30.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2014. 6. 3.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2014. 5. 27.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2016. 11. 30.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2015. 3. 17.	운영지원과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2012. 10. 29.	인권정책과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2016. 3. 30.	행정법무담당관
	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	2014. 12. 2.	행정법무담당관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2013. 4. 11.	운영지원과
	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2011. 2. 25.	홍보협력과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2014. 10. 31.	기획재정담당관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2015. 3. 23.	기획재정담당관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2009. 9. 24.	조사총괄과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2016. 3. 30.	인권상담센터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2013. 3. 5.	운영지원과

## 10. 사진으로 보는 2016년



2016년 시무식(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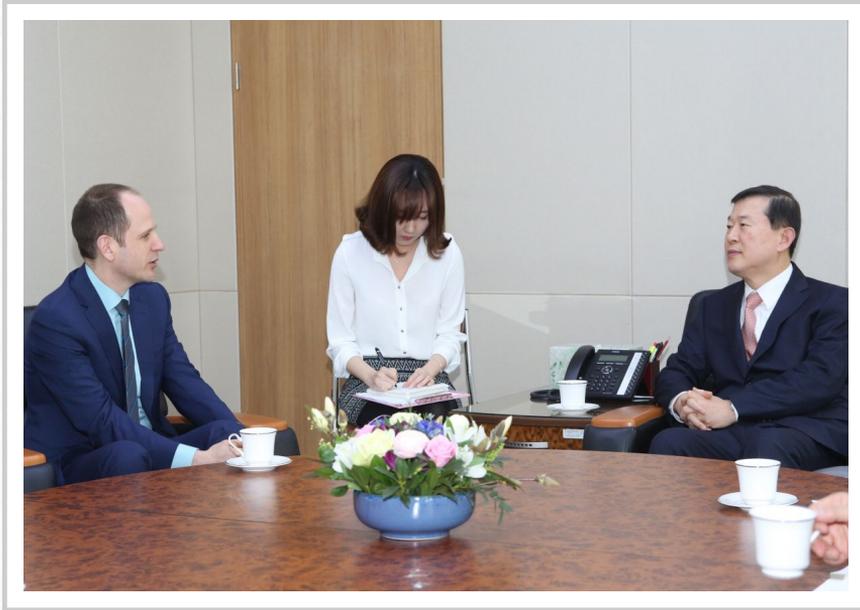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EU대표부 대사 접견(1. 5.)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구제강화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1. 2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접견(1. 27.)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 대사 접견(2. 25.)



제5회 인권보도상 시상식(2. 25.)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3. 13. 뉴욕)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3. 15.)



인권영화 <4등> 시사회(3. 15.)



유럽인권재판소장 접견(3. 17.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인권현장 방문(3. 30.)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접견(4. 15.)



대구 정신건강박람회 인권순회상담(4. 1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 토론회(4. 19.)



EU 대표부 대사 및 회원국 대사 위원장 초청 간담회(4. 28.)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입교식(5. 16.)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5. 18.)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회 방문(5. 23.)



기업과 인권 제주포럼(5. 25.)



GANHRI 노인인권 특별세션 회의 개최(6. 14.)



ASEM 노인인권 전문가 포럼(6. 16.)



2016년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6. 17.)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6. 29.)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순회상담(7. 16.)



2016년 인권정책발전과정 입학식(9. 26.)



국제군음부즈만기구 회의 참석(10. 5. 암스테르담)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인권현장 방문(10. 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10. 18.)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방문(10. 24. 방콕)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11. 8.)



대구이주여성센터 인권현장 방문(11. 14.)



「201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11. 14.~16. 제네바)



부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접견(11. 24.)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11. 25.)



세계인권선언 68주년 및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①(12. 9.)



세계인권선언 68주년 및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②(12. 9.)



제7차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회의 참석(12. 13. 뉴욕)



장애인보호작업장 누야하우스 인권현장 방문(12. 14.)



한미 대북인권정책 전문가 회의 개최(12. 16. 워싱턴)



2016년 인권공모전 시상식(12. 15.)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장병 위문 방문(12. 23.)



## 11. 위원회 활동일지

### 2016년 1월

- 1월 4일 • 2016년 시무식
- 1월 5일 • 북한이탈주민 차별 권고 관련 해당부처 의견 수렴 및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하여 통일부(정착지원과)와 간담회 개최
- 1월 7일 • 인신매매지침(안) 관련 단체(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협의
- 1월 8일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청소년분야 인권강사단 워크숍 개최
- 1월 12일 • 유명하 상임위원 퇴임
- 1월 15일 • 주한 EU대표부 대사(게르하르트 사바틸) 위원회 방문
- 1월 19일 •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 1월 20일 • 제1차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회의 개최
- 1월 21일 •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 1월 25일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과정 운영(~2.5.)
- 1월 26일 • 군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유통업 서비스 판매종사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개최
- 1월 27일 • 아동 인권 보호·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장 성명  
•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마이냐 키아이) 위원회 방문  
• 북한인권 민간단체장 간담회 개최
- 1월 28일 •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한 위원장 성명

### 2016년 2월

- 2월 3일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 공포
- 2월 17일 • 2016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공고(~2.29.)  
•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2월 18일
  -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대전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2월 23일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지 제작 관련 자문회의 개최
  - 제1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 2월 24일
  - 제2차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회의 개최
- 2월 25일
  -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경영실적 평가 제도개선 권고(상임위)
  - 제5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개최
  -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 위원회 방문
  - 제1기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운영(~2.26.)
- 2월 25일
  - 거제권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2월 26일
  - 제1차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아동인권분과 개최

### 2016년 3월

- 3월 3일
  -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2016년 지자체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개설 (3.3.~3.4., 4.4~4.5.)
- 3월 4일
  - 소방공무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등 인권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3월 7일
  -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6년 군 인권교육' 과정 실시(~3.11.)
- 3월 9일
  - 제1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 3월 10일
  - 제2기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역량강화교육 운영(~3.11.)
- 3월 11일
  -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관계부처(통일부) 간담회 개최
- 3월 13일
  -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참석(~3.19.)
  -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 모니터링 및 기관 협력(~3.18.)
- 3월 14일
  - 제2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 3월 15일
  -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3월 17일
  - 유럽인권재판소 방문(위원장)
- 3월 18일
  - 유럽평의회 방문(위원장)
  - 한국헌법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시스템의 헌법적 검토)
- 3월 21일
  - 제29차 GANHRI 연례회의 참가,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 수임(위원장, ~3.23.)

- 3월 22일 •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 3월 23일 • 노인인권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운영(~3.25.)
- 3월 30일 • 인권현장 방문(남양주시 외국인보호센터, 위원장)
  - 4·13 총선 대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 성명

### 2016년 4월

- 4월 1일 • 제30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 4월 4일 • 노인인권 강사양성과정 운영(~4.7.)
- 4월 7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4.27. / 7개 권역)
- 4월 14일 • 현재 정신보건법 제24조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의견진술
- 4월 15일 •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케네스로스) 위원회 방문
  -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사회복지 인권강사양성과정' 개설(~5.31.)
- 4월 19일 •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담당자 간담회 개최(~4.21.)
- 4월 20일 • '장애인의 날' 위원장 성명
- 4월 22일 • 전북지역 기자,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 4월 23일 • 장애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서울시 양천구 파리공원)
- 4월 28일 • 주한 EU 대사 및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 4월 29일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2016년 5월

- 5월 2일 •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발대식 개최(~5.4. / 6개 권역)
  - 경찰청과 공동으로 '2016년 경찰 인권감수성향상과정' 개설 (~5.4.)
- 5월 3일 • 자유권 제2전문위원회(외국인분과) 개최
- 5월 11일 • GANHRI 승인심사소위 콘퍼런스 콜(위원장)
  - 2016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단 워크숍 개최
- 5월 12일 • 성희롱 2차 피해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상임위)

- 5월 13일 • 자유권, 사회권협약 채택 50주년 기념 국제법학회 공동토론회 개최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채택 의의 및 자유권협약 최종 견해(2015) 이행방안 모색)
- 5월 16일 • 아동인권 보호 전담 소위원회 신설(제1회 아동권리위원회 개최)  
•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과정 운영(~5.20.)
- 5월 17일 • 인권현장 방문(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정상환 상임위원)  
• 한센인 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국립소록도병원)
- 5월 19일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대한 위원장 성명  
• 2016년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여성의 인권)
- 5월 23일 • 가슴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위원장 성명
- 5월 24일 • GANHRI 승인심사소위 A등급 심사결과 접수
- 5월 25일 •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 개최(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도전과 기회)  
• 여성직원의 결혼에 따른 퇴사 및 성차별적 고용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 권고(차별시정위원회)
- 5월 31일 • 사회적 약자 대상 혐오 및 범죄 발생에 대한 위원장 성명

## 2016년 6월

- 6월 2일 • 「북한인권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6월 3일 • 하청근로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 2016년 제1차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인권 NAP, 기업과 인권 NAP)
- 6월 8일 •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12.22, 전국 8개 도서관, 인권사무소 4개 인권체험관)
- 6월 9일 •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관행 개선 권고 (상임위)  
• 제3기 인권 NAP, 기업과 인권 NAP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정책 관계자 협의회 개최
- 6월 14일 •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 개최(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위원장 주재, ~6.16.)  
•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위원장 성명

- 6월 15일 • ASEM 노인인권 전문가 콘퍼런스 개최(~6.16.)
- 6월 16일 • 제3기 인권 NAP 권고안(기업과 인권 포함)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 장애순 인권위원 임명
- 6월 17일 •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위원장 영문 성명  
• 2016년 노인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 6월 19일 • 이주노동자 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 6월 20일 • ‘세계 난민의 날’ 위원장 성명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상임위)  
•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상임위)  
• APF 고문방지대사 회의 참석(~6.22.)  
• 남양주보훈병원 방문(보훈의 날 위문)
- 6월 23일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개최
- 6월 24일 • 직원연찬회(~6.25. 경북 문경시)
- 6월 28일 • 인권영향평가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6월 29일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16년 제3차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회의 개최
- 6월 30일 • 대전인권체험관 개소식 및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 2016년 7월

- 7월 6일 • 인권정책학교 운영(~7.8. 충주인권교육센터)
- 7월 7일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경북지역 인권옹호자 워크숍 개최(~7.8.)
- 7월 11일 • 광주인권테마역사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7.25.)
- 7월 13일 • 거제·통영지역 인권옹호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7.14.)  
• 부산인권전시관 정신장애인 시화전 ‘세상에 외치는 소리Ⅱ’개최
- 7월 16일 • 아동·청소년 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2016 금천청소년 어울림 마당 진로박람회)
- 7월 18일 • 지방의회 여성의원 대상 ‘아동·청소년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 개최
- 7월 21일 • 진주지역 인권상담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7월 25일
  -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전원위)
  -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권고(전원위)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18차·19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전원위)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과정 운영(~8.5.)
- 7월 28일
  -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호기반 강화, 사회적 관심 촉구 위원장 성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인권교육 강화 정책권고(상임위)

### 2016년 8월

- 8월 2일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
- 8월 3일
  -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 8월 4일
  - 태국 외교부 방문단 기업과 인권 간담회 개최
- 8월 5일
  - 동국대와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업무협약(MOU) 체결
- 8월 8일
  - 인권교육학교 운영(~8.9. 유진인재개발원)
- 8월 9일
  - 서울시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심화과정 운영 (~8.11.)
- 8월 10일
  -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현장 방문
- 8월 16일
  - 2016년 인권작품 공모전 실시(~9.16.)
  -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과의 인권캠페인(마산야구장)
- 8월 17일
  - 노인 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서울노인복지센터)
  - 전라북도교육청 교사 대상 인권감수성향상과정 운영(~8.18.)
- 8월 25일
  -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및 출국대기실 운영형태 개선 권고(상임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상임위),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정신장애인분야 전문위원회 개최
- 8월 26일
  - 제32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 8월 31일
  - 인권행정학교 운영(~9.2.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2016년 9월

- 9월 4일 • 학칙과 참여권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 9월 5일 • 제3기(2017~2021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 스웨덴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 방문
- 9월 6일 • OECD 한국NCP 개선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9월 7일 • 기업과 인권 NAP 권고 설명회 개최
  - 언론인 인권교육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 9월 8일 •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 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상임위)
  - 울산시 민관합동 인권워크숍 개최(~9.9.)
- 9월 15일 • 유엔 유해물질특별보고관 방한 결과보고서에 관한 위원회 성명
- 9월 22일 • 원주시민 대상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원주 문화의 거리)
  -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10.12.)
- 9월 23일 • 김기중 인권위원 임명
- 9월 26일 • APF 워크숍-인권교육 통합훈련과정 참가(~9.30.)
- 9월 27일 • 전라북도 업무협약(MOU) 체결
- 9월 28일 • 인권현장 방문(전주시 금암노인복지회관, 위원장)
- 9월 29일 •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6년 10월

- 10월 1일 • 국제군음부즈만기구 회의 참석(~10.7. 정상환 상임위원)
- 10월 4일 •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실태조사 최종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 10월 5일 • 인권현장 방문(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위원장)
- 10월 7일 • 제14차 인권교육포럼 개최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브룬디 국가인권위원장(장밥티스테 바리보네케자) 위원회 방문

- 10월 8일 • 학교 밖 청소년 차별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2016 서울시 학교밖청소년 축제 및 대안교육한마당)
- 10월 9일 • 난민수용 선진국의 난민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 (~10.18.)
- 10월 11일 • 지자체 인권제도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 10월 12일 • 미디어 속 여성차별과 폭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포항지역 인권문화주간 행사 개최(~10.15.)
- 10월 13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10월 14일 • 지자체 인권제도 서울·경기·강원 워크숍 개최
- 10월 17일 • 탈시설화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0월 24일 •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방문(위원장)
- 10월 26일 • 제21차 APF 연례회의 참가(위원장, ~10.27.)
- 10월 31일 •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16년 11월

- 11월 3일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11월 8일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최
- 11월 9일 • 인천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 및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실시(~11.10.)
- 11월 10일 •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권고(상임위)  
•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11월 11일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포럼 개최
- 11월 13일 • 안산지역 이주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안산 이주민센터 ‘국경없는 마을’)
- 11월 14일 • 2016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11.16.)  
• 인권현장 방문(대구이주여성쉼터, 정상환 상임위원)
- 11월 15일 •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위원장, ~11.16.)
- 11월 16일 •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11월 18일 • 독일인권기구(GANHRI의장기구) 방문(위원장)

- 11월 21일
  - 부산·경남 지방자치단체 인권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6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최종보고회 계획
- 11월 22일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오헤아 키타나) 및 전문가 그룹 위원회 방문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 11월 23일
  - 2016년 제4차 정보인권 정책기획단 회의 개최
- 11월 24일
  - 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위원회 방문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최종보고 및 토론회 개최
  - 한국공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개최(국내 외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11월 25일
  - 위원회 설립 15주년 맞아 '제1회 인권주간' 행사 진행(~12.10.)
  - 2016년 제1차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회 개최
  - 전국 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 개최(~12.16. / 전국 81개 도서관)
  -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일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 11월 28일
  - 2016헌마388 헌법소원 사건(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의견제출(전원위)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제출(전원위)
  - 최혜리 상임위원 임명
- 11월 29일
  - 인권현장 방문(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위원장)
  -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 11월 30일
  -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 2016년 12월

- 12월 1일
  - 헌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상임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상임위)
- 12월 2일
  - 제주지역 장애 및 인권단체와 간담회 개최
- 12월 3일
  - '세계 장애인의 날' 위원장 성명



- 12월 5일
  - 요양병원의 노인인권 친화적 제도개선 권고(상임위)
  -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상임위)
- 12월 6일
  - 2016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12.12.)
- 12월 7일
  - 이주(난민)인권증진을 위한 현안 정책과제 논의 간담회 개최
- 12월 9일
  -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
  - 2016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 제작
- 12월 11일
  - 제7차 국제인권교육 콘퍼런스 참석(~12.17.)
- 12월 12일
  - 제7차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위원장, ~12.16.)
  - 유엔고령화실무그룹 국가인권기구 병행행사 참석 및 발표(위원장)
- 12월 13일
  - 유엔본부 및 유엔사무총장 방문(위원장)
- 12월 14일
  - 인권현장 방문(서울 은평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누아하우스, 이경숙 상임위원)
- 12월 15일
  - 인권공모전 시상식 개최
- 12월 16일
  - 한미 대북인권정책 전문가 회의 개최(미국 워싱턴)
- 12월 21일
  -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12월 23일
  - 국군장병 위문 방문(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 국가인권위원회 2016 연간보고서

---

---

|인 쇄 일| 2017년 5월

|발 행 일| 2017년 5월

|발 행 인| 이 성 호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우)04551

|전 화| (02) 2125-9793

|팩 스| (02) 2125-0913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주) 삼일기획 (044) 866-3011

---

---

ISSN 1975-3128

비매품